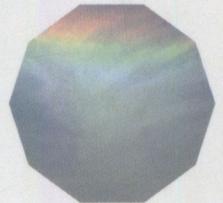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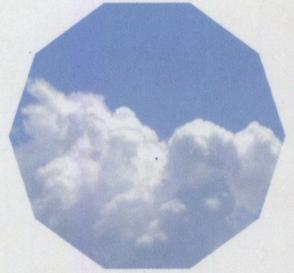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016-10



08-09



인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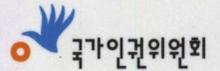
상

국가인권위원회



EM027859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ISSN 2092-9714

사례집

이 책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08-09



# 인 권 상 담 사 례 집

08-09 인권상담사례집

2009년 12월 15일 발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펴내고 인권상담센터(과장 최재경)에서 편집을 했습니다. 글매김꾼으로 인권상담센터에서 김경진, 김미숙, 육성철, 정미현이 땀을 쏟았고, 외부 발간위원으로 부깽, 학우가 힘을 보탰습니다. 타입페이지에서 디자인, 필름 출력, 인쇄, 제본 등을 진행했습니다. 주소는 100-842 서울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7층, 전화는 (02) 2125-9810, 팩스는 (02) 2125-9811~2, E-mail은 hoso@nhrc.go.kr 홈페이지는 www.humanrights.go.kr입니다. 이 책의 ISSN은 2092-9714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08-09  
인권상담사례집을  
발간하며 ... 8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 9

- 1. 개요
- 2. 접수 경로별 상담현황
- 3. 유형별 상담현황
- 4. 접수경로별 상담처리 결과
- 5. 인권침해 상담
- 6. 차별행위 상담
- 7. 기타상담
- 8. 내담자 현황

08-09  
인권상담사례집의  
특징과 항목 ... 20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15가지 항목의 선정 배경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 25

# 1

형사절차와 자유권 보장 ... 26

- 1-1 불심검문
- 1-2 압수수색
- 1-3 경찰 조사과정
- 1-4 미란다 원칙 미고지
- 1-5 검찰의 벌금형 집행과정
- 1-6 소변 채취
- 1-7 공무집행방해죄 남용
- 1-8 편파 수사
- 1-9 과잉장구 사용 및 폭행
- 1-10 직권남용
- 1-11 미성년자 조서관행
- 1-12 여성 조서관행
- 1-13 피의 사실 유포

# 2

국가기관과 인권 ... 62

- 2-1 비인격적 업무 부여
- 2-2 재외공관의 부당 처우
- 2-3 외교통상부의 자국민 보호 미흡
- 2-4 군 선임병의 폭행
- 2-5 군대 내 성폭력
- 2-6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 2-7 이적 출판물 조사
- 2-8 군인의 질병 방치
- 2-9 군대 내 계급 차별
- 2-10 의경의 구타와 욕설
- 2-11 구치소 수용자 가혹행위
- 2-12 구치소 수용자 응급조치 미흡
- 2-13 수용자 호송 시 지나친 수갑 사용
- 2-14 미결수용자 전화 제한

# 3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권 ... 90

- 3-1 촛불집회 과잉진압
- 3-2 기자회견 방해
- 3-3 1인시위 방해
- 3-4 집회금지통고 남발
- 3-5 학생 정치활동 금지
- 3-6 공무원 복무규정
- 3-7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 4

정보인권과 사생활 보호 ... 116

- 4-1 행정기관 개인정보 수집
- 4-2 교육기관 개인정보 수집
- 4-3 개인정보 열람
- 4-4 개인정보 유출
- 4-5 위치정보 피해
- 4-6 CCTV
- 4-7 지문 등 생체정보
- 4-8 장애인 복지카드의 개인정보 침해

## 5

학생의 권리, 학교의 고민 ... 140

- 5-1 학생 체벌
- 5-2 학습권
- 5-3 교복 이름표 노출 피해
- 5-4 두발과 복장
- 5-5 부당징계
- 5-6 0교시 강제학습
- 5-7 학교폭력
- 5-8 수업중 경찰 조사
- 5-9 전학강요
- 5-10 교사의 인격권 침해
- 5-11 시설 청소년의 인권

## 6

폭력과 권위에 찌든 운동선수 ... 166

- 6-1 운동선수 폭력
- 6-2 이적동의
- 6-3 운동선수 학습권

## 7

침묵을 강요하는 성희롱 ... 180

- 7-1 직장 내 성희롱
- 7-2 공공기관 성희롱
- 7-3 의사의 성희롱
- 7-4 교수의 성희롱
- 7-5 검찰조사과정 성희롱
- 7-6 동성 간 성희롱

## 8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회적 약자 ... 196

- 8-1 노인시설
- 8-2 노인의료
- 8-3 아동보육시설
- 8-4 아동학대
- 8-5 아동보호 법률조항 위반
- 8-6 용산철거민
- 8-7 근로기준법위반
- 8-8 시간강사 처우
- 8-9 단전단수
- 8-10 쌍용자동차

## 9

길을 잃은 코리안드림 ... 216

- 9-1 강제단속
- 9-2 단속 중 상해
- 9-3 고용허가제
- 9-4 작업장 내 폭행
- 9-5 체불임금
- 9-6 산재
- 9-7 배우자 폭력
- 9-8 다문화가정
- 9-9 강제퇴거
- 9-10 보호시설 내 처우
- 9-11 결혼비자
- 9-12 장애인 등록

## 10

나일로 즐 세우는 사회 ... 248

- 10-1 모집 · 채용
- 10-2 직급별 정년
- 10-3 정년
- 10-4 행정인턴
- 10-5 대입 수시모집
- 10-6 금융서비스
- 10-7 갑질제도

## 11

정신병원, 문을 두드리다 ... 266

- 11-1 강박
- 11-2 의료권 제한
- 11-3 외부교통권 제한
- 11-4 진정권 방해
- 11-5 강제입원
- 11-6 CCTV 설치
- 11-7 격리
- 11-8 가혹행위

## 12

법보다 현실이 가까운 장애인 ... 288

- 12-1 자격증 미부여
- 12-2 편의시설 미비
- 12-3 고용차별
- 12-4 문화시설 출입거부
- 12-5 안내견 출입거부
- 12-6 재화 · 용역이용 차별
- 12-7 장애인 고용 거절
- 12-8 장애인 간 차별
- 12-9 시험 편의제공 미흡
- 12-10 사법기관 편의제공 미흡
- 12-11 강제노동
- 12-12 괴롭힘
- 12-13 이동권
- 12-14 비하 발언
- 12-15 웹 접근성 제한

## 13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 318

- 13-1 납북자 인권
- 13-2 탈북자 인권
- 13-3 거주이전의 자유
- 13-4 귀순용사의 인권

## 14

차별의 그늘 ... 328

- 14-1 키
- 14-2 체중
- 14-3 전과
- 14-4 학력
- 14-5 성별
- 14-6 임신
- 14-7 혼인
- 14-8 여학생 복장 규제
- 14-9 남성 역차별
- 14-10 출신지역
- 14-11 사회적 신분
- 14-12 경력
- 14-13 환부모 가정
- 14-14 병력
- 14-15 종교

## 15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 360

- 15-1 도와줄 어른이 없어요
- 15-2 공부만 하래요
- 15-3 항의합니다
- 15-4 불만 있습니다
- 15-5 환영합니다
- 15-6 힘내세요, 인권위!

# 통계로 보는 인권 상담

## 08-09 인권상담사례집을 발간하며

인권은 물처럼 흐르게 마련입니다

인권은 공기입니다. 숨 쉬고 견디는 생명의 끈입니다. 인권은 밥입니다. 지키고 버티는 생활의 양식입니다. 인권은 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불이자 희망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태어난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덟 살이 됐습니다. 8년의 여정을 되짚어가며 오늘의 좌표를 가늠해봅니다. 칭찬과 격려는 일신우일신의 자극으로 삼고, 비판과 우려는 주마가편의 채찍으로 여기겠습니다.

인권상담센터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과 만나는 관문이자 인권 현장으로 나아가는 창입니다. 해마다 인권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진정과 상담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 국가기구인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소임의 중요성을 절감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08-09 인권상담사례집>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접수한 15,627건의 상담내용 중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을 대표하는 사례를 선별 수록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집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풀어야 할 인권과제의 목록이자 지향해야 할 나침반의 동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의 역사는 언제나 바다로 향하는 물줄기였습니다. 비록 오늘의 물이 파인 구덩이를 채우는 데 머문다 해도 언젠가 그 물은 뒷자리를 메우고 바닷길을 열고야 말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의 여섯 번째 인권상담사례집이 인권 세상의 새 기운을 부르는 물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현 병 철**

- 1 개요
- 2 접수 경로별 상담현황
- 3 유형별 상담현황
- 4 접수경로별 상담처리 결과
- 5 인권침해 상담
- 6 차별행위 상담
- 7 기타 상담
- 8 내담자 현황

## 1. 개요

〈08-09 인권상담사례집〉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인권상담센터에서 접수한 15,627건의 상담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집계기간이 2년여에 걸쳐 있는 특성을 감안, 사례집의 공식 명칭도 〈08-09 인권상담사례집〉으로 변경했다. 이는 발간연도를 기준으로 제호를 정했던 과거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분석대상을 양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8년 인권상담사례집〉(2007년 7월 1일~2008년 6월 30일)의 12,292건보다 3,335건(27%) 증가했다. 질적 측면에서도 인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다. 사례로 상담내용이 진정접수(진정예정 포함)로 이어진 사례가 지난해의 3,172건에서 3,538건으로 11.5% 증가했다.

〈표〉 연도별 분석대상 현황

2004 상담사례집	2005 상담사례집	2006 상담사례집	2007 상담사례집	2008 상담사례집	08-09 상담사례집
2001.11.25~2003.12.31	2004.1.1~2005.6.30	2006.7.1~2007.6.30	2006.7.1~2007.6.30	2007.7.1~2008.6.30	2008.7.1~2009.6.30
7,605건	8,262건	8,586건	9,073건	12,292건	15,627건

## 2. 접수경로별 상담현황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전화상담 서비스를 개설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1을 누르면 인권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전화상담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는 상담 루트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해마다 전화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전화상담은 2007년 7,205건, 2008년 10,158건, 2009년 13,513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대면상담은 동기 대비 20건 감소해 2,095건에 머물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변호사, 노무사, 치료상담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 각계 전문가 50여 명을 인권상담전문위원으로 위촉해 대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과 이메일 등을 활용한 상담은 매우 저조했다. 이는 위원회가 앞으로 시스템 보완을 통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표〉 접수경로별 상담현황

구분	전화	대면	우편	이메일	인터넷문자	팩스	합계
08.07- 09.06	13,513	2,095	1	1	16	1	15,627
07.07- 08.06	10,158	2,115	2	3	9	5	12,292
증감	+3,355	△20	△1	△2	+7	△4	+3,335

## 3. 유형별 상담현황

상담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상담 중 기타 상담이 7,864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인권상담의 영역이 사인간 침해, 회사 내 문제 등으로 점차 확대되는 측면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대상과 직결되는 인권침해 상담과 차별 상담은 동기 대비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인권침해 상담의 증가율은 14.9%, 차별 상담의 증가율은 32.7%였다.

〈표〉 유형별 상담현황

구분	침해	차별	기타	합계
08.07-09.06	5,932	1,831	7,864	15,627
07.07-08.06	5,164	1,380	5,748	12,292
증감	+768	+451	+2,116	+3,335

## 4. 접수경로별 상담처리 결과

인권상담은 내담자의 고충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인권위는 1차적으로 상담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적극 모색하지만, 상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검토한다. 이번 분석대상에 포함된 상담의 경우 상담단계에서 종결된 사례가 9,959건(6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진정접수(진정예정 포함) 3,538건(22.6%), 재상담 예정 1,026건(6.6%) 순이었다.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상담내용 처리 결과(08.07-09.06)

구분	FAX	대면	우편	이메일	인터넷문자	전화	합계	
합계	1	2,095	1	1	16	13,513	15,627	
상담종결	구체적 주장내용 없음	43			1	219	263	
	내담자가 상담만을 원함	246		1	1	2,881	3,129	
	상담으로 문제해결	121				281	402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종결	82				389	471	
	이미 진정한 상담	23				127	150	
	조사가능기간 초과	23				138	161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1	585			4	3,609	4,198
	진술 내용의 현실성/신빙성 결여	60				223	283	
	기타		105	1		1	794	901
	소계	1	1,288	1	1	7	8,661	9,959
재상담 예정	내담자가 상담 원함	17				231	248	
	사건추이 보고 재상담 예정	28			2	343	373	
	사실관계 파악 후 상담 예정	15			1	122	138	
	상담시간 부족 및 과다로 재상담 예정					7	7	
	전화상담 후 방문상담 예정	1				174	175	
	기타	2				83	85	
소계		63			3	960	1,026	
진정 예정		37				285	322	

	다른 방법으로 진정 예정	29	2	1,812	1,843
	사건추이 보고 진정 예정	22		214	236
	서류 구비하여 진정 예정	36		91	127
	재상담 후 진정 예정	4		31	35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내담자 원함	15		42	57
	기타	8		12	20
	<b>소계</b>	<b>151</b>	<b>2</b>	<b>2,487</b>	<b>2,640</b>
진정접수	제도개선(사건을 위원회에 알리고 싶음)	7		4	11
	조사대상 아니지만 내담자 원함	62		6	68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사건	279		400	679
	조사대상은 불분명하나 위원회 판단 원함	67		37	104
	기타	22		14	36
	<b>소계</b>	<b>437</b>		<b>461</b>	<b>898</b>
타기관 안내	내담자가 타기관 문의	17		64	81
	보다 적절한 기관 안내	128	2	656	786
	기타	1			1
	<b>소계</b>	<b>146</b>	<b>2</b>	<b>720</b>	<b>868</b>
기타	상담도중 내담자가 자리를 뜬	3		4	7
	상담도중 전화 끊김		2	112	114
	조사담당자 안내	1		11	12
	기타	6		97	103
	<b>소계</b>	<b>10</b>	<b>2</b>	<b>224</b>	<b>236</b>

## 5. 인권침해 상담

### 5-1. 인권침해 상담의 기관별 현황 ( ) 숫자는 %

구분	2008.07. - 2009.06.	2007.07. - 2008.06	증감
합계	5,932(100)	5,164(100)	+768
검찰	252(4.2)	264(5.1)	△12
경찰	1,609(27.1)	1,425(27.6)	+184
구급시설	237(4.0)	186(3.6)	+51
국정원	17(0.3)	21(0.4)	△4
군검찰(군대/수사)	30(0.5)	20(0.4)	+10
기무사	1(0.0)	-	+1

군구급시설	-	1(0.0)	△1
군헌병	3(0.1)	2(0.0)	+1
다수인보호시설	2,234(37.7)	1,748(33.8)	+486
보호시설	14(0.2)	17(0.3)	△3
사법기관	105(1.8)	104(2.0)	+1
입법기관	8(0.1)	5(0.1)	+3
지방자치단체	588(9.9)	519(10.1)	+69
특별사법경찰	5(0.1)	14(0.3)	△9
기타 국가기관	469(7.9)	455(8.8)	+14
기타 군사	163(2.7)	189(3.7)	△26
기타 기관	197(3.3)	194(3.8)	+3

인권침해 상담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수인보호시설이 2,234건(37.7%)로 가장 많았다.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인권상담은 2008년 이후 크게 늘어났는데,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시설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진정함 설치 실태 등을 점검한 데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인권상담센터는 지난 3년간 정신보건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진정함 설치 여부를 조사했는데, 방문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개선조치가 잇따랐다.

2007년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경찰관련 상담은 2008년 이후 다수인보호시설에 1위를 내준 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 건수 자체는 동기 대비 184건이 늘어 경찰의 공권력 행사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인권 현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588건, 기타 국가기관 469건, 검찰 252건, 구급시설 237건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인권침해 상담건수는 동기 대비 768건 증가해 5,932건으로 집계됐다.

### 5-2. 인권침해 상담의 내용별 현황

	2008.07-2009.06	2007.07-2008.06	증감	
<b>합계</b>	<b>5,932</b>	<b>5,164</b>	<b>+768</b>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특별사법	소계	1,917	1,746	+171
경찰관리, 군경찰, 군헌병, 기무사	불심검문, 부당압수/수색/검열/도감청, 과잉진압, 간접피해	152	160	△8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총기 장구 사용	376	307	+69
	과도한 신체검사 등 인격권 침해	298	271	+27
	편파, 불공정 수사	459	467	△8
	불법체포, 임의동행, 부당감금	84	76	+8
	함정수사, 부당 감압 증거확보	47	36	+11
	가족에 미통지	48	21	+27
	접견/교통권 제한	6	5	+1
	알권리 침해	15	13	+2

공소권 남용	15	11	+4	
부당한 사건분류	11	14	△3	
내사/피의사실 유폐	21	24	△3	
의료권 방해/제한	25	18	+7	
사회적 약자 보호조치 미흡	35	33	+2	
피의자 권리 미고지	1	2	△1	
가족 등에 대한 미통지	1	-	+1	
강압/부당 증거확보	1	-	+1	
개인정보 누설	28	19	+9	
구형량 부당	1	-	+1	
별건 체포/구속	2	-	+2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2	-	+2	
폭행	1	-	+1	
기타	288	269	+19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	소계	1,367	1,277	+90
단체, 사법기관, 입법기관,	위법/부당한 처분	299	264	+35
기타 기관	부작위/거부 등 소극적 처분	212	253	△41
	폭행/가혹행위	82	84	△2
	인격권 침해	155	240	△85
	사생활 비밀 침해	168	129	+39
	알권리 침해	11	13	△2
	공무원 부당 처우	32	23	+9
	행정/제도 개선	42	35	+7
	출입국 제한	24	17	+7
	기타	342	219	+123
구금/보호시설(군구금시설 포함)	소계	251	204	+47
	의료조치 미흡	75	73	+2
	권리구제절차 제한	6	5	+1
	서신/집필 제한	20	7	+13
	부당한 조사 징벌	14	13	+1
	폭행/가혹행위	34	27	+7
	부당처우	47	27	+20
	기타	55	52	+3
다수인보호시설	소계	2,234	1,748	+486

불법/강제 수용	724	857	△133	
폭행/가혹행위	282	204	+78	
외부교통권 제한	189	118	+71	
의료조치 미흡	-	87	△87	
강제노동	33	-	+33	
인격권침해	107	82	+25	
시설·환경	110	79	+31	
기타	344	200	+144	
퇴원요청	445	121	+324	
군사기관	소계	163	189	△26
(군수사기관,군구금시설 제외)	생명권 침해	11	5	+6
	폭행/가혹행위	60	80	△20
	군무원경	29	29	-
	불합리한 제도행정	23	25	△2
	기타	40	50	△10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특별사법경찰관리, 군검찰, 군헌병, 기무사 등 공권력 집행기관 관련 상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전통적인 인권침해 유형이 강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편파 및 불공정 수사의 비중이 4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총기 사용이 376건 △과도한 신체검사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298건 △불심검문, 부당압수수색, 도감청, 과잉진압 등이 152건을 기록했다.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입법기관, 기타 기관 등과 관련한 상담에서는 △위법 및 부당한 처분이 299건 △부작위, 거부 등 소극적 처분 212건 △사생활 비밀 침해가 168건이었다. 또한 구금 보호시설 관련 상담에서는 의료조치 미흡과 부당처우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상담에서는 불법 강제수용과 퇴원요청이 가장 많았다.

## 6. 차별행위 상담

### 6-1. 차별행위 상담의 기관별 현황 ( ) 숫자는 %

구분	2008.07 - 2009.06	2007.07 - 2008.06	증감
합계	1,831(100)	1,380(100)	+451
개인회사	210(11.5)	213(15.4)	△3
검찰/경찰	33(1.8)	22(1.6)	+11
공공기관(공법인)	119(6.5)	105(7.6)	+14
교육기관	174(9.5)	157(11.4)	+17
구금시설	7(0.4)	4(0.3)	+3
군대	8(0.4)	7(0.5)	+1

기타 국가기관	136(7.4)	116(8.4)	+20
단체	39(2.1)	33(2.4)	+6
법인(사법인)	106(5.8)	80(5.8)	+26
보호시설	22(1.2)	8(0.6)	+14
사인	218(11.9)	93(6.7)	+125
주식회사 등(법인)	544(29.7)	344(24.9)	+200
지방자치단체	142(7.8)	122(8.8)	+20
기타	73(4.0)	76(5.5)	△3

차별행위 상담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주식회사(29.7%), 사인(11.9%), 개인회사(11.5%)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절반을 넘는다. 공권력 집행기관의 경우 교육기관(9.5%), 지방자치단체(7.8%), 공공기관(6.5%) 등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6-2 차별행위 상담의 사유별 현황 ( ) 숫자는 %

구분	2008.07-2009.06	2007.07-2008.06	증감
<b>합계</b>	<b>1,831</b>	<b>1,380</b>	<b>+451</b>
가족상황	11(0.6)	14(1.0)	△3
나이	163(8.9)	72(5.2)	+91
병력	46(2.5)	45(3.3)	+1
사상·정치적 의견	5(0.3)	7(0.5)	△2
사회적 신분	118(6.4)	124(9.0)	△6
성별	37(2.0)	42(3.0)	△5
성적지향	1(0.1)	3(0.2)	△2
성희롱	386(21.1)	395(28.6)	△9
용모, 신체조건	17(0.9)	19(1.4)	△2
인종	2(0.1)	4(0.3)	△2
임신·출산	23(1.3)	24(1.7)	△1
장애	796(43.5)	378(27.4)	+418
전과	16(0.9)	23(1.7)	△7
종교	14(0.8)	10(0.7)	+4
출신국가	44(2.4)	37(2.7)	+7
출신민족	1(0.1)	5(0.4)	△4
출신지역	11(0.6)	11(0.8)	0
피부색	-	1(0.1)	△1
학벌/학력	26(1.4)	19(1.4)	+7

혼인 여부	7(0.4)	8(0.6)	△1
기타	107(5.8)	139(10.0)	△32

사유별 차별행위를 분석하면 장애차별 관련 상담이 796건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2007-2008년에는 성희롱 상담이 1위였으나 2008-2009년에는 장애차별 상담이 앞섰다. 이것은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 할 수 있다. 비슷한 이유로 2009년 3월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나이 차별 상담도 전년도 동기 대비 126% 증가했다.

6-3. 차별행위 상담의 영역별 현황

		2008.07-2009.06	2007.07-2008.06	증감
<b>합계</b>		<b>1,831</b>	<b>1,380</b>	<b>+451</b>
<b>고용관련</b>	<b>소계</b>	<b>643</b>	<b>571</b>	<b>+72</b>
	교육	5	11	△6
	해고	83	89	△6
	모집	106	49	+57
	배치	58	54	+4
	승진	17	24	△7
	임금외 금품지급	26	16	+10
	임금지급	45	45	0
	채용	132	94	+38
	퇴직	29	16	+13
	정년	13	13	0
	기타	129	160	△31
<b>재화/용역</b>	<b>소계</b>	<b>481</b>	<b>305</b>	<b>+176</b>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54	42	+12
	용역의 공급이용	129	102	+27
	재화의 공급이용	196	106	+90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25	13	+12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75	40	+35
	토지의 공급이용	2	2	0
<b>시설 등 이용</b>	<b>소계</b>	<b>85</b>	<b>86</b>	<b>△1</b>
	교육시설의 이용	79	78	+1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6	8	△2
<b>기타</b>	<b>소계</b>	<b>622</b>	<b>418</b>	<b>+204</b>
	기타	622	418	+204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명시된 3대 차별의 영역별로 보면 고용관련 차별이 가장 많고 재화 및 용역에 따른 차별과 시설 이용 차별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고용 영역의 차별에서는 변함없이 채용과 모집의 비중이 높다. 진입장벽의 문제가 차별문제의 해법을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엿볼 수 있다.

### 7. 기타 상담의 내용별 현황

	2008.07-2009.06	2007.07-2008.06	증감
<b>합계</b>	<b>7,864</b>	<b>5,748</b>	<b>+2,116</b>
국가기관(상담용)	527	277	+250
법령제도개선	107	113	△6
법률문의(상담용)	507	286	+221
사인간 침해	1,860	1,411	+449
인권위 업무 불만(상담용)	364	273	+91
인권위 관련 제안(상담용)	108	69	+39
인권위 업무 문의(상담용)	564	544	+20
입법/재판	266	231	+35
재산권	272	180	+92
회사	862	722	+140
기타 단체	298	193	+105
기타	2,129	1,449	+680

기타 상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대상이 아닌 상담, 인권위 업무에 대한 개인 의견, 법률문의 등을 두루 포함한다. 인권위는 실사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내담자의 의도를 적절히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유관 기관과의 상담네트워크를 구축해 내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8. 내담자 현황

#### 8-1. 내담자의 지역별 분포

	2008.07 - 2009.06	2007.07 - 2008.06	증감
<b>합계</b>	<b>15,627(100)</b>	<b>12,292(100)</b>	<b>+3,335</b>
강원	87(0.6)	114(0.9)	△27
경기	426(2.7)	570(4.6)	△144
경남	170(1.1)	223(1.8)	△53

경북	63(0.4)	109(0.9)	△46
광주	437(2.8)	357(2.9)	+80
대구	43(0.3)	98(0.8)	△55
대전	56(0.4)	98(0.8)	△42
부산	361(2.3)	569(4.6)	△208
서울	633(4.1)	802(6.5)	△169
울산	45(0.3)	111(0.9)	△66
인천	178(1.1)	156(1.3)	+22
전남	362(2.3)	340(2.8)	+22
전북	208(1.3)	178(1.4)	+30
제주	47(0.3)	56(0.5)	△9
충남	63(0.4)	84(0.7)	△21
충북	42(0.3)	98(0.8)	△56
미상	12,406(79.4)	8,329(67.8)	+4,077

진정을 접수시키지 않고 상담만 원하는 내담자의 경우 개인정보 공개를 꺼리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이유로 내담자에 관한 통계적 분석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별 통계의 경우 소재지를 밝히지 않는 내담자가 전체의 79.1%에 달한다. 소재지를 공개한 내담자만 별도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전남 등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 8-2. 내담자의 연령별 현황

	2008.07 - 2009.06	2007.07 - 2008.06	증감
<b>합계</b>	<b>15,627</b>	<b>12,292</b>	<b>+3,335</b>
10세 미만	2	1	+1
10~20세	67	49	+18
20~30세	144	102	+42
30~40세	332	274	+58
40~50세	448	410	+38
50~60세	333	295	+38
60~70세	152	128	+24
70세 이상	111	84	+27
불명	14,038	10,949	+3,089

나이의 경우 무응답 비율이 더 높아 90%에 이른다. 열 명 중 아홉 명이 빠진 통계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다만 상담과정에서 추정된 연령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인권상담이 대체로 30~50대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 08-09 인권상담사례집의 특징과 항목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15가지 항목의 선정 배경

## 08-09 인권상담사례집,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여섯 번째 인권상담사례집은 여러 측면에서 쇄신을 시도했다. 제호와 판형을 바꾸고 디자인을 강화했으며 모든 사례를 구어체 문장으로 재구성했다. 인권문제를 다룬 언론보도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직접 내담자를 만나온 전문상담원의 현장 에세이도 수록했다. 이러한 변화는 상담사례집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나아가 인권현상에 관한 사회적 여론 형성의 토대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에서 연유한다.

이번 사례집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편집방식이다. 그동안 펴낸 다섯 권의 사례집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을 중심으로 한 기관별, 사유별 대표사례 추출방식이었다. 이러한 편집은 위원회 업무의 다양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니거나 인권의 관점에서 나름의 사회적 의미를 갖는 사례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08-09 인권상담사례집은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을 보다 자세히 담아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인권위가 공표한 '09-11 인권증진행동계획' 상의 주요 성과목표를 기초로 지난 1년간 중요하게 제기됐던 우리 사회의 대표적 인권 이슈를 추렸다. 다음으로 인권상담센터에서 접수한 상담사례 유형과 비교해 15가지 분석 틀을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15,627건의 전체 상담내용을 이 틀에 비추 분석하고 최종 수록사례를 결정했다. 분석 틀에 따른 주요 상담 유형은 아래와 같다.

번호	분석 틀	주요 내용
1	형사절차와 자유권 보장	소환에서 재판까지 형사절차 전 과정의 인권
2	국가기관과 인권	군대, 구금시설, 기타 국가기관 인권침해
3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권	집회 시위의 자유, 양심 사상의 자유
4	정보인권과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수집 남용 유출 실태, CCTV 등
5	학생의 권리, 학교의 고민	학교생활규정, 교육권, 학교폭력 등
6	폭력과 권위에 찌든 운동선수	폭력, 이적동의 제한, 부당한 관행
7	침묵을 강요하는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 관련 불이익 등
8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회적 약자	버려진 아동, 노인 인권, 경제적 약자의 현실
9	길을 잃은 코리안드림	이주노동자 인권, 다문화 가정 등
10	나일로 줄 세우는 사회	공공기관의 차별, 사기업체의 관행
11	정신병원, 문을 두드리다	강제입원, 가혹행위, 기본권 제한
12	법보다 현실이 가까운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장애인 모욕, 장애인 차별
13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남북자 인권, 탈북자 인권 등
14	차별의 그늘	외모, 종교, 학력, 임신, 사회적 신분 차별 등
15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위원회 업무 불만, 위원회 관련 의견 등

## 15가지 분석 틀의 선정 배경

### 1. 형사절차와 자유권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조사대상 범위와 직결되는 영역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장기 전략으로 설정한 '09-11 인권증진행동 계획'의 첫 번째 전략목표도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이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활동은 국가인권기구의 존재적 의미이기도 하다. 일반 국민들이 공권력과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모았다.

### 2. 국가기관과 인권

인권위 출범 8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가기관 간 변화의 편차가 존재하고 근본적인 사안에 대해 백안시하는 태도는 여전하다. 국가기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배경이기도 하다. 군대, 구금시설,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권력과 충돌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 3.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권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장치로 꼽힌다. 한국 사회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표현의 자유에 관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특히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을 둘러싼 갈등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권상담센터엔 사이버 인권, 공무원 복무규정 등 최근 제기된 이슈까지 상담이 쇄도했다.

### 4. 정보인권과 사생활 보호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개인정보 수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자연스럽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CCTV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규제 법규는 아직도 정비되지 않았다. 정보인권 문제를 책임지고 다룰 독립적 국가기관도 설립되지 않았다.

### 5. 학생의 권리, 학교의 고민

유엔 산하 인권기구 중 한국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구가 아동권리위원회다. 2009년 5월 이양희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아쉽게도 유엔에서 한국 정부의 보고서는 그리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경쟁과 효율이 강조되고 있는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부차적인 문제로 돌려지고 있다. 그래서일까, 학생들의 상담내용은 더욱 절박해지는 느낌이다.

### 6. 폭력과 권위에 찌든 운동선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세계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 최근까지도 체벌이 없으면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며 어린 선수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스포츠 지도자들이 있다. 한국 스포츠 신화의 이면에 가려진 반인권적 피해사례를 모았다.

### 7. 침묵을 강요하는 성희롱

“좋은 감정으로 얘기한 건데 그걸 성희롱으로 본다면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인권상담센터엔 특정한 발언이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전화가 심심치 않게 걸려온다. 상담 현장에서 느끼는 아쉬움은 상대에 대한 배려의 부족이다. 성희롱의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는 양상이다. 기관별, 직종별, 과정별 대표 사례를 선정해 수록했다.

### 8.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회적 약자

인권 선진국은 자유권을 넘어 사회권으로 인권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권에 관해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심지어 사회권이 인권에 해당할 수 있느냐는 논의까지 등장한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버림받은 아동과 노인, 양극화 사회에서 생존권 문제에 부딪힌 소외계층의 목소리도 인권위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 9. 길을 잃은 코리안드림

경제규모 10위권을 오르내리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지탄받는 핵심적인 주제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가 비판의 표적이다. 현행법상 인권위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넓지 않다. 그럼에도 이주민들은 인권위에 끊임없이 도움을 청하고 있다. 지금의 이주민 보호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 10. 나이로 줄 세우는 사회

2009년 3월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나이 때문에 차별을 받는 사람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특정 행위가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2010년부터 법 적용 대상이 고용의 전 과정으로 확대되면 관련 상담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11. 정신병원, 문을 두드리다

최근 3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상담이 증가하는 기관이 정신병원이다. 선진국에 비해 강제입원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입·퇴원 방식을 포함한 보호시설 전 분야의 제도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인권위는 2009년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 사회는 이제서야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다.

### 12. 법보다 현실이 가까운 장애인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다. 장애인들이 피눈물 나는 싸움을 벌이지 않았던들 이웃나라 일본이 부러워하는 법률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형식상 장애인 차별의 핵심적 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법이 생겼음에도 장애인 차별의 현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권상담센터에 전해지는 장애인들의 사연은 사회적 차별의 높은 벽을 실감케 한다.

### 13.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북한인권과 직접 관련한 상담은 많지 않다. 그러나 탈북자와 새터민 문제에 관한 상담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인도적 차원에서 풀어야 할 정책적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인권위는 북한인권의 중요성을 감안, 2006년 종합적 의견을 표명한 데 이어 2009년엔 정치범 수용소 및 여성주민 실태조사 등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에까지 관심의 영역을 넓혔다.

### 14. 차별의 그늘

인권위 설립 이후 차별에 관한 사회적 담론이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이전에는 그러려니 했던 관행들이 인권위 판단을 통해 새롭게 차별행위로 규정됐다. 인권위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인권상담센터엔 유사한 사례에 관해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한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우리 사회가 보듬지 못하고 있는 차별의 그늘을 본다. 당사자에게 막대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 15.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인권상담센터는 인권위가 국민과 만나는 관문이다. 인권위의 모든 활동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모이는 지점이기도 하다. 1년 동안 기록된 상담서를 정리하며 이 세상에 인권문제 아닌 사안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3자에겐 다른 나라 이야기일지 몰라도 당사자에게 모두가 절박한 현안이다. 때로 상담원을 울리고 웃겼던 사례를 뽑아보았다.

#### 편집자 주

- 사례집에 실린 상담내용은 실제 기록된 상담서를 기초로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구어체 문장으로 재구성한 것임.
- 사례집에 실린 보도자료 및 위원회 결정문 등은 전체 본문 중에서 상담내용과 직결되는 사안 중심으로 재편집한 것임. 원문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수록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인권> 잡지에 게재된 것임.



#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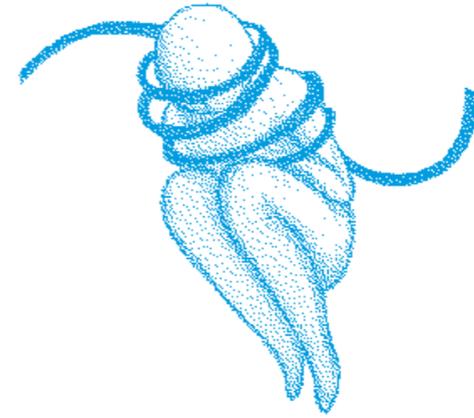
1. 형사절차와 자유권 보장
2. 국가기관과 인권
3.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권
4. 정보인권과 사생활 보호
5. 학생의 권리, 학교의 고민
6. 폭력과 권위에 찌든 운동선수
7. 침묵을 강요하는 성희롱
8.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회적 약자
9. 길을 잃은 코리안드림
10. 나이로 줄 세우는 사회
11. 정신병원, 문을 두드리다
12. 법보다 현실이 가까운 장애인
13.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14. 차별의 그늘
15.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 1



불심검문 · 압수수색 · 조사과정 · 미란다 원칙 · 소변 채취  
공무집행방해 · 편파수사 · 과잉장구사용 · 직권남용 · 조사관행  
피의사실 유포

## 형사절차와 자유권 보장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넘어지니까 갈비뼈를 발로 밟았는데 그때부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복사용지를 목구멍에 밀어 넣고 피가 날 때까지 돌리는데 지옥이 따로 없더군요.”

검찰의 가혹행위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한 최초 씨의 증언. 인권위는 검사와 수사관을 고발했고, 재판부는 가혹행위 및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 상담: 휴대폰 통화목록까지 확인하다니요.

얼마 전 친구와 약속시간에 늦어 통화하며 안양역 앞을 급히 지나는 중 불심검문을 당했습니다. 경찰의 요구로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PDA로 제 신상정보를 확인하더군요. 그러고는 다시 “잠깐 휴대폰 좀 주십시오.”라고 하더니, 휴대폰의 통화목록까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벌금 이력조차 없습니다. 불심검문이란 것이 애초에 범죄혐의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불심검문에 걸린 것도 불쾌한데, 주민등록번호로 범죄사실이 없다는 걸 확인했으면 보내주어야지 남의 휴대폰 목록을 확인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불심검문에 대해서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전화로 항의하니, 밖에서 만나서 얘기하자며 반말투로 말하더군요.

### 답변: 법절차를 위반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어떤 범죄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할 때,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 시 영장이 있어야 하고요.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면 적법절차를 위반한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유사 사건 위원회 합의종결

##### 과도한 불심검문 관련

##### 진정요지

경찰관이 2009년 4월 오전 3시경 ○○시 소재 노상에서 진정인을 불심검문하면서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주머니를 직접 검사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불심검문을 하였다.

##### 합의내용

- 가. 피진정인은 위 불심검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의 아니게 적법절차 준수를 소홀히 하여 진정인에게 인격적 수치심을 준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향후 업무 수행 시 주의할 것을 약속한다.
- 나. 진정인은 위 피진정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본 건 진정과 관련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 상담: 압수수색영장 없이 어린 딸과 부인의 DNA까지 조사했습니다.

제가 평소 이용하지 않는 차량이 있습니다. 2009년 1월, 그 차량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난당한 차량이 금은방을 터는 데 이용됐으며 ○○경찰서에서 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담당형사는 도난당한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는 게 CCTV에 촬영됐으며 밤 9시경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방으로 들어와 장롱 등을 수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DNA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저와 부인 그리고 두 딸까지 4명의 타액을 채취하고 운동화를 가지고 갔습니다. 차량 도난당한 사람을 오히려 범인 취급하면서 위협적으로 조사하고, 영장도 없이 위와 같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부당합니다.

### 답변: 경찰의 적법절차 위반으로 진정해 판단을 받아 보세요.

「헌법」 제12조에서는 법률과 적법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16조 및 제217조에서는 영장이 필요 없거나 사후 영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영장 없이 내담자 가족의 타액을 채취하고 운동화를 가지고 간 행위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기본권 침해인지 인권위에 진정해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보도자료 2009년 10월 23일

#### 임산부 거주지 심야 불시 압수수색한 경찰관 주의조치 권고 관련

#### 불수용 사실 공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7월 경찰관들이 진정인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인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진정인 한모 씨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온 사촌동생을 설득해 경찰에 자수하도록 했는데, 곧바로 경찰관들이 증거물을 제출받는다며 새벽 3시에 진정인의 처 혼자 있는 집에 갑작스레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놀란 처가 유산했다"고 2008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하여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확보를 위한 긴급성이 요구되고, 피의자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등 관련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귀책사유가 없다며 권고를 불수용한다는 의사를 통보해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록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성을 발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진정인이 피의자를 자수하게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진정인의 처인 피해자가 임신 7주차로 심신의 안정을 요하는 상태였으며 ▲압수수색의 시간과 방법이 심야시간대이고 경찰관 7~8명이 동원된 위압적인 상황이었다는 점과 ▲압수수색 직후 피해자의 하혈 및 태아유산이라는 당시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임의수사에 있어 진정인과 피해자의 동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 글 3줄 읽으려고 5시간 허비하며 경찰서까지 가야 하나요.

2008년 11월 말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이 야간근무 중이라며 밤 10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접촉사고는 인천에서 일어났고, 제가 사는 곳은 인천입니다. 집도 멀고 아이도 있어 어렵게 시간에 맞추어 갔는데, 자리에 없어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집에 오니 새벽 2시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경찰이 낮 근무 때 조사하면 될 걸, 늦은 밤에 조사한 것이더군요.

또, 도로공단에서 교통사고조사 공문을 경찰서로 보냈다면 제게 확인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거나 전화로 알려주면 안 되느냐고 하니 “꼭 와야 한다.”라고 강조하더군요. 할 수 없이 다시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내밀며, “보세요. 보셨으면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글 3줄 읽으려고 5시간을 허비한 셈입니다. 직장에서 어렵게 시간을 내어 갔는데 허탈하게 돌아와야 했죠.

접촉사고 당시 경찰은 별일 아니고 쌍방 과실이니 합의하라고 해놓고, 정작 처리결과를 보니 제 과실로 되어 있더군요. 귀찮았지만 상대 운전자의 행태가 부당하고 억울하여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끝난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이 귀찮은지, 저를 일부러 골탕 먹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경찰의 야간 조사나 무리한 출석요구에 대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167조에서 ‘조사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심야에 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피조사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야간조사를 하거나 무리한 출석요구 등으로 내담자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면, 진정하여 우리 위원회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08년 4월 1일

**“경찰의 장시간 조사대기, 심야조사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피의자를 수사함에 있어 당사자의 동의 등의 적법절차위반 및 필요한 최소한의 합리적 이유 없이 장시간 조사 대기시키거나 심야조사를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신체의 자유 및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수면권 및 휴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 검찰청 검사장에게 담당 검사 및 검찰수사관들에게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는 심야조사 및 피의자 출석조사에 관한 규정 및 업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결과, 피진정인들이 2005년 5월 9일과 5월 10일에 걸쳐 총 47시간 동안 진정인에게 7시간 정도의 수면 및 휴식시간을 제공하였을 뿐 40시간에 걸쳐 심야시간에 집중적으로 진정인을 교도관실(구치감) 및 검사실에 불러 대기시키거나 조사를 실시한 사실, 그리고,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구속한 후 총 4회에 걸쳐 소환하여 조사하면서 소환 때마다 적게는 4시간, 많게는 9시간 동안을 구치감에 대기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2일 동안 심야조사를 실시하면서 진정인을 모두 오전 9시경부터 출정시켜 교도관실에 대기시키다가 오후 또는 저녁 시간대에 조사를 개시하였고, 또한, 조사대기 시간 동안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없었으며, 해당 검찰청의 심야조사보고서철에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진정인이 심야조사 중 교도관들에게 코피를 흘리며 심신의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였습니다.

### 상담: 경찰이 슬리퍼 신은 채로 잡아갔어요.

형은 말을 잘 못하고 행동이 늦어 의사소통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경 ○○경찰서에서 절도가 의심된다며 형을 연행했습니다. 외투, 양말도 못 신고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잡혀가 다음날 새벽 4시 넘어서까지 폭행을 당하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경찰관은 형의 동의도 없이 증거품을 찾겠다며 집에 찾아와 서랍을 뒤지고 펜치와 드라이버 등을 쟁겨갔습니다. 형은 경찰서에서 변호사 도움 등에 대해 얘기를 들은 것 같다고 하는데, 담당 경찰관의 이름은 알려주지 않아 모른다고 합니다.

경찰은 새벽 5시경 혐의가 없다며 형을 풀어주면서 택시비 5만 원을 주었습니다. 형은 조사과정에서 가슴을 얻어맞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아파서 일을 나가지 못합니다. 경찰의 폭행은 부당한 행위가 아닌지요? 형이 비장애인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답변: 신체의 자유 침해로 진정해 판단을 받아보시죠.

「범죄수사규칙」 제10조에 따르면 필요 이상으로 불편이나 혐오감, 기타의 괴로움을 주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고, 제167조에서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심야에 조사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시에도 예외규정이 있긴 하나,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의 적법절차 위반과 연행과정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 영장주의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도자료 2009년 3월 9일

#### 피의자 얼굴에 비닐봉지 씌운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택시비 문제로 택시 기사와 지구대를 방문한 진정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얼굴에 약 30분간 비닐봉지를 씌워놓은 사건과 관련, 경찰청장에게 ▲A경찰서 지구대 지구대장을 주의 조치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이 지구대 내에서 침을 뱉자 경찰관은 쓰레기배출용 반투명비닐봉지(80cm×60cm)를 진정인의 얼굴에 당일 3시 36분부터 경찰서로 인계되는 4시 3분경까지 27분여간 씌워 놓았고, 중간에 진정인이 호흡곤란으로 괴로워하며 뒤척여 비닐봉지가 벗겨지려 하자 다른 근무자가 비닐봉지를 다시 한 번 눌러 씌웠습니다. 이 과정을 외부인 2명이 지구대에서 목격하는 등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찰서로 인계 후에도 또 다른 경찰관이 자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헬멧을 착용시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들이 27분여간이나 진정인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워놓은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 징계조치 및 관리책임자인 지구대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상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재직 중인 현직 경찰인데, 동료 경찰을 상대로 진정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중학생인데, 2009년 1월 절도죄로 구속됐습니다. 체포 당시 집에 함께 있었는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또한 영장도 없이 집을 수색하였습니다. 수색 당시에 아들은 수갑에 채워지고 포승에 묶여 있었습니다.

답변: 미란다 원칙 미고지, 영장 없는 가택수색에 대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 영장 없는 가택수색 등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위원회에 진정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 관련 조항

헌법 제12조 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보도자료 2007년 8월 8일

“미란다 원칙 고지했다면 오인체포 막을 수 있었을 것”

“마약 밀수범이 아닌데도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오인하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우고 체포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진정인 김모 씨가 모 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상대로 2007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모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수사관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직무상 수사와 관계 있는 검찰공무원은 수사 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고도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0조에는 직무상 수사와 관계 있는 검찰공무원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피의자가 도주나 폭력으로 저항하는 등의 사유로 사전고지가 불가능할 때 사후고지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체포하기 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 피진정인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면 오인체포를 막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체포행위 당시 공범들의 수가 많은 반면에 수사관의 수는 적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해 진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마약범죄자의 공범으로 오인하여 긴급체포한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배,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상담: 검찰이 가족에게 벌금 납부를 독촉합니다.**

22세의 아들은 벌금을 내지 못한 채로 집을 나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당시 임신한 딸(누나)이 아들(동생)의 신원보증을 서고 석방되었습니다. ○○지검은 임신한 딸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동생의 벌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의 벌금미납 사실을 알고 있느냐, 수배되어 있으니 가족이 납부하면 좋겠다.'라는 식의 독촉을 하더군요. 아들의 벌금에 대해서 임신한 딸과 가족에게 필요 이상으로 통보하고 독촉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답변: 검찰의 벌금 납부 독촉이 과잉고지인지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가족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벌금납부 독촉을 하여 스트레스를 주는 것에 대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행동이 과잉고지인지도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미납은 체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촉한 것이 정당한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2007년 1월 30일

**“벌과금 징수절차를 위반한 형집행장 발부는 인권침해”**

“200만 원 벌금형에 대해 검찰이 납부명령 후 납부독촉절차 전에 이미 형집행장 및 지명수배로 강제집행명령을 내려 경찰이 진정인을 자택에서 체포·구속한 것은 벌과금 징수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며 2006년 5월 황모(남·34)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벌과금 징수절차를 위반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한 D지방검찰청검사 및 집행업무담당자에게 각각 주의 조치할 것을 검찰총장(D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벌과금 징수절차는 징수금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면 「검찰징수사무규칙」에 의거해 ① 징수금의 조정 → ② 납부명령 → ③ 납부독촉 → ④ 강제집행 → ⑤ 노역장유치집행의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69조에 의한 벌금 납입기한인 30일 경과 후 검찰의 납부고지서가 있을 후에도 미납되고, 납부독촉고지서 있을 후에도 미납되며, 최종적으로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징수명령 또는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순차적으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은 이미 납부독촉 전에 형집행장발부와 지명수배입력을 완료하여 벌금집행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이나 노역장유치집행에 곧바로 들어갈 수 없고, 검사가 납부의무자에게 재차 납부독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능하면 자진납부를 독려하여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을 덜고, 노역장유치집행의 보충성(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다른 수단을 모두 동원한 후에 최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을 견지하기 위함입니다.

상담: 강제로 소변을 보게 하고, 체모를 뽑아갔어요.

지난 7월 어느 날 저녁 9시 30분경 ○○경찰서 소속 경찰 3명이 제가 일하고 있는 포장마차에 와서 소변과 체모를 채취하려고 하더군요.

영장도 없이 그럴 수 있느냐고 항의하니 안 되면 강제로 잡아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마약 전과가 있지만, 영장 없이는 못 하겠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들이 저를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 소변을 보게 하고 체모를 채취했습니다. 그러고난 후에 동의서를 받더군요. 일련의 과정은 제 동거인과 포장마차 맞은편 노래방의 형님이 모두 봤습니다.

답변: 영장 없이 소변과 체모를 채취당한 것에 대해서 진정하세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 시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이런 경우에도 임의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소변과 체모를 채취당하셨다면, 인권위에 진정해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받아 보십시오.

소변채취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2007년 10월 26일

동의 없는 피의자 소변채취는 인권침해

주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판단내용과 이유

가. 소변검사의 사전동의 여부에 대해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주장이 상반되나 당시 진정인이 피진정인 황○○의 요구에 별다른 이의 없이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준 점, 피진정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마약복용 여부를 질문하였던 점, 진정인 처의 진술이 진정인의 주장과 다른 점 등으로 볼 때 진정인이 소변을 받아 피진정인에게 건네줄 당시 마약검사 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마약복용 여부를 위한 소변검사를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할 경우, 조사의 임의성 확보 등을 위해 사전의 상대방의 구두뿐 아니라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상대로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소변검사를 실시한 것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상담: 갑작스러운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방어했을     뿐인데, 공무집행방해죄래요.

처남을 대신해 상담합니다. 제 처남은 절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처남이 논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관 2명이 찾아와 절도혐의가 있다며 지구대로 가자고 했답니다. 처남이 이유를 몰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입술을 다쳐 피가 났다더군요. 결국, 경찰은 절도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내용 외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처남에게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끌고 갔습니다. 알고 보니, 옆집 할머니가 쌓아둔 고물을 처남이 가져갔다고 신고한 것이었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날 할머니가 허위신고라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처남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처남은 60평생을 한곳에서 농사만 짓고 산 농부입니다. 경찰서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라 갑작스러운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깜짝 놀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입니다.

### 답변: 적법절차 위반 여부나 권한 남용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해 판단받아보세요.

미란다 원칙 미준수, 영장주의 위배 등 체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 여부 등은 위원회에 진정해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 { 공무집행방해죄 남용 관련 유사 상담사례 }

#### 동영상 촬영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2009년 5월 대구유통단지 인근을 지나다 지인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지인의 요청으로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취객 2명이 촬영을 막고 팔을 꺾으며 “공범이니 체포해야 한다”라고 하자 경찰이 상황 설명 없이 호송차에 태우더니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관련 언론보도 · 연합뉴스 2009년 11월 19일

#### “공무집행방해 수준 아니면 함부로 처벌 못해”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형법상 업무방해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백한 폭행, 협박, 속임수로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해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를 정도가 아니면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경찰청에서 욕설을 하고 복도에 주저앉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 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위계에 의한 것만 처벌하게 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신설된 것은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런 행위에 국한해 처벌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원은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승태, 안대희, 차한성 대법관은 공무원에게 위력을 행사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한다는 기존 대법원의 판례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씨 등은 2008년 7월 충남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을 찾아가 자신들의 진정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자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밖 복도에 1시간 동안 주저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차대운 기자

### 상담: 신고자는 무시하고, 피의자와 악수하며 인사하더군요.

○○소제 ○○찜질방을 자주 이용합니다. 저녁에 사우나 후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찜질방 주인 아들과 쿠폰 이용에 대한 오해로 다툼이 있었고 주인 아들로 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곧바로 112에 신고하자, 주인 아들은 “내가 이곳 지구대를 잡고 있다.”라며 비아냥거리더군요. 출동한 경찰은 주인 아들과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고, 신고자인 제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40분간 영업방해로 손님 2명이 되돌아갔기 때문에 긴급체포한 것이다.”라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경찰서에 CCTV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더니, “보존기간이 1주일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또한 이를 뒤, 대질신문에서 주인 아들은 “나는 사과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지구대 경찰이 ○○경찰서로 가서 해결해주겠으니, 사건을 끝내지 말라는 취지로 말해서 사건이 계속 진행되게 되었다.”라고 말하더군요.

### 답변: 경찰의 수사가 인권침해인지 진정 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165조에 따르면, ‘조사를 함에 있어 예측이나 단정을 배제해야 하고 기타 관계자의 진술, 변명 등의 내용에만 구애되지 말고 어디까지나 진실 발견에 노력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 없이 심증적인 우려만 가지고 편파성을 밝히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긴급체포 요건 불비나 정보공개청구 불응인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편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욕했다고, 시민을 폭행하고 모욕죄까지 씌우다니요.

2008년 8월 어느 날 새벽 2시경 음주 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경찰서 지구대의 검문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승객인 제게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거절했음에도 경찰이 계속 요구하여, 욕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닐곱 명의 경찰은 저를 택시에서 강제로 끌어내 바닥에 눕히고 구둑발로 얼굴을 짓이겼습니다. 수갑을 채우고 지구대로 호송하는 차 안에서도 경찰 모자로 얼굴을 2대 때렸습니다.

2시간 후 ○○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모욕죄로 처벌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비록 술을 먹은 상태였지만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택시 기사도 제가 암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붓고 상처가 나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고자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스캐너로 첨부할 생각입니다.

욕한 것은 잘못이지만 경찰이 시민을 폭행하고도 모욕죄로 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인권위에 진정한 것을 이유로 경찰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겠지요?

### 답변: 경찰의 폭행에 대해서 진정 후 판단을 받아 보십시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장구의 사용 한도를 넘어 경찰장구를 사용했는지,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무자세를 위반했는지 등을 조사해봐야 합니다. 인권위에 진정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받아보세요. 그리고 인권위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 또한 진정권 방해로 인권위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의 과잉장구 사용 및 폭행 유사 상담사례 }**

**신분증 없다고 수갑을 채우다니요.**

집 앞에서 운동복 차림으로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 경찰들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신분증이 집에 있다고 했더니 경찰이 무조건 수갑을 채웠습니다. 수갑을 찬 채 집에 들어가 신분증을 보여줬더니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난동을 부린 것도 아닌데, 전기총까지 발사했어요.**

2009년 4월 어느 날 새벽 1시경 부인과 이모님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명의 남자 4명이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112 순찰차가 와서 저를 인근의 지구대로 연행하겠다고 해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네댓 명의 경찰관이 갑자기 저를 제압하며 수갑을 채우고 전기총을 왼쪽 옆구리에 2회 발사했습니다. 전기총탄(뉘싯바늘과 유사)이 몸에 꽂혀 인근 병원에 가서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난동을 부린 것도 아닌데 전기총까지 발사해도 되는 겁니까.

보도자료 2009년 5월 21일

**재갈(수건) 물려 사망케 한 해당 경찰관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4월 21일 새벽 A경찰서 B지구대에서 발생한 피의자(이하 "고인") 뇌사·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으며, ▲경찰청장에게는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직원들에 대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도록 할 것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을 들어 관련 경찰서장 등에 대하여 주의 조치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서에서 주취자 문제로 고심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경찰관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하여도 청구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주취자를 대응함에 있어 천편일률적으로 그 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도 어렵고, 설령 그 대응안을 마련한다 해도 현장성을 무시하고 시행하는 것 역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경찰관의 근본적 직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때, 업무 집행상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였으므로 관련 경찰관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거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경찰관의 행위는 국민이 경찰에 기대하는 통상의 직무수행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아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자료 2009년 10월 21일

**"순찰차 호송 중 피의자 폭행한 경찰관 검찰에 수사외박"**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를 순찰차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의 폭행·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이 석방 직후 촬영한 사진에서 목과 얼굴 부분의 출혈과 타박상, 머리 카락이 뺏혀 나간 자국이 확인되고, ▲체포 전 함께 있던 친구 등이 당시에는 진정인 얼굴에 상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석방 직후 목, 얼굴, 치아 등의 상해 치료를 받은 병원 진료 기록과 ▲상처 모양이 자해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담당의사의 소견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진정인과 함께 체포되었던 B씨의 면회 관련 기록에서도 B씨가 동일 경찰관으로부터 구타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경찰관이 진정인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형법」 제125조에서 정한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경찰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상담: 형사가 주변에 피의사실을 유포하며 합의를 강요하고 있어요.

형사 처벌로 1년을 복역하고 2008년 9월 출소하였습니다. 지난 6월경 담당형사 P는 제 약혼녀에게 전화하여 이미 복역한 사건에 대해 합의중용을 하였습니다. 약혼녀의 아는 언니를 공범으로 모는 등 주변인들에게 피의사실을 알려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약혼녀와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머님께까지 합의를 중용해 어머님께서 매우 놀랐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되어 수감생활까지 한 사건인데, 합의를 중용하고 피의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직권남용을 한 P형사를 철저히 조사하여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형사가 합의를 강요했다면, 직권남용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가족과 약혼녀 및 주변인에게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합의를 중용했다면, 인권위에 진정해 침해 여부를 판단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8조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6.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건관계인 모두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유할 수 있으나, 부당하게 합의를 강요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직권남용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경찰의 사적인 차적 조회 등

주문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교통사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진정인의 차적을 조회한 후,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진정인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보험사고 처리를 하라고 했으며, 남동생에게 진정인 남편의 직장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

판단내용

피진정인이 경찰관 신분이라도 하더라도 자신의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 담당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차적)를 부당하게 열람한 것은 경찰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정인의 남편에게 전화하고 진정인 남편의 직장 전화번호를 남동생에게 알려주며 전화를 하도록 하게 한 것은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제9조 등을 위반하여 「헌법」에서 보장한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한 인격권 및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상담: 미성년자를 보호자 없이 새벽 5시까지 조사하다니요.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미성년자입니다. 얼마 전 새벽 1시 30분쯤 길에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군 ○○파출소 경찰관에게 붙잡혀 새벽 5시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도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했습니다. 미성년을 임의동행할 때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수면을 취할 시간을 주지 않고, 새벽 5시까지 조사를 계속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적법절차를 위반했는지 진정해서 판단을 받아보세요.

우리 위원회는 2005년 12월 ‘미성년 피의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이미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51조에 의하면 구속 사실은 지체 없이 가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규정과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461호) 제64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 경찰의 미성년자 조서관행 문제점 유사 상담사례 }

부모 동의 없이 위협적인 자세로 중학생 아이들을 조사했어요.

중학교 1학년인 아들(12)의 친구들이 자전거를 가져와, 친구들과 함께 아들도 한 번 타 보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3명의 아이를 연행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동의 없이 이틀간 아이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이 새끼 거짓말 할래?”라고 하며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사 3일째가 돼서야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자전거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니 주인이 없다고 하더군요. 어떤 학생의 신고로 조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후 4시경 잠시 조사하고 귀가시킬 것이니 동의서에 지장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은 밤 11시30분경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일이 지나고 ○○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재판한다며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가정법원에 문의하니,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주인과 합의를 했어야 한다더군요. 그러나 그 자전거는 주인이 없는 자전거입니다. 별일도 아닌 것을 사건화하여 아이들을 특수절도범으로 만드는 경찰의 행태를 참을 수 없습니다.

보도자료 2005년 12월 26일

#### 미성년 피의자 인권침해 관련 경찰서장 주의조치

진정인 K(남, 55)씨는 2005년 5월 “경찰이 미성년자인 아들(17)을 긴급체포하고도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조사해 자살에 이르게 했다”며 경기도 의정부 소재 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장에 대한 주의조치 및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인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7조 및 「소년경찰직무규칙」 제31조는 형사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심야에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을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조사 내지 밤샘조사의 경우 그 지속시간과 방법, 정신적 및 육체적 효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및 건강상태 등에 따라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나아가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피의자의 수면권, 휴식권은 물론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상담: 성폭행 피해자에게 만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네요.

제 딸(이하 피해자)은 16세입니다. 어제(8일) 피아노학원 남녀 공동 화장실에서 성기를 노출한 남성(가해자)을 보고 놀라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피아노학원 교사는 출동한 경찰에게 동행하겠다고 했으나 피해자만 지구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피해자에게 거의 협박조로 가해자의 행위를 재연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만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 않느냐’며 조사를 하더군요. 또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부모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하고 가해자 가족들이 피해자의 얼굴을 보게 했습니다. 딸아이는 그 자체로 충격을 받은데다가 가해자 보복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답변: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진정해서 판단을 받아보세요.

「범죄수사규칙」 제10조의2에 따르면,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고, 그 외 피해자 등에게 가능한 한 불안 또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미성년자의 성 관련 피해인 경우라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요, 피아노학원 교사가 동행하겠다고 했으나 피해자만을 연행한 점과 부모가 도착하기 전에 가해자의 행위를 재연해보라는 것은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인권위원회에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경찰의 여성 조사관행 문제점 유사 상담사례 }

성폭력 가해자와 같은 차에 태우려고 하다니요.

○○에서 성폭력을 당해 112에 신고를 했더니 1시간 후에 경찰이 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와 같은 봉고차를 타고 경찰서로 가자고 하더군요. 완강히 거부하여 다른 차를 타고 가긴 했습니다. 담당 경찰은 함께 있던 친구에게 상부상조하는 셈치고 간단하게 끝내라는 식으로 조사해 더는 조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안 쓰고 제가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서 담당 경찰은 고소장을 안 쓰고 갔기 때문에 증거물을 모두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2007년 6월 5일

“성폭력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설명을 한 경찰관 경고 권고”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의(이) ‘나 같으면 안 데리고 살아’ 등의 부적절한 설명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2007년 1월 김모(여·30)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피진정인 김모(남·40) 경찰관과 진정인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하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 같으면 안 데리고 살아.” ‘남성이란 동물은 단순무식해서 내 마누라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이 XXX이, 그 XX하고 이렇게 했지, 이게 나가면서 주먹이 날아가는 거야,’ ‘엄마 입장에서는 사위한테 기를 못 퍼는 거야.’ 등의 표현을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 판단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에서 여성피해자가 보호보다는 사회적인 비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 인지적 관점이 부재한 공무원의 남성 중심적이고 부적절한 성 관념 및 성 인식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수치심, 모멸감, 자괴감, 죄책감 등으로 2차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 ▲피진정인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입장을 이해하며 2차 피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공무원행지라는 점 ▲그럼에도 과거 사회·가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되풀이되던 비극적 피해 상황을 일반화·보편화하여 사실처럼 부적절하게 설명하고, 단정짓고, 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 상담: 경찰이 혐의만으로 남편의 온 주변을 들쭉시고 다닙니다.

2009년 5월, ○○경찰서 경찰관이 마약 전과가 있는 남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 이름을 대며 마약판매자니 사는 곳을 알려달라는 등 과거 전력을 전혀 모르는 회사 동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며칠 후, 또 경찰들이 남편 회사로 찾아왔고, 수사의뢰서를 회사에 발송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옆집을 찾아가 “이런 사람이 사느냐, 부인이 직장생활을 하느냐?”는 등 집안 환경에 대하여 묻고 ○○경찰서에서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일로 이웃들이 “남편이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기에 경찰이 찾아오느냐?”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사 처리된 점에 대해 항의하자 J 경찰관은 “아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라고 답변했습니다.

### 답변: 피의사실 유포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진정 후 판단을 받아보세요.

경찰의 피의사실 유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경찰이 「형사소송법」 제 19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엄수 의무와 인권존중의무’를 위반했는지 인권위 조사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 형사소송법 제198조

②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경찰의 피의사실 유포 유사 상담사례

경찰이 조사 중인 사건을 방송국에 알렸어요.

전 택배기사입니다. 2008년 7월 배달을 갔는데 건물 계단에 깨진 화분이 계단에 있더군요. 위험하다고 생각되어 화분을 쓰레기통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화분 도난사건으로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1주일 뒤 조사를 받았는데 며칠 지나 9시 뉴스에 “○○동에 사는 47세 M모씨는 네팔에서 산 30만 원 상당의 화분을 절도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절대로 화분을 절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게다가 아직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방송이 나가 직장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자녀 불 염치도 없고 주위의 사람들도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의사실을 유포한 ○○경찰서 담당 경찰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2009년 10월 20일

**“경찰, 피의자 동의 없는 방송 촬영협조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A지역 경찰청장에게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방송촬영 협조 시 피영자에게 사전 안내 및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의 행위가 「헌법」 제12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8조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른 관련절차 및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해당 경찰관들은 ▲방송 취지가 범죄예방 등 공익에 부합하므로 협조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기사를 대동해 교통단속업무를 하던 중 진정인을 단속하게 되었는데 ▲사전에 촬영기사의 소속과 신분, 촬영의 이유를 고지하거나 동의를 미처 받지 못했지만, 최초 적발 장소에서 방송촬영 중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있었고, 특별한 거부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상부로부터 방송취지가 범죄예방 등 공익에 부합하므로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고 방송사 카메라 기사의 촬영을 허용했고, 방송사 측은 진정인의 항의가 있어 촬영된 영상자료를 방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언론보도** · 세계일보 2009. 5. 17

**(현장메모) ‘병 주고 약 준’ 경찰 연예인 마약수사**

경찰은 최근 마약을 한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인 가수 구준엽 씨에 대해 “투약 흔적이 없다”는 자료를 냈다. 수사기관이 특정인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인권침해적 수사에 반발한 구씨를 뒤늦게 달래기 위한 군색한 조치였다.

상식 이하의 수사 방법으로 자주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경찰은 이번 연예인 마약사건에서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구씨는 연예인 마약사건이 터지면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연예인이 드나드는 ‘문제의 술집’ 등에서 “구씨를 봤다”는 증언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연예인 수명이 포함돼 있다”고 흘린 게 소문을 부풀렸다. 구씨가 ‘문제의 술집’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문이 퍼졌다.

경찰은 그를 무작정 찾아가 소변과 체모 채취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집 지하 주차장에서 조사받은 구씨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미 두 차례나 수사를 받은 그에게 “당당하면 조사받으라”고 한 경찰 요구는 그야말로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 그 자체다. 김재홍 사회부 기자

# 공권력과 인권, 정의의 저울은 공평한가?

불량만두 파동사건 등 충분한 증거 없는 피의사실 사전유포, 당사자 자살 등 인권침해 심각  
고문·가혹행위, 불필요한 긴급체포, 유전무죄·무전유죄 등 형사절차 구태 벗고 신뢰 회복해야

육성철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사무관

피의사실 사전유포,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해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형사상 적법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적법 절차란 국가가 법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한국이 가입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의 핵심도 적법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자유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던 군사독재 시절, 적법 절차는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기제였다. '떨췌한 대학생을 물고문으로 살해하고 경찰 총수의 주도로 '탁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며 사인까지 조작한 무법천지에서 적법 절차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다.

민주화를 향한 기나긴 투쟁 속에서 권위주의 시대의

무자비한 고문과 폭력은 상당 부분 사라진 게 사실이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시민사회가 출현했고, 과도한 수사를 비판하는 언론도 등장했다. 「형사소송법」도 시대의 여론을 일부나마 수용했고 시민의 권리를 강조하는 양심적 변호사도 많아졌다.

하지만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 사회의 형사절차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내사입건·체포구속·기소·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절차 단계에 단 한 번이라도 포획된 적이 있다면 이런 평가가 나오는 까닭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법치의 논리가 기본권 보장보다 우선하는 위험스런 상황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요즘, 우리나라의 형사절차는 형식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구태를 벗지 못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09년 대한민국 검찰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건국 이래 최초로 검찰의 내사를 받던 전직 대통령이 투신자살하는 참변이 벌어진 탓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검찰의 모욕주거식 수사가 비극적인 죽음을 재촉했다는 분석은 다방면으로 입증된다. 비록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갖는다 하더라도, 혐의가 유사했던 유력인사들의 수사와는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였다. 검찰은 끊임없이 의혹을 흘렸고 언론은 이를 부풀려 또 다른 의혹을 만들어냈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사전유포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수사대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를 활용해 왔다. 제아무리 기세가 당당해도 피의사실이 알려지면 위축되는 게 인지상정이다. 엄밀히 말하면 참고인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는 행위도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배치된다. 뒤늦게 그들의 혐의가 벗겨진다면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 리 만무하다. 언론은 뉴스가 된다 싶을 때는 풍선처럼 키우다가도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면 단신으로조차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란다 원칙, 오인체포 막는 「헌법」상의 기본권

국가인권위는 2004년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 세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두 개의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천시장 굴비상자 사건과 불량만두 파동이 그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굴비상자 사건에서는 수사과정에서 공표된 내용이 충분한 증거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량만두 파동의 경우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피의자를 일방적으로 매도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 사건 이후 선거로 뽑힌 자치단체장은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당했고, 만두를 만들던 중소기업인은 '악덕사업주'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목숨을 끊었다. 인권위가 경찰청장에게 제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권고한 이유가 여기 있다.

헌법에 명시된 적법 절차는 공권력 행사에 관한 합리

성과 정당성을 근거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제도, 체포구속이유 고지 및 통지제도, 구속적부심 제도, 주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제도,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의 원리, 고문 금지와 불리한 진술 거부권, 소급처벌 및 이중처벌 금지, 연좌제 금지, 무죄추정의 권리 등이 해당한다.

이 중 체포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른바 '미란다 원칙'이다. 이것은 수사관이 체포할 때 범죄 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는 사실 등을 알려줘야 한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실제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이 무시되는 예는 허다하다. 일단 체포해놓고 나중에 알려주거나 끝까지 고지하지 않다가 고지했다고 우기는 일까지 있다.

검찰과 경찰은 범인 체포의 특수성을 내세운다. 특히 마약사범처럼 범죄 현장의 긴박성이 전제되는 상황에서 미란다 원칙은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는 변명도 내놓는다. 그러나 역으로 미란다 원칙 고지는 오인 체포를 막는 효과적 수단이기도 하다. 2007년 2월 검찰 수사관은 마약 밀수범이 아닌데도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시민을 체포했다. 미란다 원칙만 지켰어도 사건과 무관한 사람을 공범으로 오인해 수감까지 채우는 소동을 벌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 인권위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2004년 불량만두 파동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피의자를 일방적으로 매도해 한 만두업자가 자살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사진은 당시의 대중시위장면.

체포 시 수갑이나 계구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관행도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꼽힌다. 수사관은 피의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변하지만 과도하게 신체를 억압할 경우 피의자의 심리적 위축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이것은 방어권 약화로 직결된다. 계구는 원칙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를 장시간 결박하는 행위는 시정돼야 할 것이다.

2005년 절도 혐의로 체포된 A씨는 손목에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뒤로 손이 묶인 A씨는 수차례 팔을 들어 올려 고통을 호소했으나 경찰은 이를 묵살하고 계속 조사를 벌였다. 결국 A씨는 수갑 착용의 후유증으로 팔목에 흉터가 남는 상해를 입었는데,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담당 경찰관에 대한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찰관은 상황에 따라 피의자의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장시간 조사대기, 무리한 심야조사도 인권 침해

법률적으로 체포에는 3가지가 있다. 영장발부에 의한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가 그것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긴급체포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영장에 의한 체포는 긴급체포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본래 긴급체포는 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실제 수사현장에서는 일단 잡아놓고 자백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내에 조사를 마치고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여기서 48시간은 이틀이내에 모든 조사를 끝내라는 것이지 시간을 꼭 채우라는 의미가 아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조사가 일찍 끝나더라도 풀려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경찰이든 검사든 누군가를 체포하면 24시간 이내에 피의자의 변호인이나 보호자에게 사건명, 체포 일시와 장소, 피의사실 요지 등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것조차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가 종종 일어

난다. 인권위는 2002년 피의자 가족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진정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총장에게 담당 검사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피의자를 조사할 때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제공하는 것도 당연한 의무다. 피의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장시간 조사대기를 시키거나 심신이 지칠 정도로 심야조사를 했다면 이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인권위는 2008년 피의자를 47시간 동안 심야조사하면서 7시간만 잠을 재운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에게 주의조치를 권고했다.

형사절차에서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예나 지금이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건 판사다. 다만 예전엔 검사가 만든 자료를 보고 판사가 형식적으로 도장을 찍었지만, 지금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면서 구속 여부를 따진다. 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판사가 기각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생기는 까닭이 여기 있다.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발부 비율과 기각률 통계를 보면, 판사에 의한 기각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례로 2003년도에는 기각률이 13.6%였으나, 2008년 전반 기엔 23.9%로 상승했다. 이것을 뒤집어보면 검찰이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물론 여기엔 '불구속수사 원칙'이 차츰 자리를 잡아간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구속 수감된 이후에 벌어진다.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피의자는 잔뜩 움츠러든 채 조사에 임해야 한다.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내용을 협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특권층의 호사일 뿐이다. 과학수사가 발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백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무리한 수사와 그에 따른 적법절차 위반의 문제가 제기된다.

2002년 10월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살인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조모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조씨와 함께 조사를 받던 다른 피해자들에게서도 고문 및 가혹행위의 흔적이 발견됐다. 또한

검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을 긴급체포했으며, 자백을 강요하며 피의자를 폭행해 결국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

#### 술 취한 피의자에 재갈 물려 사망케 한 사건, 고발조치

인권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불법체포, 감금,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홍모 검사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홍모 검사 등 사건관련자 전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고, 인권위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이후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하자 인권위는 대검찰청에 재항고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검찰 스스로 수사의 부당성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관행은 일대 변화를 맞았다. 피의자에 대한 강압 수사가 진행됐던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이 폐쇄된 것도 이때의 일이다.

한때 기업에서 잘 나가는 임원이었던 최씨의 사례는 더욱 충격적이다. 최씨는 검찰 수사관에 연행돼 3박4일 동안 불법 감금당한 채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갈비뼈 두 개가 부러졌고, 4개월 뒤에는 뇌출혈을 일으켜 평생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가 됐다. 최씨에 따르면 자식백 되는 수사관들이 쌍욕을 퍼부으면서 끌어 앉혀 놓고 몸을 밟았다. 심지어 종이를 목구멍에 넣고 피가 나올 때까지 들렀다고 한다.

인권위가 이 사건을 조사하는데 꼬박 1년이 걸렸다. 검찰 관계자들이 인권침해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인권위는 2006년 6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검사와 검찰 수사관 2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최씨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이후 최씨는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재판부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가혹행위 및 독직 폭행을 일부 인정했다.

최씨의 사건에서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 있다. 무엇보다 공권력의 이름으로 가해진 인권침해가 불러올 수 있는 치명적인 후유증이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벗고 검찰의 불법행위를 입증했지만, 망가진 몸까지 회복하지는 못했다. 범죄와 맞서 싸우는 수사기관



범죄와 맞서 싸우는 수사기관의 의욕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결코 간과되지 말아야 할 점이 바로 시민의 인권이다. 사진은 영화 '공공의 적' 중 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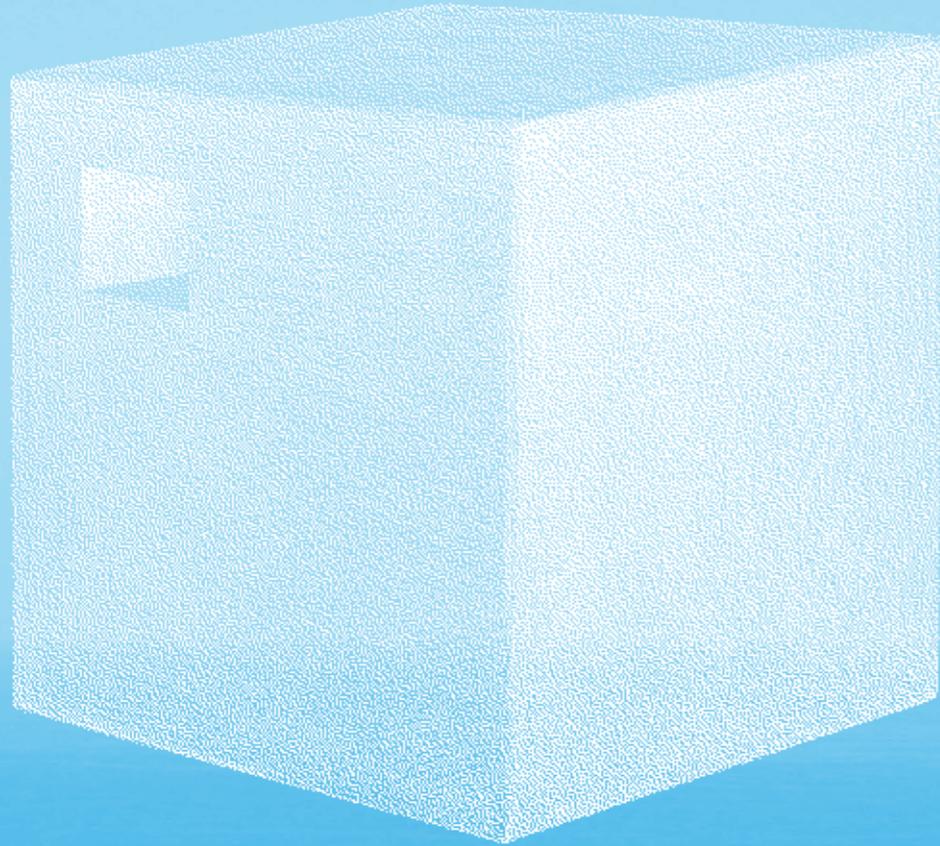
의 의욕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결코 간과되지 말아야 할 점이 바로 시민의 인권이다.

최근엔 경찰의 가혹행위가 과문을 일으켰다. 2009년 4월 한 피의자가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를 연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건으로 재갈을 물렸는데, 인권위는 술에 취한 B씨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CCTV 자료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경찰의 응급조치가 부실해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고 해당 경찰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형사절차의 최종 단계는 재판이다. 사법부의 판단은 사회적 공준이 된다는 점에서 신뢰가 중요하다. 이쉽게도 사법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수준은 큰 진폭을 갖고 움직인다. 77만원을 가로채 생활비로 쓴 중국집 배달원이 징역 10개월을 받는 반면, 몇 백억 원을 횡령한 재벌 총수는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일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적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일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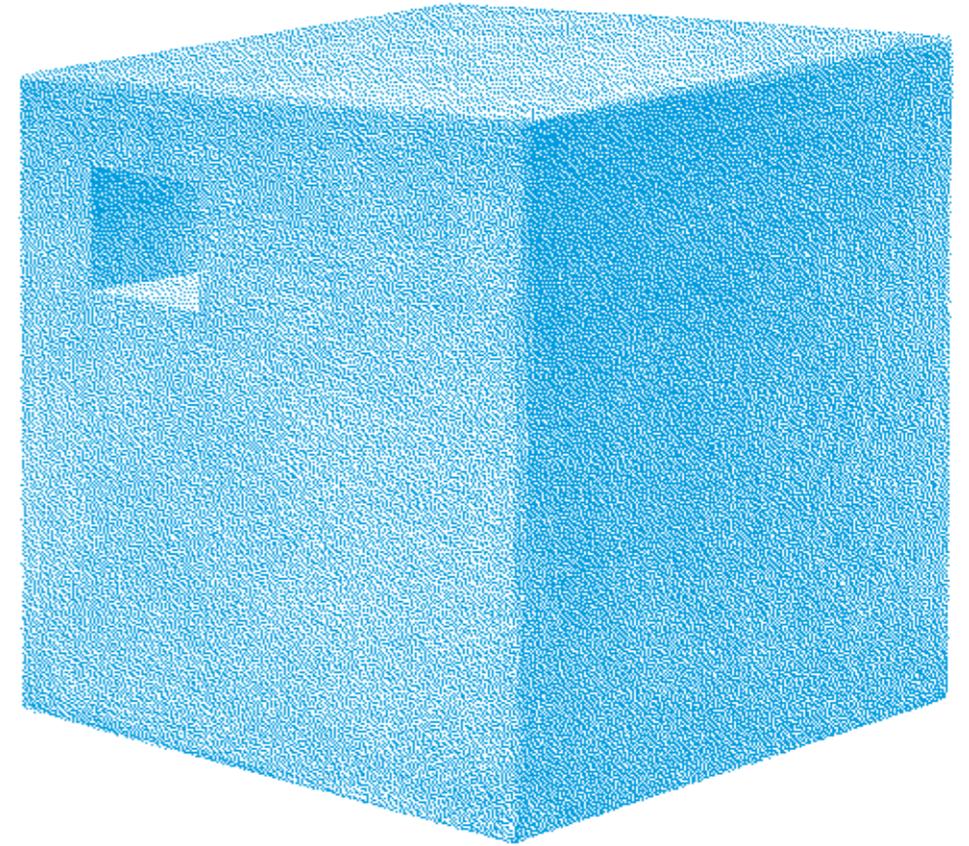
서울 서초동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이 여신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한 손에 천칭, 다른 손에 칼을 들고 있다. 칼과 천칭의 조화처럼 균형 잡힌 결정을 단호하게 내리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이 여신상을 이렇게 비꼬았다. '우리나라 여신은 종종 수건을 내리고 누가 자신 앞에 왔는지 살짝 엿보는 것 같다.' 조국수의 말이 지극히 아프게 다가오는 건 무슨 까닭일까? **법무**

# 2



비인격적 업무 부여 · 계약직 부당 처우 · 자국민 보호 미흡  
선임병의 폭행 · 군대 성폭력 · 군대 괴롭힘 · 이적 출판물 조사  
계급 차별 · 전의경 인권 · 구치소 가혹행위 · 응급조치 미흡  
지나친 수감 사용 · 미결 수용자 기본권

## 국가기관과 인권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 한다”

여의도 농민사망 사건과 관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2005년 12월 27일)

상담: 공무원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을 업무라고 할 수 있나요?

○○시 ○○파출소에 재직 중입니다. 얼마 전 아침에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경찰서로 발령받았는데, 그곳에 가자 서장이 “경찰관으로서 자질이 없다”며 사직을 종용했습니다.

경제적 문제도 있고 해서 사직할 수 없다고 말하자 서장은 “출근시간을 준수 합시다.”라는 내용의 어깨띠와 티켓을 들고 경찰서 정문에서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닷새 동안 서 있으라는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저는 이 업무를 하면서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통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저는 12시간 동안 근무해야 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답변: 공무원으로서 부당한 처우를 당하셨군요.

복무규정 위반 징계를 받는 것과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당하고 비인격적인 업무 부여로 인격권을 침해당한 경우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의 부당처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고충처리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고, 부당징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 :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로도 포함.

보도자료 2008년 10월 2일

“현장시정추진단 대상자 선정 시 걱정 절차 및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가 2007년 시행한 ‘현장시정추진단’ 구성과 관련해,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업무 수행에 있어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서울시는 현장시정추진단 구성 기준을 ‘무사안일 직무태만자, 조직내 화합을 해치는 자, 품위 및 이미지를 훼손한 자, 봉사마인드가 부족한 자 등’으로 정하고, 이러한 기준을 마련한 후 10일 이내에 각 부서별로 3%에 해당하는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대상자 중에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장애인·질환자·정년퇴직예정자·소수직렬 등이 상당수 포함되었고, 5급 이상 직원은 34명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해당자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공무원 사회 내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 판단과정에서 향후 인권침해 행위의 예방 필요성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 또는 검토 중인 점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상담: 공무원으로서 부당한 처우를 당했습니다.

저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에서 계약직 영사보조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무 당시 L대사로부터 갖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컨대 권한 외 업무를 지시하고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너는 나라가 고용한 개다”, “보잘것없는 행정원 주제에”, “서울대 안 나온 것들은…” 등 막말을 하고 인격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처우로 저는 원형탈모 증세를 겪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영수증이 100장이 넘으며, 심지어 하루 18시간이 넘는 과도한 업무 때문에 유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대사는 보험이나 보상처리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저 말고도 몇 사람들이 외교통상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외통부 L감사관은 대사를 보호하는 듯한 언행으로 사건을 무마했습니다.

매년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관행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약 만료 30일이 지나서야 계약해지를 통보받았고,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 차량 등을 제대로 처분하지 못한 채 쫓기듯 귀국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년간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국비행기 비용도 지원해주지 않아 자비를 썼습니다. L대사의 부인은 제가 귀국하기 전 돈봉투를 건네면서 이 일을 문제 삼지 말라더군요.

답변: 국가기관 공무원의 소속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는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입니다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인권침해적인 언행을 일삼는 경우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외교통상부가 피해자의 호소를 무시하고 사건을 종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한편 계약직공무원이라는 비정규직 신분을 이유로 계약만료일이 지난 후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는 불이익을 받거나 임금외 금품지급에 있어 차별을 당한 경우도 인권위 조사대상입니다.

상담: 영사와 외교통상부는 왜 있는 건가요?

자주 해외 출장을 다닙니다. 2008년 3~4월경 외국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다가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11일 동안 무고하게 불법 구금되고 재판관을 받았습니다. 마약 소지 혐의였지만 재판 후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외국 경찰은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체포했을뿐더러, 석방 시 옷도 주지 않아 죄수복을 입고 나와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영사입니다.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 법정에서 영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자 “어쩔 수 없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넘게 징역을 살아야 되니 마음 단단히 먹어라.”라는 말만 했습니다. 게다가 입국 후에도 여러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고 급기야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체포 당시 영사나 외교통상부가 진상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자국민 보호에 나섰더라면 저는 11일간 구금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답변: 재외 공관의 자국민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은 조사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부당하게 체포, 구금되었으나 영사관과 외교통상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사국 수사기관의 부당한 체포, 구금 등의 과정에, 한국영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발생한 자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당사국의 수사 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 영사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한편 당사국에서 무죄판결이 난 사안에 대하여 한국 수사기관이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었다면 그에 대해서도 인권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아들이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아들은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된 뒤 10일 만에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무반 사수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병신 새끼, 죽일 새끼”라고 욕하면서 폭행을 일삼고, 면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도 신병이 무슨 면회냐고 나가지 말라고 했답니다. 얼마 전에는 자정 무렵 보초 근무를 서던 중 사수가 철모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고 합니다.

이튿날 새벽 아들이 청소도구를 찾으러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부터 아무 기억을 못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신을 잃은 채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허리와 양쪽 어깨뼈가 부러지고 아킬레스건 부위를 다쳐 1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군에서 수사 중인데 군에서 수사진행 상황을 말해주지 않아 불안합니다.

**답변: 선임병의 가혹행위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입원소식에 얼마나 놀라셨는지요. 군대 내 선임병의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위원회가 조사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폭행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군대 내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군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토론회, 군인의 의료접근권 보장, 군대 내 상습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권고,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권고 등 다양한 실태조사와 정책권고를 해왔습니다.

**여러 상관에게 폭행당했으나 사건은 은폐 조작됐습니다.**

저는 지난 2004년 하사로 군에 입대하여, 현재 중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상관에게 수십 차례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K중사는 부대의 외곽건물이나 진지포 상에서 손바닥으로 내담자의 뺨을 때리고, 군화로 옆구리나 하반신을 가격하고, 철제공구로 머리를 수회 때렸습니다. K중사는 근무지나 숲속에서 내담자의 목살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등, 복부를 수회 때렸습니다. 또 S중사는 근무를 대신 서라고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내담자에게 군화를 착용한 발로 가슴을 2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가량 때렸습니다. 저는 친척을 통하여 해당 부대에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해당부대의 지휘관 등은 “조용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저와 동료 하사의 야전상의를 바꿔 입게 한 다음, 그에게 대신 진술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은폐, 조작했습니다.

**보도자료** 2006년 3월 7일

**“군대 내 상습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되어야”**

“군대내 상습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심장질환이 발병하였음에도 군이 사건을 은폐·방치하고 미온적으로 처리하자 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2004년 4월 피해자의 모친 김모씨(51)가 육군○○보병사단과 ○○대대장 등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가 군 복무 중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 증세에 대해 전·공상 재심의할 것과, 관련규정 보완 및 사고예방대책 마련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당시 대대장·소대장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는 전역한 당시 가해자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제2항(폭력 등),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2003년 8월부터 9월말까지 ○○중계소에서 피해자에게 ▲2003. 8월 초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 뺨, 머리박기 등 수회 폭행하고 ▲2003년 8월말 병영생활행동강령 미숙지로 인해 뺨을 수회 폭행하고, ▲'2003년 9월 초 눈과 성기에 맨소래담을 바르도록 여러 차례 강요하고 ▲구타 시 손목이 빠졌다고 손목과 발목에 지압 및 마사지를 강요하고 ▲2003년 9월 중계소 근무지에서 피해자를 엮어치기 하여 앞니 2개 파절 및 치료비를 못준다고 가혹행위를 하고 ▲2003년 9월경 녹골 골절(3개)상을 입히는 등 거의 매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사단 군중병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자대복귀를 한 이후 대대장과 중대장은 구타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규정에 따른 정상처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장기간 은폐(대대장 16일, 중대장 26일)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의무심사에서 비전공상으로 처리되어 의병전역이 아닌 만기전역을 한 사실과 ▲피해자의 정신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전역 후 정신과 진료를 통해 확인됨)는 군복무 중 발생한 구타 및 가혹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담: 동기가 군대에서 성추행을 당했어요.

동기 중에 선임병에게 성추행을 당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대했는데, 아직도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대 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선임병의 성추행 현장은 저도 목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동기에게 진정하도록 권해주세요.

군대 내 인권침해는 인권위 조사대상입니다. 성폭력의 경우 증인이나 증거를 찾기 어려워 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목격자가 있다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성폭력은 침묵을 강요당하는 측면이 있어 피해자가 다른 범죄 피해에 비해 더 큰 고통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친구와 상의하여 진정을 하도록 권하세요. 제3자에 의한 진정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인권위 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조사가 어렵습니다.

상담: 건강하던 아들이 군대에서 자살했어요.

아들은 지난 2008년 1월 군에 입대하여 휴전선 GOP에서 근무했습니다. 지난 7월 휴가를 나왔는데 며칠 뒤 투신자살했습니다. 아들은 5월말 첫 휴가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근무초소가 바뀐 6월부터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초소가 바뀐 뒤에는 이틀에 한 번씩 하던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고, 잠도 충분히 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초소에는 7명이 근무했는데, 다른 6명이 아들을 왕따시켰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전화로 계속 힘들다면서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나오자마자 바로 정신과로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의사는 진단서를 발급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아들에게 잘 극복해보라고 했는데, 그걸로 부족한 것 같아 귀대 전날 종합병원 정신과를 예약했는데 진료를 받기 전 투신한 것입니다. 아들을 자살까지 몰고 간 군대 내 왕따와 인권침해에 관해 조사해주시시오.

답변: 진정하시면 조사가 시작됩니다.

아들의 자살 소식으로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군대는 사회와 달라 그 안에서 왕따 등 따돌림이 있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군대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서점에서 구입한 책이 이적 출판물이래요.**

저는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고 군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조사관의 질문에 대해 제가 기억을 못 한다고 말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긴 뭐가 아냐? 이렇게 했잖아! 따라 해봐!”라고 시킨 뒤 따라 하면 “거봐! 그렇게 했잖아!”라며 조서에 기록하더군요. 또 방을 수색하여 일반 서점에서 파는 책을 가지고 이적 출판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서 산 것이라고 하자, 평소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품었다고 진술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제가 조사받는 날, 저희 부대에 탐문조사를 나와서 병사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는데, 아는 병사가 말하길 설문지 내용을 보니 제가 큰일 낼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조사과정을 녹화한 CD는 기무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와 국방부 중 어느 곳에 조사를 의뢰할지 고민입니다.

**답변: 양심의 자유 침해, 적법절차 위반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기무사가 조사과정에서 강요와 협박으로 거짓 자백을 하도록 유도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서점에서 구입한 책을 이적 출판물이라고 해석하고, 동료병사에게 설문지 형식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 역시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기무사의 조사과정을 녹화한 CD는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인권위 진정시 첨부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보도자료** 2009년 10월 19일

**인권위, '군내 불온서적 차단' 관련 현재 의견제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2008년 7월 22일 소위 불온서적 목록을 첨부하여 각 군 본부 및 예하부대에 내려 보낸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라고 함) 등의 기본권 침해성을 심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2008헌마638 사건 재판부에, 이 사건 지시 등은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9조가 보장하고 있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하거나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우려가 크므로 재판 시 이점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 지시 등이 양심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떠한 책을 선택하고 읽을 것인지에 대한 자유와 권리는 이성 과 양심을 가진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이러한 자유와 권리의 영역에 있어서는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요청이 제복을 입은 군인의 신분보다 우선합니다. 둘째, 이 사건 지시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큼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 사건 지시 등의 위헌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줄 것을 희망합니다.



상담: 군대에서 정신질환을 방치해서 아들이 탈영했어요.

아들은 2006년 8월 ○사단에 입대했는데, 입대 6개월 후부터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상 행동을 보여 몇 차례 부대 안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저도 자주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군의관은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아들이 제대하기 위해 일부러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민간 병원에서 진단을 받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급기야 아들은 탈영을 시도했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2007년 11월 ‘인지기능 및 각성에 관한 증상 및 징후’라는 병명으로 국군C병원에 입원한 후 2008년 1월 의가사 제대했는데, 제대 후 국립S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정신분열병, 편집형 F200’이라는 진단을 받아 한 달여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부대에서 아들의 정신질환을 발견하고도 이를 방치했기 때문에 결국 제 아들이 탈영했고 병도 악화되었습니다. 지금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정신질환을 방치한 군대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군복무 부적응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껴병으로 단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군대의 의료조치 미흡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가 가능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2006년 실시한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인들의 부적응의 원인으로 ‘선임병과의 갈등’ ‘비합리적 군대문화’ ‘고된 훈련’ ‘부당명령 및 처벌’ 등이 지적됐습니다. 현재 각 부대에서 부적응자 예방 및 관리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는 미진해 보입니다.

상담: 초급장교라고 개인차량을 못 타게 하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

저는 올해 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그런데 초급 장교들은 사고 위험이 있다고 5년 동안 차를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초급장교라고 차도 못 타게 하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

답변: 유사 사안에 대하여 인권위 결정이 있었습니다.

계급에 따른 차량 이용 제한과 관련,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되어 인권위에서 육군참모총장에게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권고에 대하여 군에서도 수용 의사를 통보해왔습니다. 인권위 결정을 참고로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시정되지 않은 경우 인권위에 진정하면 조사가 가능합니다.

유사 사건 위원회 결정문 2008년 8월 7일

군대 내 계급별 차별

주문

피진정인에게 미비한 관련규정의 정비 및 초임간부에 대한 차량 소유 및 운행 제한을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내용

사단규정으로 부사관은 8년, 장교는 4년 이상이 되어야 개인차량 구입을 허용하고 있음.

판단내용과 이유

진정인은 직업군인으로(중사) 근무하며 사단 내규에 근거하여 자신의 개인차량 운행을 제한받고 있는 바, 직업군인으로서 개인차량은 단순히 출·퇴근용 군부대 출입 이외에 휴가나 휴일에는 사적인 개인생활이 가능하므로 사적 영역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이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권고 수용 여부

수용

### 상담: 아들이 의경인데 고참의 구타, 옥설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아들은 지난 2월 의경으로 입대하여 3월 말 S경찰서 교통계에 배치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아들이 근무 중 집으로 와 고참의 구타와 옥설을 견딜 수 없 다면서 옥상에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아들은 구타 때문인지 눈이 다 풀려 있고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S경찰서 감찰계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아들은 구타가 10회 이상이라고 말했으나 조사 결과는 1회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현재 우울 증이 심한데 N경찰서 의경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 중대장은 상 부에서 결재가 나지 않아 치료 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중대장이나 부관은 문제가 커지면 불이익이 있다며 아들을 회유하고 협 박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은 빨래나 식사 등 생활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겪었다 고 합니다.

### 답변: 상관의 가혹행위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자살 시도에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의경부대에서 상관의 구타와 옥설 로 자살을 시도했다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자살 시도에 이르게 한 의경부대의 인권 상황과 상관의 가혹행위에 대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긴급구제조치는 진 정접수 후에 인권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당장 의료조치 권고 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 { 전의경 인권침해 관련 유사 상담 사례 }

구타로 경찰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제 아들 K는 1992년 4월 전투경찰대에 입대한 후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근무했습니다. 아들은 1993년 8월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특박을 받았는데, 귀대 후 훈련 중 선임 전경에 게 기합을 받고 복부와 가슴 등을 구타당해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결국 헛소리를 하는 증세로 같은 해 9월 경찰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하여 1년 6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분열형 정 동장애 및 양각성 정동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2009년 5월 1일

#### 경찰청, 전의경 직권조사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 등 4개 지방경찰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전·의 경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통지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 측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향후 전의경 부대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혀온 데 대하여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전·의 경들이 보다 인권친화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복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상담: 구치소에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구치소에 있다가 얼마 전 출소했습니다. 출소하기 며칠 전 저녁, K주임 및 L계장과 호실 배정 문제로 말다툼을 했는데, 갑자기 주임이 저를 CCTV가 없는 밀폐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수갑과 포승줄로 결박했습니다. 그 후 저를 매트리스 위에 눕혀놓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고, 다리를 묶은 후 발바닥을 운동화로 치는 등 30분 동안 구타했습니다. 그런 다음 K주임이 쓰레기통을 부수더니 제가 그랬다는 식으로 자술서를 쓰게 했고, 제가 서명을 하지 않자 다시 수갑과 포승줄로 묶은 다음 채차 구타했습니다. 가해자의 사과를 원합니다.

답변: 교도관의 가혹행위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입니다.

교도관의 가혹행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인권침해행위가 확인되고, 피해자가 사과를 원하는 경우 인권위가 가해자의 사과를 권고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 인권국에 진정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보도자료 2003년 6월 11일

“수용자 구타한 교도관에 특별인권교육 권고”

“구치소 수용중 교도관에게 구타를 당했다”며 윤모씨(22)가 2002년 9월 성동구치소 이모 교사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모 교사에게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수업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중인 윤모씨가 성동구치소 수용 당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재판대기실에서 다른 사건의 공범들과 싸웠다는 이유로, 재판을 마치고 귀소한 뒤 출정과 사무실에서 위 싸움 사건에 대한 자술서를 쓰는 과정에서, 성명 불상의 교도관으로부터 목덜미와 뺨 등을 서너 차례 구타당하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시 함께 조사를 받았던 수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모 교사가 윤모씨의 목덜미와 뺨을 구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윤모씨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로서 서울지법 북부지원 출정 당시에도 환자복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및 제12조(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피진정인 스스로 구타사실을 시인하고 진정인에게 직접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인권교육 수업을 권고했습니다.

상담: **지병이 있는 사람을 보살피지 않아 죽게 생겼습니다.**

동생은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는데, 지난 3월 U구치소에 입소했습니다. 입소 전 유치장에서도 고혈압으로 인한 두통 때문에 응급실에 2차례나 입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교도관이 연락했는데, 동생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의사를 만나니, 소생 확률이 10%이며 살아나도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 수술 후 뇌사 상태입니다.

이후 제가 구치소를 방문하여 같은 방을 쓰던 J씨와 접견했는데, J씨에 따르면 동생이 기상 후부터 계속 머리가 아프다며 쓰러져 J씨가 교도관에게 알렸으나 교도관은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동생은 계속 통증을 호소했고, J씨는 사동 근무자에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뇌사에 이른 것은 U구치소 측이 초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시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치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의료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수용자가 초기에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여 뇌사상태에 이른 것이 구치소의 응급조치 미흡에 기인한 것인지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위생·의료 조치의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부상자 등 치료)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보도자료 2009년 2월 2일

**“응급환자 외부병원 이송조치 지연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A교도소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야간 당직 교감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휴일 및 공휴일에 응급수술 등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신속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진정인은 2008년 8월 17일 05:00경부터 심한 복통 증세가 있어 보건의료과에 2~3회 방문하였지만 휴일이라 보건의료과장 등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관계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19:00경 보건의료과 숙직직원인 간호조무사는 진정인의 증세가 맹장염으로 의심된다며 당직교감에게 외부병원 이송을 건의했으나, 당직교감은 진정인의 증세가 맹장염 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고 피병일 가능성도 있다고 임의로 판단해 외부병원으로의 이송을 불허했습니다. 다음 날인 2008년 8월 18일 10:30경 보건의료과장은 진정인을 외부병원에 이송하였으며, 진정인은 당일 13:00경 맹장염 수술을 받은 후 2008년 8월 19일 퇴원했습니다.

「구 행정법(2007.12.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병원이송) 제1항은 교도소장 등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 등에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제연합의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제2항은 전문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피구금자는 전문시설 또는 일반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장 등의 직무를 대리하는 휴일 당직 교감은 야간이라도 외부병원 진료에 필요한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담: 강력범도 아닌 여자를 병원에 데려가며 수갑을 채우다니요?

지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방광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호송하면서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웠다고 합니다. 지인은 강력범도 아닌데다 여자고 환자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제가 병원에 면회를 가니 창피해서 병원에 못 오겠다면서, 앞으로는 아파도 그냥 참고 말겠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조차 침대에 수갑을 채워놓고 여자 1명, 남자 2명의 교도관이 24시간 지킨다고 합니다.

### 답변: 법무부에서 관행 개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도주 위험성이 낮은 중증 장애인이나 중환자, 임산부에 대해서 호송 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70세 이상 노인과 여성 수용자는 포승 없이 수갑만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에 약속불이행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보십시오. 그리고 법무부의 공식발표가 있었는데도, 개별 구치소에서 관행적으로 수용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저희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09년 6월 12일

#### “외부병원 호송 시 수갑과 포승을 한 수용자의 얼굴 노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A구치소장에게 ▲수용자를 외부병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얼굴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보호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수갑과 포승을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용자 호송업무를 개선할 것과 ▲호송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A구치소 측은 외부병원으로 투석을 받으러 가는 수용자를 호송할 때 수용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면서 수용자의 얼굴과 수갑 및 포승을 가릴 수 있는 조치를 취

하지 않다가 2008년 10월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2008년 11월까지만 수용자로 하여금 마스크를 사용하여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이후에는 수용자들이 혈액투석을 받으러 가는 외부병원이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인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지만 수용자의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조치나 수갑과 포승을 가려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에세이 }

### 교도소가 말 그대로 교정시설이 되려면

김미숙 인권상담센터 전문상담원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몸이 아프다고 해도 치료를 안 해줍니다. 영치물품이 없어졌는데도 서로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리 죄인이지만 이래도 되는 거냐고 그들은 묻는다. 어떤 사람들은 죄인에게 밥을 먹이는 새끼가 아깝다는 말도 한다. 교도소에서 너무 잘해주면, 일 안하고 공짜 밥 먹으려고 일부러 죄 짓고 교도소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글썄 과연 그럴까? 바깥세상이 갇힌 교도소보다 못하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문제일 것이다.

잠시 교도소의 본래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본다.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유권을 제한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려면, 현재의 교도소는 한참 길을 벗어났다.

교도소가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석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간 행동의 원인을 오로지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이나 사회의 책임까지 고려해야 비로소 길이 보인다는 얘기다. 그런 이유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는 것과 별개로 수용자의 인권문제에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복유립의 개방교도소나 서유립의 지역사회 교정프로그램에서 알 수 있듯이 수용자의 인권수준은 사회의 건강성과 직결된다.

인권위 출범 이후 8년간 상담실에서 피부로 느끼는 교도소의 인권상황은 꾸준히 나아진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교도소가 우수하다기보다 이전의 감옥이 열악했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그들이 교도소를 나갈 때, 그저 하얀색 두부를 씹으며 이를 악물고 다시는 이곳에 오나라라 식의 분노를 새길 것이 아니라, 새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서게 되기를 바란다.

**상담: 미결수인데 전화도 못 하게 합니다.**

저는 지난 2008년 5월 구속되어 I구치소에 수용되었고, 얼마 전 출소했습니다. Y구치소는 매달 2회 정도의 외부전화가 가능한데, I구치소는 외부통화를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L 소장이 발령된 이후 더 엄격해졌고, 수용자들의 기본권이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미결수인데도 외부와의 통화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관련 내용에 대한 인권위 권고가 있었습니다.**

구금시설에서 미결수용자의 외부통화를 지나치게 제한당한 경우는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입니다. 위원회에 진정하여 외부교통권 침해 혹은 통신의 자유 침해에 관해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미결수용자의 과도한 전화 사용제한에 관하여 구금시설과 법무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전화통화의 허가) ① 소장은 전화통화(발신하는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2.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3. 「형사소송법」 제91조 및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접견·서신수수 금지결정을 하였을 때
4.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제26조(전화이용시간) ① 수용자의 전화통화는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실시한다.

**보도자료** 2009년 6월 4일

**“미결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전화사용 제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A구치소장에게는 수형자에 비해 미결수용자에게 보다 엄격히 적용되는 전화 통화 제한 조치의 시정을 ▲A구치소의 관리감독 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는 미결 수용자에 대한 전화통화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A구치소는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 횟수를 월 1회로 제한하고 있고, 진정인은 2009년 2월 동생과의 통화에서 모친의 병환을 확인한 후 병세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로 통화를 요청했으나 구치소 방침에 따라 한 달이 지난 2009년 3월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헌법」 제18조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수용자의 전화통화권을 규정하여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 기준인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92조와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제25조에서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제90조에서 수형자에 대한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과 같은 미결수용자는 「헌법」 제27조 및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 관한법률」 제7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그러한 추정에 부합하는 대우를 받아야 하고 수형자에 비하여 더욱 두텁게 제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미결수용자에 대한 전화통화의 제한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권씨 | 구금시설 수용자는 인권의 좌표

# 수용자도 사람, 기본적 인권은 보장돼야

손발 묶고 입 막는 계구 채워 '150cm 징벌방'으로?... 교도관 1인당 3.3명, 과중담당도 문제

인권위 진정사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분야는 구금시설의 인권침해다. 2008년 11월 현재, 접수된 사건은 11,624건으로 전체 사건의 42%에 이른다. 구금시설의 행정행위는 수용자의 죄에 대해 법이 정한 벌을 부과하는, 일정기간 자유권의 일부를 제약하는 수준에 그쳐야 함에도 규칙을 무시한 채 남용되는 계구의 사용과 발을 뺄 수 없는 크기의 징벌방, 밤낮 없이 환하게 밝혀진 등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헌법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구금시설 수용자의 인권 실태를 통해 우리나라 구금시설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육성철** |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팀 사무관

## 국가인권위 7년, 인권후진국 대열 겨우 벗어나

1948년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총회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바로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으로 불리는 「세계인권선언」(이하 선언)을 채택한 것이다.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선언은 성서보다도 많은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 보급됐다.

때문에 이후 만들어진 모든 국제 인권규약과 각 나라의 헌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의 이후 110여 개국에서 연쇄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기구 또한 선언에 기반한 개별 국가의 인권 모

델에 해당한다. 2001년 11월 출범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불문가지다.

한국에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된 것은 그 자체로 인권 신장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국가기관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의 유무는 그 나라의 선진화를 가늠하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불과 7년밖에 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국가인권기구 출범을 준비 중인 나라들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실제로 한국 국가인권위는 현재 유엔 산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ICC)의 부의장국이며, 2010년 의장국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 사회가 이미 인권 선진국이 됐다고 말한다. 적어도 권위주의 시대의 혹독한 고문과 야만적 탄압으로부터 몇 발짝 걸어 나온 건 사실이다. 국가인권위 설립 이후 많은 국가기관에서 인권적 관점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도 의미 있는 변화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을 거론하기엔 부끄럽고 민망하다. 대표적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영역이 '이주민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와 차별 관행'이다. 이에 대해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2008년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다소 편차가 있지만 인권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보편적 저울이 있다. 바로 '자유권 분야의 인권침해'가 그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일반적으로 후진국일수록 인권침해 사건이 많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점차 평등권 및 사회권 문제가 대두된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모두 다룬다는 점에서, 이러한 잣대는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2008년 11월까지 7년간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3만 4,000여건. 이 중 인권침해 사건이 80%, 차별행위 15%, 기타 5%다. 통계로만 보면 우리 사회는 이제 겨우 인권 후진국 대열에서 벗어나고 있는 셈이다. 진정 접수 추이를 봐도 차별사건의 비중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 구금시설 진정, 전체의 42%로 6년 연속 1위

인권위 진정사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분야는 구금시설의 인권침해다. 2008년 11월 현재, 구금시설에서 접수된 사건은 1만 1,624건으로 전체 인권침해 사건의 42%에 이른다. 구금시설은 국가인권위가 본격적인 진정사건 처리절차를 마련하지 못했던 2001년을 제외하고, 6년 연속 압도적인 1위를 지키고 있다.

한국의 구금시설은 철저히 '닫힌' 공간이다. 구금시

설 수용자는 외부와 자유롭게 소통하지 못한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가인권위에 곧바로 연락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면전진정'이다. 이것은 수용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국가인권위 진정 의사를 밝히면, 구금시설 측은 지체 없이 국가인권위에 통보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은 면전진정에 관한 절차와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면전진정 제도는 구금시설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닫힌' 공간의 일거수일투족이 낱알이 공개되면서 인권침해 관행들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교정 당국은 "수용자를 통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고, 국가인권위는 "수용자라 해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토대로 구금시설의 인권 문제를 검토해 보면 문제의 핵심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다. 엄밀히 말해서 구금시설의 행정행위는 수용자의 죄에 대해 법이 정한 벌을 부과하는 데 그쳐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수용자의 자유권을 일정 기간 일부 제약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상당수 구금시설은 수용자가 누려야 할 기본권 일체를 박탈해 왔다. 심지어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 대해서까지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 구금시설 교도관들은 국가인권위 조사관들에게 강한 불만을 드러내곤 했다. 수용자들은 죄를 지었으니 그만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인권위 조사관들이 너무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반론의 이면에 '범죄자는 함부로 대해도 무방하다'는 논리가 숨어 있다.

## 계구 사용 10개월간 3배 늘어난 교도소, 징계 권고

구금시설에서 수용자가 소란을 피울 경우 교도관들이 사용하는 것이 계구다. 계구는 손발을 묶거나 입을 막는 장비로 계구가 채워진 상태로 장시간 방치할 경우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쇼크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 때문에 계구는 특정한 시기에 써야 한다는 규칙까지 마

련돼 있다. 그러나 일부 구금시설의 경우 수용자를 압박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계구를 관행처럼 사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국가인권위는 2008년 1월 유난히도 계구 사용횟수가 많은 P교도소에 대해 고발 및 징계를 권고한 일이 있다. 모 소장의 부임 전과 부임 후 10개월을 비교한 결과 계구 사용시간이 181시간에서 3,094시간으로 현격하게 늘어난 사실 등을 주목한 것이다.

계구는 일시적 효과가 크더라도 수용자에게 끼치는 위해 또한 심각해서 최후의 방어기제로 신중하게 운용돼야 한다는 게 국가인권위의 일관된 결정이다. P교도소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수용자 폭행 및 인권위 진정방해 사례까지 드러나 구금시설 인권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줄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교도관 폭행 동영상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던 A교도소 사건도 수용자 인권의 현주소를 실감할 수 있는 상징적 사례였다. 이 사건은 A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아들을 면회하러 갔다 온 아버지의 진정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된 교도관은 “충분한 수용자를 제지하려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지만, 형행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및 계호근무규칙(법무부훈령 제515호) 제4조를 위반했다는 게 국가인권위의 판단이었다.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탈출을 일으키면 이른바 ‘징벌방’에 갇힌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J교도소의 징벌방은 가로 세로 각 150cm에 불과했다. 한 사람이 들어가 다리를 뻗기도 어렵고, 계구까지 착용할 경우엔 짐승 우리나 다름없게 된다.

국가인권위는 2004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채택



한 ‘피구금자 처우를 위한 최저 기준규칙’에 맞게끔 징벌방을 넓힐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 밤에도 불 켜진 감방, 기사 삭제된 신문 배부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금시설의 특성상 피해 사실이 곧바로 알려지지 않는 데다, 나중에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수용자 스스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어렵사리 사실관계를 확인하더라도 수용자에 대한 편견의 벽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간헐’ 사람은 고통을 받아야만 ‘죄값’을 치른다는 고정관념이 좀처럼 깨지지 않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간극이기도 하다. 하다못해 경찰서 유치장이라도 한 번 다녀온 사람이라면 수용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심하게 넘겨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C교도소 수용자 L씨는 2004년 국가인권위에 이체로 온 진정을 냈다. 교도소 측이 취침시간 이후에도 불을 켜놓고 있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국가인권위가 조사해 보니 교도소별로 소동 방법과 시간은 천차만별이었다. 법무시설기준규칙은 ‘취침 전 300룩스 이상, 취침 후 60룩스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와 무관하게 일몰 때부터 새벽까지 똑같은 조도를 유지하는 곳도 있었다.

혹자는 수용자들의 요구가 과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엔 숙면을 이루지 못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도 있다. 구금시설에 취침등 하나 설치하는 것을 두고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이대기도 민망해 보인다. 역시 문제는 관점이다. 수용자를 인간적으로 대우할 것인지, 아니면 아무렇게나 내버려둘 것인지.

최근까지도 구금시설 수용자들이 밖으로 보내는 서신엔 검열도장이 찍혔다.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서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다. 그러나 수용자의 현재 상태가 특별한 표식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누군가 구금시설의 검열표시 부늬를 알고 있다면, 수용자는 현재 자신이 구금상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꼴이 된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구금시설에 수용될 수도 있다. 이때 그 사람에게 자신의 상태를 외부에 알리지 않을 권리가 있다.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와 제17조(사생활의 비밀보장)에 비춰 봐도 구금시설에서 발송하는 서신에 일괄적으로 검열도장을 찍는 것은 정도를 넘어선 인권침해였던 셈이다.

K교도소에서는 수용자가 자비로 구독하고 있는 모 일간신문의 기사를 삭제하고 배부한 사건이 있었다. K교도소는 수용자가 볼 수 있는 신문의 수도 2부로 제한했다. 도대체 무슨 기준이었을까. 국가인권위가 확인한 결과 전국 구금시설이 저마다 다른 관행을 유지하고 있었다.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일간신문에 실리는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무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신문기사 뒤져서 민감한 내용 잘라낼 시간에 수용자 곁에서 신문기사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다행스럽게도 국가인권위의 지속적인 권고로 이런 구시대적 관행은 차츰 자취를 감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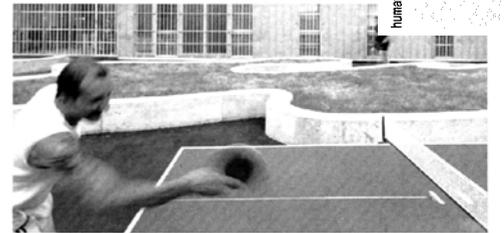
### 구금시설의 자유 운영, 수용자 제법을 낮아져

11월 28일은 정부가 정한 ‘교정의 날’이다. 법무부는 해마다 이 날이 되면 구금시설이 과거에 비해 몰라보게 나아졌다고 강변한다. 일부 맞는 말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로 향하는 수용자들의 진정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경기도 여주 등지에 현대식 구금시설을 만들었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벌어지는 행태는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의 구금시설은 여전히 닫힌 공간이라는 반증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08년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우리나라 구금시설에 관한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6년간 구금시설에서 수용자 187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중 자살이 74명, 병사가 113명이다. 박 의원은 사망자가 많은 구금시설일수록 국가인권위 진정이 많다는 통계도 함께 제시했다.

물론 이런 상황을 두고 마냥 구금시설만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내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는 3.3명



구금시설 수용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그 사회의 포용과 관용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사진은 2004년 원곡동 호주 styra 지역의 교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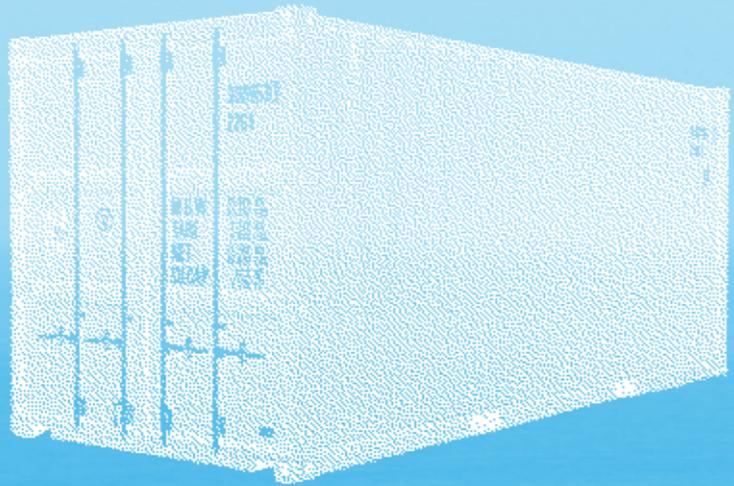
으로 독일(2.1), 영국·프랑스(1.7), 이탈리아(1.4)에 크게 모자란다. 의료 전담인력을 살펴보면 더 심각하다. 국가인권위 조사에서는 의사 1명이 500명 이상의 수용자를 담당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유엔은 열악한 구금시설 인권 문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2008년 10월 둘째 주를 ‘피구금자들의 존엄과 정의를 위한 주간’으로 제안했다. 국가인권위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구금시설 인권 실태에 대한 방문조사와 수용자 자살사고 관련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구금시설이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국가의 품격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지런히 인권 선진국이 걸은 길을 배워야 한다. 구금시설 수용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그 사회의 포용과 관용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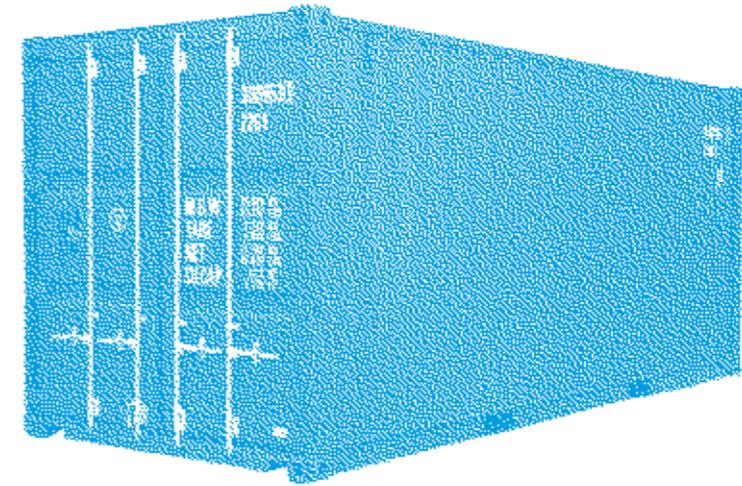
낮에만 일하고 밤이 되면 자유롭게 인터넷을 드나들며 재취업을 준비한다는 복유립 교정시설의 사례는 사치스런 꿈에 불과할까? 것처럼 구금시설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나라의 수용자 제범죄율이 우리보다 현격하게 낮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느끼고 깨우쳐야 한다. **법무**

# 3



촛불집회 과잉진압 · 기자회견 방해 · 1인 시위 방해  
집회금지통고 · 정치활동 금지 · 공무원 복무규정  
게시판 게재에 따른 불이익

##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는 “집회의 사전허가를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고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과도한 제한” 야간옥외집회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9년 9월 24일)

상담: 다섯 살 아이가 가는 길마저 막아서고 있습니다.

다섯 살 아이와 부모가 촛불을 들고 도로를 걷는데 경찰이 저지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와 함께 있던 다섯 살 아이가 촛불을 들고 가는 것뿐입니다. 이를 경찰이 저지하는 것은 시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청광장을 가로막고 있는 전경차량의 배치도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위가 진상을 조사해 바로잡아주었으면 합니다.

답변: 현재 기본권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진행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와 관련해 공권력 남용 및 기본권 침해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들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 :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상담: 중증장애인을 무리하게 연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인터넷카페 회원입니다. 금일 오후 1시30분경 카페회원들과 비회원 및 장애인 10여 명이 ○○○의원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시 30분경 인터넷을 통해 농성 중 이던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됐다는 소식과 연행과정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경찰이 연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증장애인들이 휠체어에서 떨어지고 다치는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대처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성에 참여한 사람들이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위원회 직원이 경찰서로 가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위원회가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 임의로 농성자들을 구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피해자들이 전화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통해 정황 파악 및 현재 상황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인권위 조사관이 ○○경찰서 청문담당관실 및 ○○팀장과 통화하여 사건 정황을 확인했으며, 조사과정에서 장애인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경찰서 측은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상담: 지나가기만 했는데 48시간 구금당했습니다.

2009년 5월 2일 명동역에서 시위자로 오인 체포되어 48시간 동안 구금되었다가 5월 4일 풀려났습니다. 명동역 개찰구 통과시간이 10시 6분이었으며 10시 10분에 체포됐습니다. 출입구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체포 후 ○○경찰서 도착이 11시 15분이었으며 3시간 정도 사무실에서 있다가 같이 잡혀온 12명과 함께 새벽 2시 30분쯤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5월 3일 오전 10시경부터 조사가 시작되었고 오후 2시 형사가 교통카드회사에 전화하여 개찰구 통과시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경 다시 동일한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유치장에 수감되었으며 하루 동안 더 유치장에 있다가 더 이상의 조사 없이 5월 4일 밤 8시에서 9시 사이에 풀려났습니다.

답변: 근거 없이 체포 감금한 경찰에 대해 진정 후 판단을 받아보세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셨겠군요. 상황 설명으로 보아 불법시위자로 오인되어 현행범 체포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현행범 체포시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경찰의 적법절차 위반 여부에 대해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한편 경찰이 지하철역 개찰구를 통과한 시각을 확인한 이후에도, 하루 동안 더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한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성 여부를 판단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공연을 보고 있는데 47시간 넘게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2009년 5월 2일 20시30분경 시청 앞 광장에서 하이서울페스티벌을 관람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민 악단의 공연을 보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둘러싸더니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5월 2일 밤 10시부터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5월 3일 오후 ‘촛불집회 불법 참여자 또는 관계자 혐의’로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유치장에서 하루를 더 보냈습니다. 결국 5월 4일 밤 8시쯤 붙잡힌 지 47시간 30분 만에 풀려났습니다. 경찰의 부당대우에 대해 진정하길 원합니다.

답변: 경찰의 강제 연행 및 구금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경찰방패에 찍혀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 왔습니다.

2009년 2월 1일 오후 8시 30분 이후 을지로입구에서 용산철거민 관련 집회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시민들이 대치하는 중 전경들이 한 여학생을 구타하고 있어 전경 2명의 옷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그러자 전경 1명이 내담자의 목을 잡고, 1명은 방패로 내담자의 머리를 내리쳐 실신하였고, 안경도 부러졌습니다. 이후 119차량에 의해 백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볼 것을 권유했으나 밤 11시경 그냥 귀가하였습니다.

현재 목은 움직일수록 통증이 심하고, 오른쪽 머리가 부어 있으며,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 없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진정 접수하여 조사하기를 원합니다.

### 답변: 경찰 과잉 진압에 대해 진정 후 판단을 받아 보세요.

집회참가 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을 당하셨다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적법절차위반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하기를 위하여 진정 신청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 시위대 보호한 차량도 처벌할 수 있나요?

촛불집회에서 차량으로 시위대를 따라가며 보호하고 완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지침으로 하고 참여한 것이며 실제로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지시로 차를 도로 옆에 정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차적 조회를 통해 시위대를 처벌하겠다고 소환장을 보내왔습니다.

### 인도에서 다쳐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종각에서 경찰과 대치 중, 경찰의 방패에 인도에 있는 화단으로 밀렸습니다. 허리춤까지 오는 화단에서 허리가 꺾여 보신각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응급의료단에서 구급차를 불러주어 밤 12시경 병원에 갔습니다. 척추 염좌라며 3주 진단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 경찰이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촛불집회에 나가보니 경찰이 규정을 어기고 명찰을 달고 있지 않거나 명찰을 테이프로 가린 채 참가자들을 폭행하고 연행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피해를 당할 경우 경찰을 상대로 진정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경찰이 명찰을 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네 살짜리 아이가 엄마와 떨어졌어요.

유모차부대로 촛불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단체와 시위대 사이에 몸싸움이 생겨 그들을 피해 다른 쪽으로 가려는데 전경들이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 네 살짜리 아이가 전경을 사이에 두고 엄마와 떨어지고 전경이 초등학교생을 방패로 찍기까지 했습니다.

### 촛불집회 다시 나가면 퇴학시킨대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촛불집회에서 자유발언을 했는데 ○○경찰서 경찰이 학교로 찾아와 촛불집회 참가 당시의 녹음자료(혹은 동영상)를 제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저를 불러 배후가 누구냐고 묻고, 촛불집회에 다시 가면 퇴학시키거나 전학을 시킨다고 말했습니다.

### 촛불집회로 연행됐는데, 브래지어를 벗으라니요.

촛불집회 시위여성이 입감되는 과정에 브래지어를 벗도록 강요된 것에 대해 인권위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는 여성에게 성적수치심을 주어 여성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확연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하고 경찰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권위 직원도 경찰에게 폭력을 당하는 정도이니 일반인은 경찰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 2009년 9월 23일

**“휠체어장애인 방패로 폭행한 경찰관들 검찰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 중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의 얼굴을 방패로 찍어 상해를 입힌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5명과 의경대원들에 대해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 경찰관과 전경대원들은 모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 경찰의 현장채증자료, X-ray 사진, 피해자의 119호송 및 병원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의 상처가 얇고 각이 진 물건에 의해 충격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고, 집회 장소 이외에 다른 장소나 방법에 의해 이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사용되는 방패 및 곤봉 등 ‘경찰의 장구사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얼굴 등 급소부위를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들이 방패로 시위 중인 장애인을 폭행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형법 제125조에 정한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자료** 2008년 11월 11일

**여성유치인 속옷 탈의 시 성적수치심 느끼지 않도록**

**보완조치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여성유치인에게 브래지어 탈의 요구 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브래지어 탈의 후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보완조치를 강구하며 위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2008년 8월 15일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각각 강남경찰서, 중부경찰서, 마포경찰서로 연행된 후 유치장 입감 시 신체검사 과정에서 브래지어를 탈의한 후 유치장에 입감되었습니다. 이후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2008년 8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브래지어가 탈의된 상태로 1~2회의 조사를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 요구가 유치인의 자해·자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해도 기본권 제한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유치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여름철에 얇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브래지어를 탈의하게 할 경우 신체의 일부가 비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여성이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진정인 및 피해자들이 얇은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경찰관이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게 브래지어를 탈의하게 한 후 아무런 보완적 조치 없이 약 48시간을 유치장 내에서 생활하게 하고 경찰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009년 6월 3일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보호하고 불법폭력의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만 차단한다고 하지만, 근래의 상황을 살펴보면 개최가 예정된 집회시위의 불법폭력성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집회시위의 개최 여부 자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좌우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여야 할 서울광장이 현재 경찰버스에 의해 장기간 봉쇄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찰청은 '2009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을 통해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방식을 '방어적 질서유지'에서 '적극적 법집행'으로 전환한다고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므로 남용될 경우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의 공격적인 진압방식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증가시킬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적 기본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민주사회의 초석이자 소수자의 권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대의과정을 보완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정부의 선심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 기본권 보호야말로 국가의 존립 근거이자 기본적 의무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존중하고 보호하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의 정신에 비춰볼 때 집회시위의 제한과 관련한 공권력 행사는 최대한 신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시 한번 집회시위의 자유를 강조한 헌법과 국제규약의 정신을 상기하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집회시위 참여를 본질적인 기본권으로 존중하고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인권보호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법치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2009년 11월 18일

**인권위, 경찰 권고 일부불수용 공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5월초부터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반대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다수의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촛불집회시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경찰이 촛불집회시위를 진압·해산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행위(과도한 공격행위, 과도한 장비사용, 투척행위에 대한 통제미비, 공격적인 진압작전 등), 과도한 통행 제한, 반성문 작성 강요, 경비업무 시 식별표식 미부착 등 일부 인권침해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009년 10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당시의 경찰청장을 경고할 것을 권고하였고, 경찰청장에게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방어위주의 경비원칙 엄수 ▲2008년 6월 1일과 2008년 6월 28일의 과도한 진압작전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당시 서울청 기동단장)과 4기동단장(당시 4기동대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 ▲시위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시위진압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최고 압력이나 최근 거리 등 그 구체적 사용기준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소화기를 사람에 대해 사용하지 말고 소화용으로만 사용할 것 ▲집회시위 현장 부근에서의 광범위한 통행 제한을 하지 말 것 ▲조사를 받는 피체포자에게 반성문이라는 내용과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할 것 ▲경비업무시 착용하는 의복에 식별표식을 하고 업무를 담당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와 같은 권고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2009년 10월 23일 '사건당시의 경찰청장이 2009년 1월 21일 시작하였다'는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였고, 경찰청장은 2009년 10월 9일 및 같은 달 23일 '식별표식 부착과 관련한 권고에 대해서는 향후 보호복 등에 개인 식별이 가능한 표식 부착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일부수용' 통보를, '살수차의 경우 물포 운용지침에 따라 사용요건과 절차·살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어 부령 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이유가 없다'며 '불수용'을 통보하였으며, 그 외의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취지로 통보했습니다.

상담: 정치적 발언이니 기자회견이 아니라 불법집회라고요?

2009년 5월 4일 11시55분부터 ○○ 앞에서 ‘경찰폭력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경찰이 기자회견을 막고 “정치적 발언이니 기자회견이 아니라 불법집회로 간주하겠다.”며 해산명령을 내리더군요. 3차 방송 때까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끝내고 돌아가려는데 경찰이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1명과 강제 연행을 항의하던 남자 시민 5명을 ○○경찰서로 연행하였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으므로 진정합니다.

답변: 언론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면 진정 후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에 대해 위원회에 진정 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1인 시위하는 이들의 초상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강제철거에 불만을 가진 철거민들의 대표 5명이 번갈아 가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시청 직원들이 1인 시위를 방해하였습니다. 총무과 직원들이 날마다 1인 시위자들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항의해도 계속 사진을 찍어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인권위에서 초상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답변: 초상권 침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데, 시청 직원들이 시위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 시위를 방해했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 :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초상권에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다.

보도자료 2007년 12월 27일

“1인 시위 및 집회방해, 지자체 공무원들 징계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인 시위 및 집회시위 중 시위자의 피켓 등을 강제로 빼앗은 A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하여 「헌법」 제21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인 등 피해자가 제출한 진정서 및 현장에서 찍은 사진 등의 자료, 피진정인들에 대한 문답조사서 및 관련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A지방자치단체 소속 피진정인들은 2007년 1월 9일 그리고 같은 달 10일 및 16일 소속 기관장의 관사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피해자들이 착용한 흰색 한복과 소지한 피켓을 연필깎이용 칼로 찢고 강제로 빼앗아 폐기하고, 또한 같은 날 29일에는 피해자들이 합법적인 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피켓을 강제로 빼앗아 폐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3조 및 제366조의 규정에 따른 직권남용 및 기물손괴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21조,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및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폭언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담: 500일간 관참던 것이 갑자기 불법집회라며 안 된대요.

동일 사안으로 현재 500일 동안 집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5월 17일, 집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집회 불허를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500일 동안 해오던 동일한 방식의 집회를, 앞으로는 불법집회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방송차량 등 방송장치를 사용하면 불법집회라며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답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 진정을 제기해 판단을 받아보세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에서도 매우 본질적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입니다. 국가기관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허가제로 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직권남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 진정을 제기하여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집회금지통고 남발 관련 유사 상담사례 }**

이미 집회신고가 됐다며 집회 신고 접수를 거부하더군요.

2008년 8월 5일 방한하는 부시 미 대통령에게 한국민의 요구를 전하기 위해 ○○공항 앞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7월 31일 오후 ○○경찰서에 관련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서 정보계장은 주민들이 이미 신고를 했다며 신고서 접수를 거부하더군요.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에 따르면 복수 집회 신고가 가능하다는 항의를 하자 말을 바꾸어 부시 미 대통령에 대한 특별경호 때문에 집회신고서를 접수할 수 없다며 불허했습니다.

경찰이 임의로 집회 신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조원으로 (주)○○전기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 ○○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측에서도 유명 집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경찰은 집회 안내문을 보이며 일출시간 10분 전 집회 신고 제출자에게 우선순위를 준다면 노조의 집회 신고를 거부했습니다. 다음 날 일출시간 10분 전 신고서를 제출하자 이번엔 경찰 정문을 먼저 통과한 자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곤 사측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또다시 노조 집회신고를 불허하였습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집회 신고 시 경찰이 임의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집회 불허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보도자료** 2008년 2월 22일

**국회의장 등에게 집회 금지통고 규정 폐지 및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집회금지통고제도 관련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국회의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폐지 및 개정을,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그동안의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첫째, 장소경합을 이유로 한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 규정(집시법 제8조 제2항)은 나중에 신고된 집회의 개최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장소경합이 있는 경우에도 제한통고 등 다른 조치에 의해서 우려되는 질서교란행위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집시법 제12조)중 금지통고 조문(제한통고는 제외)은 집회 시위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되며 제한통고 등 다른 조치에 의해서 우려되는 질서교란행위를 통제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공공질서위협을 이유로 한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 규정(집시법 제8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제2호 부분)은 경찰이 이 규정에 근거하여 금지통고를 할 때 대부분 과거 불법집회를 한 전력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집회신고 당시 상황을 근거로 하여 '집회개최 시'에 위협이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집시법 제9조, 제21조)은 재결청(상급기관)이 금지통고를 내린 경찰관서장의 직급 상급경찰관서장이어서 그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관련 법률규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경찰이 집회금지통고 및 상경차단조치 등을 하는데 있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법집행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담: 학칙에 대학생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라니요.

저는 S대학교 학생으로 당적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칙에는 대학생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있으며, 어길 시 퇴학 등 중징계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의 대학생 정치활동 금지는 부당하며, 퇴학까지 시키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학교에서 퇴학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답변: 학칙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07년 3월 우리 위원회가 전국의 69개 국공립, 사립대학의 학생 정치활동 금지관련 학칙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사립대학교는 차별 이외 기본권 침해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도움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조사에서도 사립대학은 진정이 각하됐습니다.

보도자료 2007년 3월 6일

“대학생 정치활동 금지하는 학칙은 기본권 침해”

“전국 69개 대학교가 학칙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교내 집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측의 허가를 받게 하는 등 학생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2005년 5월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은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이 정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제21조는 이들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에 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은 기본권 유보의 조건으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도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법률유보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피진정인들의 ‘학생활동제한’ 조항은 ‘기본기능’과 ‘교육목적’ 등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근거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국가인권위는 판단하고, 학칙 혹은 그 하위 규정에 제한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정치활동금지’ 조항의 경우는 학내·외를 불문하고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기본권 제한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퇴학 등의 중징계 사안은 삭제하여야 함을 권고하였습니다.

### 상답: 공무원 노조의 성명이 지자체 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지자체의 공무원노조 지부장입니다. 노조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성명 내용이 지자체의 도정 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당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여겨 인권위에 진정을 원합니다.

### 답변: 성명발표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진정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공무원노조의 성명발표를 이유로 지부장을 징계한 것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징계 여부를 해당 기관의 규정에 의한 재량권으로 볼 경우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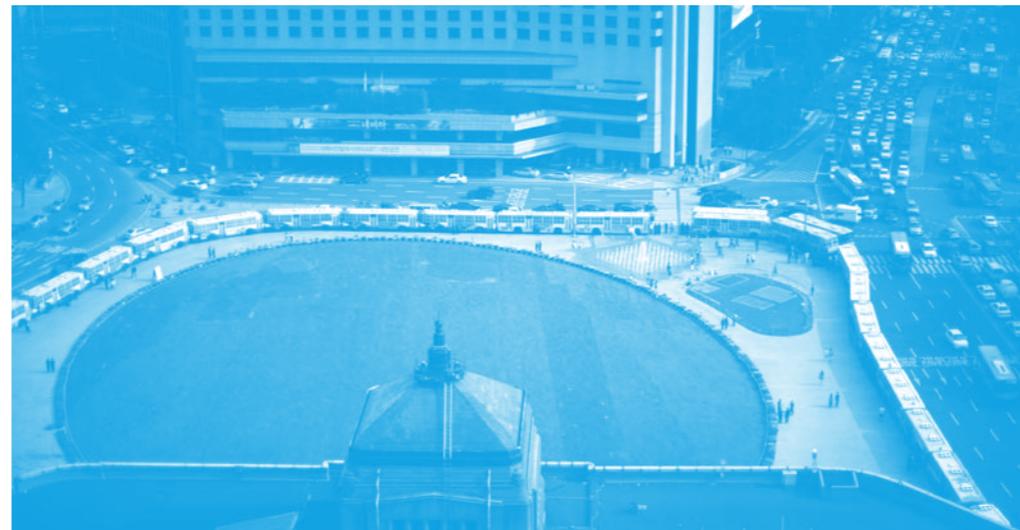
보도자료 2009년 11월 17일

#### “공무원도 개인으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2009년 10월 21일 입법예고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은 그 표현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이 가능하게 해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2009년 11월 10일자로 표명했습니다.

공무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므로, 국가가 공무원의 기본권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있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일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으로서 갖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으며, 개정안의 운영과정에서도 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임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적인 자격에서 향유하여야 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상담: 미니 홈페이지에 올린 의견 때문에 퇴학당했어요.

○○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싸이월드 개인 미니홈피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글이 좌파 성향이라며 2008년 8월 퇴교 조치를 당했습니다. 퇴교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으며 2주 만에 퇴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퇴교 조치 후 △△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이 사건 때문에 입학 불허 조치를 받았습니다. 3개월 과정을 남기고 퇴교를 당해, 다음주 월요일에 일반 병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위의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명예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지 알고자 방문했습니다.

답변: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진정 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미니홈피에 올린 글로 인하여 부당하게 퇴교 조치를 당하였다면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는 등의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 진정 후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퇴학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고, 퇴학처분 무효소송을 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009년 3월 4일

“사이버모욕죄 신설, 친고죄로 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11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함)」 검토 결과, 국회의장과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장에게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반의사불벌죄의 형태가 아닌 친고죄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안이 사이버모욕죄의 신설과 피해자의 권리침해 주장에 의한 임시조치 및 인터넷권리분쟁조정 제도의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법률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의사형성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규제나 형사처벌 등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근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고려해 최후 수단으로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이버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 피해자의 명예감정이 실제 훼손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먼저 행위자를 입건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는 형사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자료 2009년 6월 30일

**‘전기통신기본법’ 관련 현재·법원에 의견제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게 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본 규정은 포괄적인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타인에게 피해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허위표현금지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자유민주국가에는 이러한 허위표현금지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폐지되었습니다.
2. 본 규정은 “표현행위”를 “형벌로써 처벌”하는 규정으므로 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의 통신’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규정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본 규정이 보호하는 포괄적인 공익보호나 진실증진은 헌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기본권 제한 목적이 아니며,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대처는 반박을 통해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로 모든 유형의 허위표현 유포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3. 본 규정은 법률제정 후 45년 이상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으며 이는 본 규정이 민주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불명확한 규정의 개념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표현물에 적용될 수 있으며, 언제 무엇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광범위한 권한을 정부당국에 부여하고 있어 시민들이 자신의 표현행위가 기소되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광범위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본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큼니다.

언론보도 · 서울신문 2009. 4. 22

**“공익 해할 목적 없어” 미네르바 석방**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20일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명현 판사는 이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 허위사실을 유포,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30일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으로 환전 업무가 8월 1일부터 전면 중단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린 데 이어 12월 29일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라는 글에서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 금지를 긴급명령했다고 거짓 정보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에게 자신의 글이 거짓이라는 인식도, 공익을 해할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올린 글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씨가 ‘8월 1일부터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다.’는 인터넷 뉴스 속보가 뜬 것을 보고 글을 올린 점, 12월 29일 이전에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박씨가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알면서 이런 글을 게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설령 박씨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8년 7월 실제로 외환 보유고가 감소되고 있었고 12월 말은 외환시장의 특수성상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시기인 점, 박씨는 오히려 개인들의 환차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박씨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박씨가 ‘긴급 공문’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파급력을 높였으며, 박씨의 글 때문에 실제로 달러 매수세가 급증해 정부가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22억달러를 추가로 썼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단문 보도문 형식만으로 그 내용의 긴박성이나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으며, 박씨의 글이 달러 매수량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이를 계량화할 수 없고 단순한 개연성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판결에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 허위사실의 인식과 공익 침해 목적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어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5시쯤 지친 얼굴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박씨는 어머니가 준비한 두부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무죄를) 예상하지 못했다. 판사의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불만이 없었는지 묻자 “검찰이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박씨는 “개인의 권리란 것은 무형의 권리”라면서 “민주주의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가꾸는 것, 사회 시스템상 내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절필 선언에 대해 언급하자 “이제 못 쓸 것이 없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경제와 사회, 정치는 양분될 수 없으며, 피드백으로 상호 교환된다.”면서 “앞으로 표현을 순화시켜 경제뿐 아니라 사회 비판적 내용까지 주제로 해서 공감할 수 있는 글, 퀄리티 높은 글을 쓰겠다.”고 밝혔다. 유지혜 장항우기자

# 4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열람 · 개인정보 유출 · 위치정보 피해  
CCTV · 생체정보 · 장애인 복지카드

## 정보인권과 사생활 보호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감청대상 기기에 포함시켜야 한다.” VS “지금은 통비법을 바꿀 게 아니라 국가기관 스스로 내부 불법 행위를 단속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급선무”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선진한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학술회의에서의 찬반 토론(2009년 12월 1일)

상담: 수천 명에 달하는 공무원 가족들의 정보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쌀 직불금과 관련해서 교사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속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를 모두 기록하여 엑셀 파일로 내리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경기도에 소속된 수천 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원 가족들의 정보를 파일로 만들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도 우려됩니다. 인권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적법절차를 위반한 기본권 침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과잉 수집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담: 학교에서 매년 부모의 직업과 학력을 적어 내립니다.

국·공립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입학 때 가정통신문에 부모의 직업과 학력을 작성하도록 하더군요. 그런데 입학 때뿐만 아니라 학년이 바뀔 때마다 부모의 직업과 학력, 가정형편을 적어 내도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부모에 대한 직업과 학력을 학기 초마다 내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인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규정을 벗어난 것인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권위에 진정하시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 관련 유사 상담사례 }**

경찰이 영장 없이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 약 40명 정도가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이 고시원 주인을 통하여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있더군요. 경찰에게 이런 식의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하냐고 물으니 우물쭈물하며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찍으려고 하자 경찰이 내뺐습니다. 그 경찰의 소속과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2005년 4월 1일

**“공공도서관, 획일적인 주민등록번호 요구 관행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한 21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2004년 7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공공도서관들이 ▲무인좌석발급기 이용 시민에게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열람실내에까지 CCTV를 설치해 촬영한 자료를 별도 규정없이 관리·활용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디지털도서관 PC를 이용하는 시민의 이용행태를 모니터링하는 등 임의적이고 과도한 방식으로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보관·활용하고 있는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국립중앙도서관장 및 해당 도서관장들에게 ▲공공도서관 열람실 무인좌석발급기 이용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대신 개별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 대체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할 것 ▲CCTV를 설치한 도서관의 경우(14개)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CCTV 장비는 회수하고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이에 관한 자체 규정이나 운영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 ▲디지털 자료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PC 화면을 도서관 관리자가 임의로 모니터링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 ▲도서대출회원증에 회원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는 것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고, 회원의 책임과 의무 및 규제 사항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 법규와 규정을 시민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방향으로 제·개정할 것 ▲전국 공공도서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자료** 2009년 1월 6일

**“전화상담 이용 시 주민번호 입력강요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와 국세청이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상담 내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사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노동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인이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산등록정보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인지 아닌지의 구분 없이 무조건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미입력 시 상담원과의 통화는 물론 일반적 안내상담조차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진정접수 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없이 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상담: 경찰이 학교에 학생들의 신상정보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OO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학교가 학생들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하더군요. 경찰이 학교로 찾아와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신상정보와 학부모들의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조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조회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학교 측은 경찰들과 협조관계를 고려하다보니 처신이 어렵다고 합니다.

답변: 형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교가 부모의 신상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경찰의 학생정보 조회 요청에 대하여 처신이 어렵다면, 인권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교육청의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진정이나 민원으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04년 02월 09일

**건강검진결과 발급대장의 관행적 열람은 사생활 침해**

경찰관들이 특정수사와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기소중지자 등의 검거를 위해 각 지역 보건소에 비치된 건강검진결과(일명 '보건증') 발급대장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복사하는 행위는 헌법 제17조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송모 씨가 2002년 10월 수원중부경찰서 경찰관 등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사생활 침해 행위로 인정하고, 피진정인의 최종 감독기관인 경찰청장과 각 보건소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경찰관들이 지역 보건소에 비치된 건강검진결과발급대장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부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휴무일을 이용하여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일부 파출소의 경우 경찰관들이 출장 명령을 받지 않은 채 다른 시·도에 위치한 보건소를 찾아가 파출소장이 작성한 문서 또는 신분증만을 보이고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는 하나 ▲이는 수사기관이 특정 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판단했고 ▲건강검진결과발급대장에는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대중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일반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의 명단이 포함돼 있어, 기소중지자 검거만을 이유로 수배 여부를 조회하는 행위는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며 ▲또한, 특정 수사와 관련 없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담: 아이들에게 “어떤 아버지냐?”는 등의 질문을 던지며 피의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마약사범으로 2년의 집행유예를 받고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집을 방문했는데 저는 외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보호관찰대상자라는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지가 요즘 어떠하냐?” 등의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약사범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면서 위와 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 답변: 사생활 보호 및 인격권을 침해당했는지 판단 받아보셔야겠네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은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의 행위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했는지 인권위에 진정해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가 걸린 주민의 신상정보를 멋대로 제공하다니요.

○○에서 옥상에 생산가공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를 반대하는 주민 149명이 연명으로 항만청에 공장 불허를 요청하는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만청이 반대하는 주민 명단을 ○○에 넘겼습니다. ○○에서 대출을 받는 등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걸린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1,300명의 세세한 신상명세 등이 서로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1,300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취소되었다는 안내문을 각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한 1,300명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동, 호수 등이 모두 공개된 채 각 세대로 배달되었습니다. 법원에 항의하니 정당한 절차에 의해 한 일이라고 답할 뿐입니다.

### 일본이 25년 전의 전과기록 등 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군요.

보따리 장사로 9년간 일본을 왕래해왔습니다. 2008년 7월 11일 비자 없이 일본을 방문하려는데 25년 전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일본 출입국 담당 직원은 일본 법에 의해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이 1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은 경우 입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국 외교통상부로부터 기록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거기엔 수감 기간과 현 주소지 등이 있었습니다.

일본 출입국 담당 직원이 가지고 있던 정보는 한국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한 일본 정부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넘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진정하길 원합니다.

### 법원 경매 사이트에 세세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담보물로 잡힌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법원의 경매 사이트에는 남편의 회사, 남편의 이름, 경매 대상인 집 주소가 공개되어 있다군요. 얼마 전, 집 근처에서 법무법인이 배포한 전단지 봤습니다. 전단지에는 우리 집 경매와 관련한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경매 사이트에 경매 정보가 공개되고, 이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2009년 2월 5일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개인정보 누설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A구치소장에게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교도관에 의해 다른 수용자에게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소속 교도관을 대상으로 수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피진정 교도관은 박씨로부터 B씨가 수용된 구치소 등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관의 허가 절차 없이 B씨의 범죄개요, 경력 및 현재 수감 중인 구치소 정보를 알려주었고, 박씨는 B씨의 범죄개요, 경력 등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B씨에게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진정 교도관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박씨에게 누설하는 과정과, 박씨가 진정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도관직무규칙」에는 교도관이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도 수용자신분카드·수형자명부 등 수용자 개인에 관계된 서류는 상관의 허가를 받아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비록 교도관이라 해도 공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용자 개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박모씨에게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행위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도자료 2008년 6월 26일

**“고지서 주소란에 주민번호 표기는 사생활 침해”**

진정인 이 모씨(43·남)는 “○○시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부하면서 우편물 겹면에 진정인의 개인정보(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를 명기하여 타인에게 개인 신상 정보를 노출시켰다.”며 2007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시청이 ‘환경행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확인작업을 거친 후 고지서를 발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작업 과정을 소홀히 하여 고지서의 주소란에 개인정보를 명기하여 송부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시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상담: 장애인이 활동하는 시간과 장소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1급 지체장애인으로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시간을 수기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전자바우처가 시행되면서 활동보조인의 정확한 서비스 시간과 장소가 곧바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본인의 이동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크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시정을 요청합니다.

답변: 바우처카드 체크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으면 진정 후 판단을 받아보세요.

바우처카드 체크로 인해 시간과 장소 등이 노출되었다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여부를 판단받아 보십시오. 개인정보의 수집과 유출이라는 위협성도 있지만, 동시에 활동보조인의 정확한 시간관리와 비용계산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치정보로 인한 피해 관련 유사 상담사례 }

근무시간 외에도 GPS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회사 상사가 근무시간 이외에도 업무를 시키면서 GPS를 통해서 내담자의 행선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개인의 행선지까지 추적하면서 행동을 감시하고, GPS 추적을 업무성과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보도자료 2009년 2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신중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10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 검토 결과, 국가안보 및 범죄수사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통신제한조치(감청)는 허용될 수 있으나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 내용과 절차에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에게 ‘개정안’의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과 관련된 조항에 대한 수정·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정보는 현행법의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시스템을 활용하는 것과 달리, 휴대용 개인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것으로서 단말기를 사용하는 자의 주변 5m 거리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향후 유비쿼터스 컴퓨터 시대에는 대부분의 정보에 위치정보가 포함될 것이며, 이 때 ‘개정안’과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의 모든 위치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무차별 노출될 수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매 신분 단위로 피감사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현행 수사기관의 수사방식을 고려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 우려는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다 엄격한 요건과 사전·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개정안’과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경우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이 부당히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있어,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담: 어린이집은 ‘트루먼쇼’가 아닙니다!

기업의 직장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며 학부모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허브를 따서 학부모들이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어린이집을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CCTV인 만큼 저장도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은 개방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방문하라고 하였으나 굳이 인터넷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조만간 학부모와 회사관계자, 교사가 참석해 회의를 하고 설치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 답변: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자감시 등의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인권위가 직접 도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작업장 내 근로자 CCTV 감시 등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관련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정책검토를 위한 정보제공이나 문제 제기 차원의 제도개선으로 진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336)나 노동부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일부 개정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전자감시를 허용할 경우 근로자의 사전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업무수행과 공익적 목적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할지라도 동의나 고지가 필요하고, 음성 녹음을 배제하며, 설치목적에 한해 적용하고, 유출 방지 등 관리를 엄격하게 하여 최소 침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 { CCTV 남용 관련 유사 상담사례 }

방법용 카메라에 찍힌 파업 노조원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전국○○노동조합○○분회 회원입니다. 파업 중에 신규로 설치된 방법용 카메라를 통해 찍힌 자료를 가지고 노조원들을 징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파업기간 중○○○기획상무는 파업참가 노조원 및 노조원의 계좌까지 조회하여○○지청에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더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워 인권위에 진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서의 CCTV 설치로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서울○○동의 쇼핑센터 운영위원장입니다. 현재○○구청과○○경찰서에서 성매매를 단속한다는 이유로 간선도로변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CCTV 주변의 상가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가 주인들이 단체로 구청과 경찰서에 CCTV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보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하고 싶습니다.

사고에 대비한다며 일거수일투족을 녹음·녹화하고 있습니다.

일반 제조회사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대비한다며 회사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목소리와 사적인 전화통화 내용, 얼굴 모습까지 모두 찍힙니다. 또 매일 한 번씩 파일을 서버에 저장시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두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차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적 전화를 차량에서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내용까지 모두 입력되니 불안합니다. 회사에 얘기해도 사고 대비용이라면서 시정을 안 해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도자료 2004년 5월 10일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와 관련,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1. 범죄 예방 및 범죄 수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CCTV 등 무인단속장비를 공공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것은 그 설치지역과 운영방법 등에 따라 개인의 초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특정시간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이며, 설치·작동 방법에 따라서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내의 모습을 녹화·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은 촬영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사생활, 가정, 주거의 자유와 이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헌법」 제17조,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7조)를 제한하고 침해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CCTV 등 무인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여 범죄 수사 등에 활용하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제한원칙인 ▲적법절차원리(「헌법」 제12조) ▲법률에 의한 제한 원칙(「헌법」 제37조)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3. 또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이 법률에 근거를 두더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지 않으면 이 역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잉 제한이 되므로,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조처들이 검토되고 강구된 후 그러한 조처들도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동원되는 보충적 수단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보도 · 경향신문 2007.11.27

**인권위, 정부에 ‘특별법’ 권고…‘전자인권’ 침해 급증**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업장 내에서의 다양한 전자감시 장치에 따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에 제동을 걸었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개인 감시 및 정보접근 권한 박탈 등 ‘전자인권’문제가 급격히 대두되자 인권위가 정부에 관련 특별법 마련을 권고하고 나선 것이다. 현행 법제로는 전자인권 침해의 피해 예방과 구제가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인권위 고위관계자는 27일 “노동부장관에게 사업장의 각종 전자감시를 적극 규제할 특별법을 제정 등 관련법 제·개정과 감독 강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공·사를 막론하고 사업장 등에서 CCTV, IC칩 카드, 생체인식기, GPS 등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전자감시가 이뤄지면서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권위는 특별법에 전자감시가 허용되는 명확한 범위, 전자감시의 도입과 운영에서 필수적인 근로자의 권리보호 장치 등이 명백히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집된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세부 항목 및 사용자 측의 전자감시 오·남용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 등도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가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 준칙을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로 확산될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노동관계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근로자의 인격과 사생활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신설할 것 등을 주문했다.

실제로 인권위에 접수된 사업장에서의 각종 인권침해 진정을 보면 다양한 전자감시 장치가 설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남의 한 시청 노조원은 2003년 “시청측이 갈등을 빚던 청소 용역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문인식기’를 설치, 근태사항 및 작업장 이탈 여부 등을 감시하고 있다”고 진정해왔다. 서울의 한 구청 직원은 “구청이 노조 쟁의행위 이후 노조지부 사무실 컴퓨터에 대해 상급단체인 공공연맹, 민노총 홈페이지로의 ‘접속을 차단’ 했다”는 진정을 냈다. 회사 측이 전자감시 장치들을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북의 한 자동차부품업체 직원은 “회사 측이 노조 몰래 감시용 CCTV를 설치해 일부 노조원이 급성 정신병적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진정했다. 장관순 기자

**상담: 출근부를 없애고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저는 J지자체 000의 노조지부장입니다. 000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지자체에서는 출근부를 없애는 방법으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6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직이고 초과근무수당도 없는 상태인데 단지 출퇴근을 체크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생각되어 전화를 했습니다.

**답변: 지문인식기 설치로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면 진정 후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세요.**

지문인식기 설치로 인하여 인격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 진정 후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민감한 생체정보에 대해 개인동의 이상의 엄격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등 공공기관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제한해 지문과 같이 민감한 생체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전산화,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생체인식 시스템이 적절한 수단인지, 도입되는 구체적인 방식은 적절한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과정에 해당 정보주체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자료** 2005년 10월 20일

**학교식당 지문인식기 설치 및 학생지문날인 요구는 인권침해**

“전라북도 6개 시·도 소재 14개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모 씨가 2005년 4월 13일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집적·도용될 수 있는 지문인식기와 같은 시스템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는 전국 국·공립 및 사립학교들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문 등 생체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신체 그 자체로부터(만) 획득될 수 있는 강한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유일식별자로, 불변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 ▲데이터베이스화되기 쉬운 특징을 갖고 있고 ▲추적된 정보는 그 정보주체에 대한 전면적인 추적과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등 애초에 수집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시민의 자유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공공기관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제한하여 지문과 같이 민감한 생체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전산화,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생체인식 시스템이 적절한 수단인지, 도입되는 구체적인 방식은 적절한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과정에 해당정보주체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민감한 생체정보는 개인동의 이상의 엄격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보도 · 한국일보 2009.4.13

**범죄자 DNA 채취, 수사나 인권이나**

**유전자은행법 입법 예고... 시민단체 반발**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려면 반드시 필요하다."(경찰), "범죄자 DNA를 강제 채취해 보관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다."(인권관련 시민단체)

경찰이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유전자은행법'(유전자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 법안이 "강력범을 검거하는데 특효약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나치게 인권을 억압하는 조치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12일 "국가가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와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유전자 정보를 취득해 관리하는 유전자은행법을 이르면 다음 달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약취·유인, 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11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및 수형자가 대상이다. 법안은 구강 점막을 채취하거나 간이 채혈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유전자 감식 시료를 수집하되, 피의자나 수형자가 유전자 채취를 거부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 머리카락이나 혈흔 등 'DNA 지푸라기' 하나만 떨어져도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수사망'을 구축하겠다는 시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그러나 수형인이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 기각 판결을 받거나 구속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경우 유전자 정보를 삭제하고, 사망했을 때도 관련 정보를 폐기토록 했다.

경찰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 강력범 검거는 물론 억울한 누명을 쓴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연수 국립과학연구소 유전자분석과장은 "유전자 은행법은 범인에게 '잡힐 수 있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며 "특히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처럼 동일인에 의한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나 연쇄범죄 행각을 막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지나치게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미 죄값을 치른 범죄자의 DNA를 강제 채취하는 행위는 과도한 인권침해일 뿐이며,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구속 피의자 유전자 정보를 별도 관리하려는 것도 수사 편의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이 국민정서를 내세워 주민번호와 지문에 이어 또다

른 거대한 국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라며 "절도범까지 DNA 채취대상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합법적으로 생체 정보 수집을 허용할 경우 국가에 의한 불법 정보 수집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수형자가 불기소되면 유전자 정보를 삭제키로 한 부분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는 "수사 기관에서 이미 확보한 유전자 정보를 쉽게 포기할 리 없고 신원확인 외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는 통제 위주의 사후 범죄 처리에 주력할 게 아니라 초동 수사와 예방 치안을 강화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청은 29일 유전자은행법 공청회를 열기로 해 법안을 반대하는 인권단체들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장재용 기자



**상담: 장애인이란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장애등급 3급의 장애인입니다. 복지카드를 사용하는데 지하철을 탈 때 “무료입니다(우대권입니다)”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장애인이란 사실이 공공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는 것이 불쾌하고,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복지카드는 교통카드 기능뿐만 아니라 일반 신용카드처럼 물건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 뒷면에 장애의 사유(병명)가 기재되어 있어 사용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답변: 우대권 안내멘트가 기본권 침해인지 진정 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할 때 우대권 안내멘트가 나오는 것이 기본권 침해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진정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카드 뒷면에 병명이 기재되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받고자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결식아동의 전자카드 사용으로 안전과 인격권, 개인정보 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아동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식아동을 위해서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이틀에 7000원 한도의 음식구매를 허용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카드사용으로 인하여 폭력 학생들의 강탈이나 구매 위협이 상존하고, 실시간 구매장소 등이 체크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습니다. 7월부터 사용한다고 하는데 인권침해 여부를 가려주기 바랍니다.

**유사 사건 위원회 결정(기각) 2009년 1월 8일**

**무임승차카드 이용시 장애인 여부 공개**

**진정요지**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시행 중인 장애인용 지하철 무임승차카드 이용시 장애인에 대한 구별음이 나와 알고 싶지 않은 장애 사실이 공개됨.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요구함.

**기각사유**

- 지하철 무임승차카드는 장애인뿐 아니라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인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유공자(수송시설이용대상자)에 대해서도 무료로 발급되어 전체에 대해 동일한 멘트가 표출되고 있음. 따라서 동 멘트가 장애인이라는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아님.
- 또한, 무임승차카드의 발급은 무임승차 대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매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비 대상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 만큼, 음성멘트 표출에 의한 무임승차 대상자의 구별은 비 대상자들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위 사항을 종합할 때, 무임승차카드 이용 시 음성멘트의 표출은 서비스 기관에서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비 대상자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이고, 음성멘트의 표출이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장애로 인한 차별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위 법조를 적용하여 기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5



체벌 · 학습권 · 두발 및 복장 · 부당 징계 · 강제학습  
학교폭력 · 수업 중 경찰조사 · 전학 강요 · 교사의 인격권 침해  
시설 청소년 인권

## 학생의 권리, 학교의 고민



“한국 정부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백하게 금지할 것”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1996년 및 2003년 권고, 2008년 유엔 인권위원회 UPR(인권상황정기검토) 지적사항에서

상담: 밥을 남겼다고 아이를 주먹으로 때리다니요.

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평소에 반찬을 남기면 영양사가 벌을 줬다고 하네요. 오늘 생선이 나왔는데 아이가 원래 생선을 먹지 않아 남겼답니다. 그러자 영양사가 화장실로 데려가 주먹으로 뺨을 때리면서 한 번만 더 남기면 “죽여버리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도 이 모습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유치원 아이가 식사 중 밥을 흘렸더니 뒤통수를 때렸다고 합니다.

답변: 학생을 협박하고 구타한 것에 대해 위원회에 진정 후 판단을 받아보세요.

초등학교 영양사의 학생 협박과 구타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사의 학생지도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교사의 체벌행위가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불가능한 경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정당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체벌 관련 유사 상담사례 }

아이가 너무 아파서 걸을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 다리(오금 부분)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더군요.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교실에서 벌을 받았는데 앉았다 일어나기를 500번씩 했다고 합니다. 단체로 받았고, 이전에도 그런 벌을 많이 받았으나 너무 무서워서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준비물을 안 가져오면 100번, 문제 못 풀면 100번, 똑같은 문제 다시 못 풀면 100번, 시간을 주었는데도 못 풀면 100번 등 교사가 벌을 과도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교사 면담을 하려고 하니 자녀는 무섭다면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교사 폭행으로 전치 12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딸은 ○○과학교 2학년 재학생입니다. 2008년 11월 체육교사로부터 교사의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폭행당해 전치 12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 수술 후, 지금은 통원 치료 중입니다. 학교 당국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딸에게 5일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딸은 통원치료 중이고 외부 활동을 할 경우 치료에 악영향을 미치고, 후유증 발생 우려가 있어 학교 측에 1월 19일 이후로 특별교육 기간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도자료 2009년 11월 9일

“교칙 위반 이유로 기합, 자퇴 강요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6월 9일 충북지역 A고등학교 피진정 교사의 학생지도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A고등학교 교장에게 담임 교사를 경조치고, 학교 교직원들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각서, 체벌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각서 내용은, ‘피해학생이 교칙을 다시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하며, 본 각서를 보호자 연서로 제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학생지도에 필요한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서 피해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자퇴를 서약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며, 더욱이 이러한 각서가 학교장의 승인 없이 학교장 명의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 방침이 있었지만 담임교사는 피해 학생에게 기합 등 체벌을 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해학생의 자살 원인이 복합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사건 당일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에게 통상의 반성문 내용을 넘어서는 각서 작성을 요구한 것과, 기합 등이 피해학생에게는 과도한 심리적 부담으로 느껴져 자살에 이르게 한 간접적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 공무원 편의를 위해 학생이 5일간 수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회봉사는 재학증명서 제출로 학교수업이 없는 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명령은 총 40시간을 하루에 8시간씩 5일간 들어야 해서 학교 수업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기간 중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등을 교육받는 것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하나 학생이 5일 동안 수업을 받지 못하는 건 부당합니다.

강사가 공무원이라 근무시간 중에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주의에 학생들이 희생당하는 꼴입니다. 아들이 직접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보호관찰소의 관행적인 업무방법에 대해 진정하겠습니다.

답변: 수강명령 이행으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면 관행, 제도개선을 진정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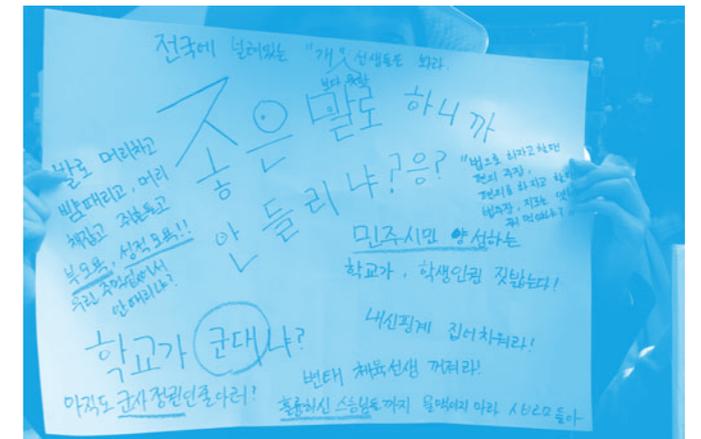
수강명령 시간을 일률적으로 주간에 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없고, 교사나 친구들에게 수강명령 사실이 노출되어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당했다면, 진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이 공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의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경우 수강명령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행, 제도개선의 진정으로 접수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중·고등학생의 교복에 이름표를 꼭 달아야 합니까?

자녀가 각각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의 교복에 이름표를 부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이름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측에 아이의 이름이 노출되는 것이 싫다고 하면 학교에서만 이름표를 달고 집에 갈 때 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됐다면 진정 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름표 부착은 학생들의 개인정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교육기관의 관행적인 개인정보침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정한 신발이 아니라고 뺏어 화장실도 맨발로 갔어요.

○○고에 재학 중입니다. 학교에서 지정하는 신발 외에는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슬리퍼를 신다 적발되면 압수당합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맨발로 다녀야 합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다른 신발이 없어 맨발로 가야 합니다. 집에 갈 때는 근처 문방구에서 새로 사서 신었습니다. 이 일로 부모님을 호출하여 부모님이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사가 교복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아요.

공립중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어요. 작년 여름 복장 집중단속기간에 교복치마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치마를 빼앗겼어요. 그날은 교복이 없어 체육복을 입고 귀가했습니다. 부모님께 교복을 빼앗겼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어요. 교내에 졸업한 선배들이 기증한 교복을 싸게 파는 상설매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치마를 다시 구입했습니다. 평소에는 교복을 줄여 입어도 별문제가 없는데 단속기간에 걸리면 교복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보도자료 2009년 11월 23일

“교복 명찰 강요해 학교 밖까지 공개된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구지역 일부 학교가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하여 학교 밖에서까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이름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전국 각 시·도 교육감에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와 관련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이 개선되도록 각급 학교를 지도·감독할 것과 ▲진정이 접수된 A중학교 등 6개 학교장들에게,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까지 고정명찰을 착용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까지 이름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크고,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교복에 고정명찰을 부착하도록 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에세이 }

야간상담 첫날, 정신 바짝 차린 사연

정미현 인권상담센터 전문상담원

2009년 12월부터 인권상담센터는 야간상담을 시작했다. 오늘은 첫날, 첫 상담을 기다리는 중이다. “떠릭, 떠릭...” 옛되지만 다부진 목소리가 심상찮다. 수능을 이제 막 치른 고3이란다. “오늘 아침 남자친구가 학교 데려다주는 길에, 잠깐 포옹을 했는데 학생주임이 알게 돼서 난리가 났어요. 전 징계도 억울하지만 학생주임의 반응에 더 화가 나요. 연애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어디서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고등학생은 뭐 사람도 아닌가요?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고 감정도 있고 표현하고 싶은 욕구도 있다고요! 근데 선생님은 우리 무슨 별종 취급하고 있어요. 정말 황당해요.”

듣는 나도 황당했다. ‘교복 입고 길거리에서 포옹이라... 학교생활규정이 있을 텐데, 부모님은 아시는지...’ 조건반사처럼 진부한 발상이 인권의 상상력을 가로막는다. 상담을 받다보면 마치 최전방의 군인처럼, 인권감수성의 최전방에서 확인 사실을 받을 때가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린다. ‘난 명색이 인권위 상담원이다. 상상력을 발동하라.’ 순간 퍼뜩 스치는 생각, ‘청소년을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향유자로 인식하는 것부터 우리 학생인권은 시작된다.’

물론 이 학교는 사립학교라 인권위가 직접 조사할 수 없다. 설령, 조사할 수 있다 해도 지금 우리나라 교육현실, 인권 상상력의 수준에서 “연애를 허하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올리는 만무하다. 그러나 좀 살아본 사람들, 이른바 기성세대들에게 꽤나 자극이 될 만한 상담이다. 그 아이의 메시지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말로만’ 청소년 권리 운운하지 마시고요. ‘몸으로’ 좀 얘기하시지요. 그래야 우리와 소통할 수 있고, 우리도 반응할 수 있다고요.”

상담: 선생님이 머리를 자르고, 복장 검사라며  
여학생들의 치마까지 들추어 봅니다.

○○여중 3학년입니다. 긴 머리는 묶고 다녀야만 합니다. 교사가 머리를 풀어 보라고 하여 풀었습니다. 교사는 길다고 하면서 양쪽 앞머리를 가위로 직접 잘랐습니다. 이에 항의했다가 체벌을 당했습니다.

또, 요즘 학교 밖에서는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이 유행이어서 긴 치마 안에다 짧은 치마를 입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무작위로 여학생 치마를 들추어 보고, 짧은 치마를 입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한 친구들이 항의하면 교사는 말대꾸한다며 더 혼내고 있습니다.

답변: 교사가 치마를 들추어 보는 것에 대해 진정 후  
판단을 받아보세요.

학교에서 과도한 복장단속으로 학생의 인격권, 자기의사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학생의 두발 상태에 대해 자기결정권이 보장돼야 하고, 강제두발은 인격권 침해이므로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학생 규율 차원이라고 해도, 여학생의 치마를 교사가 들추어 보는 것은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사의 성희롱은 인권위 조사대상입니다.

보도자료 2005년 7월 4일

“학생두발자유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

강제이발 등 학생 두발단속 및 제한과 관련해 접수된 3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학교장에 대하여 ▲두발단속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이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두발에 관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시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학생 두발제한과 관련한 정책검토 결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에게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 내에서의 두발 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 ▲각급 학교의 두발제한과 관련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감독 기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두발 관련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시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상담: 학교가 학생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내치려고만 합니다.

아들(이하 피해자)은 ○○고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2008년 10월 이동수업에서 파일칩 1개를 복도에 떨어뜨렸습니다.

지나던 교사가 주우라고 했으나, 피해자는 줍지 않고 교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교사가 오더니 귀싸대기를 후려갈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여러 차례 폭행해서 아들은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1주일 뒤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친이 참가한 가운데 퇴학처분을 내렸습니다. 학생을 선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고 퇴학조치까지 내린 것입니다. 다행히 퇴학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11월 15일 피우지도 않은 담배를 피웠다며 피해자를 포함한 10명의 학생에게 벌점 20점을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흡연의 경우 벌점 3점을 주고 있는데 보복의 의미로 20점을 준 것 같습니다.

벌점 60점이면 퇴교조치 대상인데 피해자의 경우에는 72점이라고 하면서 12월 9일까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지 않을 경우 자동퇴교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학생을 가르치겠다는 의지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학생들을 내치기 위해 보호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교 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부당합니다.

답변: 학교의 과도한 퇴학조치 결정에 대해 진정 후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학생지도는 「초·중등교육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학교 교사의 학생 폭행에 대해서 신체의 자유 침해 등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제31조 제2항)에서는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해서 개선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학처분 시에는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퇴학조치 결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07년 2월 6일

“학생 퇴학처분, 적정절차 따라 재심의하라”

“○○고등학교가 학생선도협의회도 개최하지 않고 학교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학 처분하였다”고 양모(20)군이 2006년 12월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등학교(경기도 이천 소재)장이 학교생활규정에 정한 적정한 절차를 어기고 진정인을 퇴학 처분하여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고등학교장에게 ▲학생선도협의회를 개최하여 진정인의 퇴학처분을 재심의할 것과 ▲향후 학생 퇴학 처분 시 학교생활규정에 정해진 적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징계 시 경징계인 학교 내 봉사 및 사회봉사의 경우 학생선도소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중징계인 특별교육이수 및 퇴학처분의 경우 학생선도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학교장이 ‘향후 교칙 위반 시 학생선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퇴학 처분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퇴학 처분 대신 특별교육이수를 명하고, 실제로 진정인이 교칙을 위반하자 그대로 퇴학처분을 한 것은, 규정에 없는 임의 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한 것으로, 이는 학생 징계 시 적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헌법」 제12조가 명시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담: 인권시범학교인데도 0교시를 부활시켰습니다.

B시 공립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0교시를 폐지했다가 정권이 바뀌니 0교시를 부활하려고 합니다. B시에서 보통 0교시는 8시 10분에 시작되고 1교시는 9시부터입니다. 0교시 폐지 이후 1교시를 8시 20분으로 당긴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1교시를 8시 10분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미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0교시 수업은 형식적이거나 선택권이 있었지만 1교시를 8시 10분에 진행하면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우리 학교는 인권시범학교로 지정됐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답변: 0교시 수업 부활로 인해 학생인권이 침해당했다면 진정 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위에 유사한 사안의 진정이 제기되어 2005년에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2005년 당시 기각되었다 해도, 새로운 내용으로 진정할 경우 다른 판단이 가능하므로 진정하여 인권위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0교시 등 강제학습 관련 유사 상담사례 }

방학엔 학생들이 쉬거나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공립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여름방학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충학습을 강제하겠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방학기간 보충학습을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율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장이 바뀌면서 강제 시행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외국에 나가는 것이며, 방학 등교를 원하지 않으면 부모가 학교에 직접 찾아와서 그 사유를 말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방학은 학생이 쉬거나 자기계발을 위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인데, 등교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보도자료 2008년 10월 21일

“조기 등교 강요, 교내집회 강제 해산 등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울산 소재 S중학교교장에게 ▲학생들의 교내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집체교육과 체벌을 가한 것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과 ▲조기 등교, 휴대폰 소지 금지 등의 정책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집회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개최되었고, 다른 학생과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평화적으로 전개되었고, 두발자유와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등 학생의 권리와 관계된 집회였던 점으로 볼 때, 불법집회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학교 측이 불법집회로 규정해 해산시킨 행위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측의 조기 등교 및 자율학습 강요에 따른 자의사결정권 침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습능력 제고 및 모범적 학습 태도 고양을 위한 학교장의 고유 권한 범위 내의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 해도 이해 당사자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학생을 1시간 일찍 등교시켜 자율학습을 시키는 정책은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정규 수업 외에 학교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제 10조에서 보장하는 자의사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학생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기 등교와 관련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상담: 학교폭력으로 팔이 부러진 아이에게 다쳤느냐고 묻고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2008년 12월 22일 학교에서 점심 시간에 줄을 서 있다가 친구에게 심하게 맞았습니다. 시험일이어서 다친 상태로 시험을 보는데 시험시간에 영어선생님이 아들에게 다쳤느냐고 묻고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팔이 부러졌다고 수술을 했습니다. 이번 폭행 이전에도 여러 번 이상한 점이 있어서 담임에게 이야기했으나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군요. 학급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가해 학생이 봄부터 아이를 괴롭혀왔으며 이번에는 식판으로 때려 같이 싸우다가 팔이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해 징계 10일밖에 줄 수 없다며 더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은 먼 곳으로 전학을 간다고 했으나 결국 다니던 학교에서 5분 떨어진 학교로 전학을 간 상태입니다. 아들은 가해자가 언제든지 다시 괴롭힐 수 있다는 생각에 학교에 안 가겠다고 합니다.

**답변: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진정 후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폭행에 대해서는 사인간의 인권침해이므로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립학교 교사가 학생의 폭행 사실과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고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진정 후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왕따, 학교폭력 관련 유사 상담사례 }**

학교폭력으로 학교만 다녀오면 파김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들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예쁘장하게 생긴 탓에 별명이 '여성호르몬의 결정체'라고 합니다. 놀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 아이가 아들 앞에 자신의 성기를 내놓으며 빨라고 했습니다. 마침 교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중단되었습니다.

어제는 아들의 필통을 뺏어 성기에 문지르고 아이들에게 던지니 아이들이 더럽다며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교사와 상담을 했는데 교사는 아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지켜보자고 할 뿐입니다. 아들이 학교만 다녀오면 파김치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2005년 4월 19일

**학교폭력에 대처하지 않은 학교장에 사과 및 예방교육 실시 권고**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학교당국에서 사전에 이를 예방하거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학교장과 교감 및 관련교사에게 ▲피해학생(♂군·16)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가해학생들로 하여금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도록 조치할 것과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해학생의 담임교사는 학기초부터 피해자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04년 5월 피해자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2004년 5월과 6월 피해학생 부모가 방문해 보호 및 가해자 처벌요청을 하였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04년 6월 부모가 재차 방문해 전학을 위한 교장 추천서를 요청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의 부모는 2004년 7월 주수이전에 의한 전학을 하였고 ▲이러한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약 6개월 이상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피해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방지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진정인이 가해자 처벌보다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원하는 점을 감안하여 ○○중학교 교장 및 관련교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할 것과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상담: 경찰이 기선제압 한다며 초등학생을 억박지르고 폭행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학생들 간에 말썽이 생겨 내담자의 자녀를 비롯하여 초등생 6명이 상대 부모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복경찰 2명이 학교로 찾아와 교사 입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아이들을 억박지르고 머리채를 잡고 따귀를 때렸습니다. 항의하자 경찰이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그랬다고 합니다.

답변: 경찰이 수업 중인 초등학생들을 교사의 입회 없이 조사하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하여 진정하여 인권위의 판단을 받아보세요.

경찰이 수업 중인 초등학생들을 교사의 입회 없이 조사하여 학습권을 침해하고, 폭행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 진정하여 인권위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시행령 제31조에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제10조에 따르면 19세 미만 소년 피의자가 조사를 받을 때 신뢰관계에 있는 보호자의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권리를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은 교사가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인권 침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0조 【사회적 약자 보호】

-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보도자료 2008년 7월 4일

“집회신고 학생 수업중 경찰 조사는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북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학교 측의 협조까지 받아 수업중인 학생을 조사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2008년 5월 22일 제기한 진정에 대해, 경찰정보활동 관행에 따라 정보경찰관이 상급 지방경찰청의 지시를 받고 수업 중인 학생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해 학생의 집회의 자유·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장에 대한 서면 경고와, 현행 경찰 정보활동의 업무 범위·원칙·한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고 3학생인 피해자 A는, 갑 경찰서를 2008년 5월 2차례 사전 방문하여 수입쇠고기 반대 등을 위한 적법한 집회신고서를 제출했고, 위 사실에 대한 정보보고를 받은 지방경찰청은 관할 학원 담당 정보경찰관 B경위로 하여금 학교를 방문해 집회 단체 및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관이 일과시간에 학교를 방문해 수업중인 학생을 조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치안정보의 수집’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이라는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은 권한 남용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법」등에 정한 ‘경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경찰관직무규칙」에 정하고 있는 인권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국제인권협약인 「아동권리협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담: 요리학원 다닌다고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랍니다.

아들은 ○○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닙니다. 공부에는 취미가 없다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요리학원에 다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의 허락을 받고 수업이 끝나면 바로 학원에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교장은 야간학습을 안 받고 학원에 다닐 생각이면 전학을 가랍니다. 전학을 갈 경우에도 같은 지역의 학교로는 갈 수 없고, 타 지역 학교로 가라고 합니다.

학교 수업을 안 받고 학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야간학습만 안 받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학원에 다니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 답변: 학생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에 대해 진정 후 판단을 받아보세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야간학습 불참을 이유로 전학을 강제한 것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인지 인권위에 진정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가는 권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에 진정해서 판단을 받아보세요.

보도자료 2008년 5월15일

#### “학교 선택권은 학생에게 있다”

국가인권위는 A씨(남·48)가 아들(피해자)이 재학중인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에서 명찰 미부착, 야간 자율학습 미참여 등 ‘학생생활규정’ 위반으로 기존 벌점을 초과한 학생에게 퇴학예정 및 전학권고를 하고, 퇴학 예정자에게는 관내 학교로의 전학을 불허해 강원도로 전학을 가야 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고등학교의 행위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의 적인 조치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학생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기도교육감에게 ○○고등학교장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 ▲경기도교육감 및 ○○고등학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학생 징계는 ① 학내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 이수 ④ 퇴학처분 등 단계별로 규정되어 있고, 징계처분 시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퇴학 예정조치 및 전학권고를 받은 학생들에게 관내 학교 전학을 허용할 수 없다는 특별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담: 학교와 교사가 아이를 문제아로 만들고 있습니다.

딸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E시 OO중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적응문제로 무단결석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담임교사는 학내 문제의 중심에 딸이 있다며 딸의 재전학을 권하더군요.

담임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딸을 지칭하며 “반평균을 깎아먹는다.”라고 했답니다. 그 얘기를 반 친구들이 듣고는 한 남학생이 딸에게 “반평균을 깎아먹더라도 예쁘든지, 예쁘지 않으면 날씬하든지.”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디서 XX 같은 게 전학을 왔다.”라고 했습니다. 담임에게 직접 그런 말을 했느냐고 물으니 “그런데요?”라고 하더군요.

결국 담임에게 전화하여 누가 되지 않도록 전학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담임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담임 면담 후 진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답변: 교사의 언어폭력에 대해 진정 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1년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명예나 명성에 대해 공격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해서 학생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생각된다면, 인권위에 진정해 침해 여부를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사 인격권 침해 관련 유사 상담사례 }

“너희는 밥 먹지 말라”는 선생님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 가슴에 “나는 꼴통이다.”라는 문구를 적은 명찰을 달게 하고 각 학급을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안 해온 아이들에게 “너희는 밥 먹지 마라.”며 밥을 먹이지 않았다 합니다. 선생님을 찾아가서 항의했더니, “못사는 집 애들인데, 제가 돌보아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더군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럴 수 있는 것인지요.

교사의 언어폭력이 1년 내내 계속됐습니다.

딸이 중학교 3학년으로 I시 OO중학교에 다닙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생업에 종사하느라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으며 아이가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기는 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담임교사 눈엣가시였나 봅니다.

어느 날 담임이 전화하여 “드디어 사고를 쳤네요.”라며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더군요. 담임은 아이에게, “너는 아빠가 엄마가 패는 것을 보고 자라서 너도 아이들 패고 다니느냐?”라고 했다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구경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상황 설명을 하자, “어머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일 몇 시까지 학생부로 오세요.”라고 말하곤 전화를 끊더군요.

다른 아이들에게는 “이 쓰레기 같은 XX들. 자기 애 분유도 못 먹일 XX들”이라고 했습니다. 학생부실의 분위기는 경찰서 취조실 저리 가라더군요.

상담: 시설 청소년의 차별 문제에 대해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33년간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해왔고 현재 보육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설 청소년의 휴대폰 개통 문제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A텔레콤은 최근까지 보육원장 증명, 보육원장 주민등록증 사본, 시설 아동의 수급자 증명 등으로 휴대폰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B텔레콤은 추가로 법정대리인 증명을 요구해, 사실상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각 회사가 약관으로 처리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휴대폰 소지가 청소년들에게 일반화된 상황에서 시설 청소년들은 또 한번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인권위가 시설 청소년의 차별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청소년 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법정대리인을 요구해서, 사실상 휴대폰을 가입하기 어렵게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청소년 인권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위원회가 청소년 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03년 9월 22일

“非학생 청소년, 할인혜택 배제는 차별행위”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에서 비(非)학생 청소년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박모(남·16)군이 2003년 5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헌법 제11조)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비학생 청소년에게도 할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개선할 것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청소년(9~24세)중 비학생은 300만명 정도인데, 이중 9~18세가 50만여명, 19~24세는 250만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통시설 이용요금은 「버스·택시 등의 운임조정요령」(건설교통부 훈령), 「국유철도운송규칙」(철도청 고시), 시·도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게 20~50% 이내에서 ‘학생할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요금은 자체 규정 및 협의에 따라 10~50% 범위에서 학생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청소년 육성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처인 문화관광부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우대 및 할인조항을 삽입하는 등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경제적·사회적으로 불우한 입장에 처해 있는 비학생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고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조속하게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보도 · 바이러스 2008년 12월 9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청소년정책) 아동권리협약 20주년 만에 마련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지, 올해로 20주년이 넘었다.

아동(18세 미만)에 대한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했다. 협약이 맺어진 지 20년이 흐른 지금 한국의 아동, 청소년 인권현실은 어떠한가?

**있으나 마나한 유엔아동권리협약**

2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청소년 인권의 현실은 급격하게 달라진 바가 없다. 학생에 대한 체벌과 두발규제는 여전하고 학생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참여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중, 2008년 촛불집회를 계기로 급부상한 청소년의 참여권은 어떠한가?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참여권은 아동,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12조: 의사표현권, 제13조: 표현의 자유, 제14조: 사상, 종교의 자유, 제15조: 결사, 집회의 자유, 제16조: 사생활의 보호, 제17조: 정보 접근권, 제37조: 고문, 사형금지 아동, 청소년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즉 집회에 참가했거나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체벌을 받으면 제37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제16조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협약이 있음에도 청소년 인권에 빠른 진전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CNC에 가입한 당사국은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입법, 행정, 사법, 기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할 뿐 이를 위반 시 제약하는 국가적 불이익은 그 정도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 절차가 없기에 국가 차원에서 아동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해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어렵고, 아동권리협약(CRC)의 원칙과 조항이 국가별 법률 체계에서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법의 보호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엔 권리협약은 국제적 협약으로서 한 국가를 제약할 방법은 없고, 단지 이를 권고함으로써 국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이를 위해 끊임없이 각 국가의 이행 정도를 관찰하고 한국정부에도 권고하였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매년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강제성이 명백한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이다.

예로 2008년 11월3일 학생의 날을 맞아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학생 인권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입법이 좌절되었다. 이처럼 학생인권을 위해 당연시 제정되어야 할 법조차 정치적으로 휘말려 반대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의 삶을 바꾸나**

법률로 제정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자치 법규를 이용하는 것이다.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오는 10일 제정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이에 해당한다.

김상곤 교육감은 중간보고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제1의 기본원칙으로 ‘학생은 인권의 주체’라는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대다수가 긍정적이거나, 학생 인권 증진이 교권 확립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사 대부분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바 있다.

용역팀으로 선정돼 연구를 진행하는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책임연구원 진영중 소장은 지난 11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 내용으로 학생에게 보장된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했다. 또한, 인권교육 시행 의무 부여,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인권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과 시행, 학생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학생인권관 설치와 상담, 구제절차 명시와 도 차원의 학생참여위원회 설치와 학교단위 학생참여 보장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자문위원회는 사전협의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와 용역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1차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해결과 청소년 주체적 권리의 성장이 이루어질지 기대해본다.

# 6



폭력 ·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 운동선수의 학습권

## 폭력과 권위에 찌든 운동선수



“뺨을 때려요. 별 이유가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쌍둥이가 있거든요.  
피하다가 고막이 나가서 수술했거든요. 그러면 안 때려야 되잖아요.  
작심삼일이에요. 삼일 지났다가 또 때려요...”

모 학교 코치의 폭행에 대한 중3 농구선수의 증언

### 상담: 감독과 코치가 때리면 맞으라고요?

딸이 OO여자중학교의 배구선수입니다. 수개월 전 시합장에서 여성 감독이 딸의 머리에 커피를 붓고, 그 자리에서 원산폭격 기합을 30분간 시켰습니다. 여성 감독이 너무 구타를 많이 해 몸이 망가진 딸을 데리고 있습니다. 교장은 학생들에게 부모님 얘기 듣지 말고 감독과 코치가 때리면 맞으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는 맞게 둘 수가 없어 전학을 시키고 싶습니다. 학교장이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전학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답변: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딸이 구타당한 것을 알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지요. 우리 위원회는 공립학교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지기 시작한 학생선수의 인권침해는 인권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실태조사와 정책 권고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선수에 대한 감독의 폭행과 학교장의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에 대해서 신체의 자유 침해, 학생의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대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 폭력 유사 상담사례 }

#### 코치의 폭력이 너무 심해요.

OO여고 2년 재학 중이며 핸드볼 선수입니다. 코치의 폭력이 너무 심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바로 욕설과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곤 합니다. 커피를 흘릴 정도로 맞고 멍이 들기 일쑤입니다. 대만에 혼린 갔을 때는 코치가 각목 같은 것으로 머리를 때려 피멍이 든 선수도 있습니다. 등이나 얼굴이 멍드는 경우는 잦습니다. 얼마 전 학부모들이 모여 코치를 해고하자고 했으나 감독이 한 번 더 때리면 그때 해고한다고 하더군요. 앞으로는 단체기합만 하고 개인적으로 때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를 만에 오늘 또 때렸습니다.

#### 폭행을 당해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신고조차 못 합니다.

딸은 현재 OO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딸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농구를 했습니다. 올해 졸업하고 실업팀 취업이 결정됐습니다. 딸은 감독에게 2년 전 폭행을 당해 턱 근육이 파열됐습니다. 아주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에 따르면 평생 보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폭행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선수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신고를 못 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졸업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원합니다.



**보도자료** 2007년 12월 17일

**학생선수 폭력 근절 및 학습권 보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선수들(Student Athletes)이 신체의 자유 및 학습권과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대한체육회장에게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정책 권고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의 예방 및 근절, 학원 스포츠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어 ①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 강구 ② 학교운동부 합숙소 시스템 개편 ③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 도입, ④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 대책' 마련 ⑤ 전국(소년)체전 개최 방식의 획기적 개선 등의 방안을 담았습니다.

**1.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 실태 개선**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이 반드시 정규수업에 참여하도록 지침을 하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상당수 학생선수들은 과도한 훈련과 시험 출전 등으로 정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업 결손에 대한 교육당국의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2003년 발생한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참사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교 운동선수들의 합숙훈련을 금지하였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이 합숙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하기 위해서는 더욱 실효성있는 교육당국의 대책과 프로그램이 요구됩니다. 이에 위원회는 ▲일일 및 주당 운동시간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을 최대한 방지하고 ▲'학생선수 튜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득이한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학습 실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방안과 ▲초등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운동부 합숙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 예방 및 근절**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한체육회는 학생 선수 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중앙과 산하기관에 '(학생)선수보호위원회'와 '선수고충처리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등 형식적

으로는 학생 선수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약 75%의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고, 주당 평균 신체적 폭력 피해 횟수도 3~4회 이상이 약 40%, 주당 11회 이상도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15%는 성추행을 경험하였다고 답변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 사례들이 이슈화 되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온 최근에도 여전히 다수의 학생선수들이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대한체육회의 학생선수 인권 보호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학생선수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식적·임시적·미온적인 각종 대책을 넘어서는 실질적·지속적·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한층 강화된 수준의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선수 지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그 정도가 중한 폭력·성추행 가해자는 명확한 법적 조치 및 영구 자격 박탈 등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3. 학원스포츠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학생 선수의 학습권 침해와 폭력 문제는 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현상으로 학원 스포츠의 구성주체들을 성적지상주의와 과잉 경쟁의 구조로 내모는 국가의 엘리트 스포츠 정책의 부작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히,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제로서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초등학교 시기부터 과도한 훈련과 경쟁, 장기간의 수업결손 및 합숙훈련, 구타 등을 유발하고 있는 현 전국(소년)체전의 개최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낮은 수준의 학력 기준에서 시작하여 사전예고 하에 단계적으로 상향 조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상급학교 진학, 학생선수 등록 및 대회 참가 기준 등에 관한 "최저학업 기준인정제도"를 도입할 것과, ▲지역별 리그제 도입 및 유소년 스포츠 축제 전환, 초등학교생수의 전국소년체전 참가대상 제외 등 전국(소년)체전 개최 방식에 대한 획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상담: 이적동의서를 주지 않고 학교와 도교육청이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딸(이하 피해자)은 OO여자중학교 3학년 운동부 선수입니다. 피해자는 타도로 전학하여 다른 환경에서 선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나흘 전에 학교 측에 이적동의서를 요청했습니다.

교장은 이적동의서를 써주면 '타도로 선수를 빼겠다'며 도교육청으로부터 문책을 받아서 써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도교육청에 문의하니 이적동의서는 학교장 재량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줄 테니 도내 전학을 고려해보라고 합니다. 이적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도움을 바랍니다.

답변: 공립중학교의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172

공립 중학교에서 선수의 이적동의서를 거부하여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했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아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10조 행복추구권 침해로 인권위에 진정하십시오.

인권위는 학생이 생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학교의 선택권은 학생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교육감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이적동의 유사 상담사례 }

이적동의서가 없어 전학 간 농구부 학생들이 경기를 못 뛰고 있어요.

○○고등학교 농구부 학생의 부모입니다. 농구부 코치에 대해 학부형이 성희롱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해당 코치가 권고사직되었습니다. 그 후 대부분의 농구부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장은 전학에 따른 '이적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아서, 전학 간 농구부 학생들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모 방송사에서 보도된 뒤 교장이 만나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특기생들은 이전 학교장의 동의서가 없으면 새로운 학교에서 곧바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출전할 수 있음.

유사 사건 위원회 합의종결 2009년 9월 14일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관련

진정내용

- 1) 피해자들은 Y중학교에서 운동을 하였고, 체육특기생으로 T여고에 진학하고자 S여중으로 전학하였음. 피해자들은 특기생으로서의 고등학교 지원서를 9월 중에 제출하여야 하나, 피진정인들은 ○○도체육회의 발전 등을 이유로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아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피해자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하였고 앞으로도 운동선수로서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으나 피진정인들이 이적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음.
- 2) 또한, 피해자들은 피진정기관의 운동선수로 활동하면서 피진정인 B의 심한 체벌과 언어폭력으로 원형탈모가 생기는 등 힘든 시기를 보냈으므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함.

합의내용

- 가.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 줌.
- 나. 향후, 진정인은 진정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 청원, 민·형사·행정상 등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함.

173

보도자료 2003년 6월 17일

“운동선수의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는 인권침해”

“경북개발공사 역도팀에 입단하기 위해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전 소속팀 공주시청에서 이적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됐다”며 역도선수 이모씨(22)가 2003년 2월 공주시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모씨에게 이적동의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공주시장에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이모씨는 2000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공주시청 소속 선수로 활동했고 ▲2001년 2월 군(상무부대)에 입대하면서 공주시청을 퇴직했고 ▲제대(2003년 4월)를 앞두고 경북개발공사측과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주시가 이적에 필요한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바람에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선수의 이적시 전 소속팀 단체장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한 ‘대한체육회 선수선발 및 등록지침’의 근거규정이었던 문화관광부의 ‘선수선발 및 등록에 관한 일반지침’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2003년 3월 2일 폐지됐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대한체육회의 위지침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운동선수는 현역선수로 활동할 때 비로소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휘할 수 있으며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음에 따라 진정한 무등록 선수가 되는 것은, 운동선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공주시청측이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내용의 이적동의서를 발급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주목했으며, 운동선수가 보다 나은 대우를 받으면서 운동에 전념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판단했습니다.

상담: 운동선수라고 운동만 해야 하나요.

아들은 고교 2년생 축구선수입니다. 학교수업은 일절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요일 오후에만 귀가하고 일요일에는 다시 합숙소로 들어갑니다. 1년에 52일만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셈입니다.

합숙소는 학교건물 지하에 있으며, 부모의 합숙소 방문, 전화통화 등이 일절 금지되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음식을 먹으며, 어떤 생활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합숙생활 및 수업참여 금지에 대해 학부모는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괜히 이의를 제기했다가 감독 등에게 잘못 보일까봐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권위에서 학생선수가 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권고한 것으로 아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과부,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 아들이 다니는 학교와 아들의 이름을 대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비밀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명을 밝힐 수 없는 노릇입니다.

아들이 다니는 학교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 상황이 대동소이한데, 관련기관에서 나 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 답변: 사립학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정책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최근에 불거지기 시작한 학생선수의 인권침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실태조사와 정책권고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2007년 12월 학생선수 폭력 근절 및 학습권 보장에 관한 정책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즉 체육특기생의 학습권 보장 권고는 개별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가 아니라 인권위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현재 사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개별 사건으로 위원회가 조사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08년 11월 19일

###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11월 19일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중고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중·고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 전반에 관해 진행된 국내 최초의 포괄적 인권 실태 조사 보고서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드러난 학원스포츠 인권 실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폭력 실태

학생선수 78.8% 폭력 경험, 폭력 경험 학생 56.4% “운동 그만두고 싶다”

조사 결과, 전체 학생선수의 78.8%가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훈련과 상관없이 욕설 또는 폭력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5%의 학생들은 일주일에 1~2번 이상 ▲5%의 학생들은 매일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

한편, 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영향은 ▲“운동을 그만두고 싶게 만든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고 ▲“화가 난다”는 응답이 45.3%였으며 ▲경기력 향상 등 폭력 필요성을 합리화했던 일반 통념과 달리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0.1%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는 응답은 여학생이 66.4%, 남학생이 47.1%로 폭력이 여성선수에

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된 폭력의 행위자는 코치, 선배 순으로 나타났는데, 지도자의 폭력이 학생선수들간의 폭력과 구타 문화를 재생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또한, 폭력의 주된 발생 장소는 훈련장과 합숙장으로, 앞으로 학원스포츠 폭력의 개선을 위해서는 선후배간의 위계질서와 ‘군기 잡기’ 등 비공식적 형태의 폭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사례〉

(지도자가) 뺨을 때려요. 별 이유가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쌍둥이가 있거든요. 피하다가 고막이 나가지고 수술했거든요. 그러면 안 때려야 되잖아요. 작심삼일이에요. 삼일 지났다 또 때려요... [중3, 농구]

(지도자가) ××년아, 니 그럴 거면 꺼지라면서, 그리고 니는 뭐 이렇게 살면 나중에 인간 대접도 못 받는다면서 막 뭐라고... 진짜 싫고... [중2, 핸드볼]

선생님한테 선배가 혼났을 때 (선배가) 정말 선생님하고 똑같이 대가리 박으라고 하고 발로 밟고 그러지요... [고3, 농구]

#### ● 성폭력 실태

학생선수 63.8% 성폭력 피해 경험, 강간 피해 사례도 12건

성폭력 피해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자의 63.8%가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유형 별로는 ▲언어적 성희롱이 58.3%로 가장 높았고 ▲강제추행도 25.4%로 높았으며 ▲심지어 강간 및 강제적 성관계 요구 사례도 각각 1%(12명)와 1.5%(17명)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장소는 주로 합숙소나 기숙사였으며, 특히 친구, 선후배간 성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응답 역시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가 46.7%, ▲“화가 난다”가 45.9%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낀다”가 41.8%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남학생은 “화가 난다”는 응답이 53.1%로 가장 많은 반면 여학생은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는 응답이 54.7%로 여학생이 성폭력 피해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력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대처는 적극적인 편입니다. ▲59.6%가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43.3%는 “가족, 선생님, 친구 등 주위의 도움을 구한다” ▲30.1%는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폭력의 경우는 체벌로 인식해 수용성이 높지만 성폭력은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폭력에 대처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3.2%가 “불만을 말하면 선수생활에 불리할 것 같아서” ▲16.3%는 “그런 이유로 운동부를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라고 대답해 운동 선수 생활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31.9%는 “수치스럽고 당황해서” ▲29.7%는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29.5%는 “말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여 피해 현장에서 학생선수들이 적절한 대응 방식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며,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해결책이 없다는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례〉**

운동할 때 감독님이 수비는 이렇게 하리면서, 어쩔 때 막 (옆구리를 가리키면서) 여기 만지고 가슴 만지고... 만지는데 한 번쯤은 우리가 실수로 만졌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다음에도 할 때요, 계속.. 정말 기분 나빠요... [여중2, 핸드볼]

우리가 학교 합숙소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감독 선생님 와서요, 막 우리 훑어보고 우리 무릎 위에 막 앉고. 우리 보고 흰머리 뽑아라, 다리 주물러라, 어깨 주물러라... 한 번은 소풍 가자고 했는데 뽀뽀하면 해준다고, 우리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운동 더 빠르게 야간까지 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 했어요... [여중2, 핸드볼]

옷을 벗으라고 하고 그냥 몸 만지는데요.. 여기 중요부위 같은데요. 아무 때나 그러는데요. [남자] 선배도 예전에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대요. (선생님은 아세요?) 선생님도 가끔씩 그러시는데요... [남중2, 배구]

**● 학습권 실태**

“더하기 빼기부터 하고 싶어요”(고2 학생선수)

수업 참여 시간 - 시험 있을 때 하루 2시간, 없을 때 4.4시간

국가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중, 고교 학생선수들의 정규수업 참여시간은 시험이 있을 때 평균 2시간, 시험이 없을 때는 4.4시간 정도로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82.1%의 학생들이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수업은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는 등 학습권 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습권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는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더욱 심각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많은 학생선수들이 오전 수업 정도를 들어가지만, 그마저도 전지훈련이나 대회 참가를 하고 오면 진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실제 수업 참여는 하지 않고 인터넷을 하거나 잠을 잔다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전국소년체전 참가는 운동부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하게 되

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외 공부를 하거나 보충 공부를 하려 해도 일부 지도자는 오히려 눈치를 주고, 일부 체육고의 경우는 아예 교과과정에서 상당수 교과의 교육을 생략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습을 이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진술도 나타납니다. 심지어 어떤 고등학생선수는 스스로를 ‘더하기 빼기’부터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사례〉**

제가 저번에(중학교 때) 과외를 했었는데요, 더하기 빼기부터 하고 싶다고 이랬거든요. 되게 쪽 팔렸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여고2, 배드민턴&골프]

5학년 정도 되면 소년체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길 붙으면 그 전에 한 달 전부터 합동훈련하고 적응훈련 다니고... 그러면 수업을 빠지니까 점점 성적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채울 수가 없으니까 운동이라도 해서 그걸로 밀어붙이고 나가라. 이려고... [여고1, 양궁]

**● 정책 제언**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 필요

이번 실태조사는 학생선수 인권 관련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특히 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이 시급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폭력, 성폭력 예방 및 학습권 보장 등 학생 선수 인권 향상을 위해 2007년 국가인권위 권고안에 기반한 ▲최저학업기준인정제 ▲체육특기자제도 개선 ▲수업 결손 금지 ▲합숙소 개선, 전국(소년) 체육대회 개선 및 유소년 축제로 전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의 강력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결과와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권적 관점’에 입각한 학원스포츠클럽 정책 전환 ▲인권침해 예방 및 인식 개선 정책 마련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병행하는 “학생선수 인권 종합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7



직장 내 성희롱 · 공공기관 성희롱 · 의사의 성희롱  
교수와 교사의 성희롱 ·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성희롱 · 동성 간 성희롱

## 침묵을 강요하는 성희롱



발생 장소는 직장 내부가 절반을 차지했고, 직장 밖에서는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회식 자리나 출장 중이 적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성희롱 사례집에서

### 상담: 성추행 가해자를 보는 것이 괴로워서 퇴사했습니다.

2008년 3월부터 ○○에서 미용사로 일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해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탈의실에서 나오는데 P원장이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면서 “내 새끼 많이 컸네.”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불쾌해 뿌리치고 일을 하였으나 다시 원장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괴로워 퇴사하였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P원장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지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문제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P원장의 성추행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 답변: 직장 내 성희롱은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 관점과 합리적 여성의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가해자의 성희롱 의도 여부는 우리 위원회의 성희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업무연관성을 가진 사람에 의한 성희롱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의 범주에 들어가며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 직장 내 성희롱 유사 상담사례 }

남성 직원이 생리대까지 검사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생은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는 직원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는데, 남성 보안 직원이 동생의 생리대까지 검사하였습니다. 그 남성 직원은 동생에게 생리대를 보안대 앞 사물함에 넣고 하나씩 빼서 쓰라고 했습니다. 또 동생에게 생리대를 투명한 봉지에 넣어서 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마트의 경우 생리대를 작은 손가방에 넣어 휴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마트의 과도한 소지품 검사 때문에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사가 성희롱을 방관하며 덮기에 급급합니다.

2009년 초 팀장과 해외출장을 갔는데 둘만 있게 되면 성적인 농담을 하였습니다. 목욕 가운을 입고 업무를 보는가 하면, 뒤에서 끌어안고, 팔의 안쪽 살을 꼬집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인사팀에 얘기하자 상황진술서를 쓰라고 하여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증거서류가 있어야 한다며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부사장에게 항의하자, “꼭 이렇게 문제를 크게 해야겠느냐?”며 사건을 은폐하려고만 합니다.

상담: 성희롱으로 직위 해제된 팀장과 계속 같은 부서에서 근무합니다.

내담자는 ○○ 소속 공무원입니다. 팀장이 부서 여직원과 타부서 여직원들의 손과 어깨를 필요 이상 만지고 “차를 마시러 와라, 밥을 같이 먹자”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팀장은 내담자가 차 마시자는 것을 거절했더니 “저년은 남편의 뼈를 갈아먹을 년이다.”라는 욕을 했습니다. 워크숍 갔을 때는 여성이 혼자인데 혼숙하도록 방을 1개만 정하라고 했습니다. 팀장은 여직원들에게 잘 보여야 잘해주겠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곤 했습니다. 팀장은 한 여직원을 핵심 반대자라며 집까지 찾아가 “문 열라”고 소리치고, “미친년”이라고 욕하면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여직원은 정신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부에 팀장의 성희롱에 대한 고충을 제기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감봉 3개월에 직위 해제되었으나 계속 같은 부서에 근무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은 일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성희롱 관련 배치전환 문제에 대해 진정 후 판단을 받아보세요.

직장 내 성희롱은 침묵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직원들이 연대하여 가해자가 직위해제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배치전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근무가 현저히 어려울 정도라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성희롱에 대한 진정없이 성희롱의 2차 피해만 조사대상으로 한 진정은 일반적 유형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희롱 가해자를 같은 부서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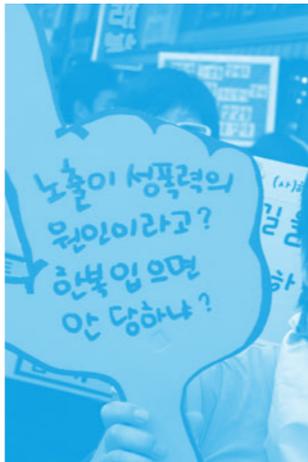


상담: 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성희롱했습니다.

얼마 전, '○○시민 여성축구단' 창단식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축구단 코치가 남성같이 생긴 것을 보고, ○○시장은 “유방이 없어서 가볍겠다.”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여 참석한 시민이 모두 당황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코치는 조사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성희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시장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진정 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성희롱 발언으로 내담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 피해자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으로 진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 · 노컷뉴스 2009년 2월 25일

중앙대 총장 “조그만 게 감칠맛 있다” 성희롱 논란

중앙대 박범훈 총장이 한나라당 강연회에서 자신의 여제자를 가리켜 “토종이 애도 잘 낳는다” “감칠맛 있다”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박 총장은 지난 23일 한나라당 내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과 ‘함께 내일로’ 공동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초청강연회에서 여제자를 가리키며 “이렇게 생긴 ‘토종’이 애도 잘 낳고 살림도 잘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총장은 “이제 음식도 바뀌고 해서 요즘엔 키가 크지 않습니다. 사실 (자신의 여제자를 가리키며) 감칠맛이 있다. 요렇게 조그만데 매력이 있는 거다. 시간상 제가 자세하게 여러가지 내용을 설명 못 드리겠는데...”라고 덧붙였다.

또 “미스코리아를 보면 예쁜 아가씨들만 나와서 고르는데 진선미를 심사하기 어렵다”며 “그런데 심사하기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럴듯한 사람 하나 세워놓고 옆에 못난이를 갖다놓으면 된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류를 알면 정치를 잘한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박 총장은 한나라당을 교수로, 이명박 정부를 소리꾼으로 비유했으며 후반부에 실제로 판소리를 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선 여제자를 향해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

박 총장은 강연 도중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조폭’에 비유하기도 했다.

박 총장은 “수염 안 깎으신 의원(강기갑 의원을 지칭)님이 신발 신고 올라가서 꺽충꺽충 뛰면서 난리쳤잖아요. 조폭 같은 행위를 하는 분들이 티비에 비치면 저 같은 예술하는 사람은 가슴이 쓰리다”는 발언을 했다.

박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중앙대 학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대학 총장으로서 부적절했다”는 비난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발언만 봐서는 대학 총장이 한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진심으로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은 학교 게시판에서 “총장으로서의 인성이 의심스럽고 노력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얻어낸 성과까지 매도당하고 있다”면서 “총장 퇴진운동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토종 체형을 가진 사람의 소리에 감칠맛이 더해진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조은정 기자

상담: 시의원에게 당한 성희롱 사실을 알렸는데  
직장에서 쉬쉬합니다.

시청 공무원인 처형이 2009년 4월 시의원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업무상  
간 1박 2일 워크숍에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처형은 하위직 공무원이라 과일을  
짜고 술을 채기는 일을 했습니다. 시의원은 처형의 손을 강제로 잡고 억지로  
술을 먹였습니다. 또한, 방 열쇠를 손에 쥐어주면서 “숙소가 불편하면 내 숙소  
로 와서 자라.”는 등의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처형에게 방 번호를 알려주면서 오라고 하였습니다.  
처형이 직장협의회에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근무 부서의  
국장과 과장, 팀장이 처형을 불러서 “왜 신고했느냐, 그 술자리에 있었던  
것이 문제다, 직협에 신고한 것을 취소하라.”고 하였습니다.

답변: 시의원의 성희롱과 상사의 대처에 대해 위원회  
판단을 받아보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서 업무관련성이라 함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상황이 업무와 관련한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소속한  
부서의 국과장이 해당 시의원과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성  
희롱 신고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도 성희롱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성희롱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처벌조항이 없으며 고소해도 실익을 얻  
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에 따라 인권위 진정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담: 남자 정형외과 의사 혼자서 여성 환자의  
팬티까지 끌어내렸습니다.

2008년 교통사고로 ○○의료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저녁 10시30분쯤 젊은 의  
사가 손에 젤을 묻히고 왔습니다. 반응검사를 한다며, 피해자의 허리 왼쪽, 오  
른쪽에 주삿바늘을 찌르더니 팬티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깊이까지  
젤을 묻혀 항문을 찌르려고 해 의사를 제지하였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상  
황 설명도 없이, 남자 의사 혼자서 여성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의  
료행위에 대해 항의하였습니다.

답변: 의사에 의한 성희롱은 조사대상입니다.

의사의 진료행위 중에 발생한 성희롱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의 당사자 범위를 확대하여 의사의 진료행위 도중 발  
생한 성희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권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 사건 위원회 합의종결**

**의사의 성희롱 관련**

**진정내용**

진정인은 감기로 K내과외원을 방문하였는데 의사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진료침대에 눕힌 후  
아무런 설명 없이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청진을 하고 골반 쪽 배를 만지며 간지럽느냐고 물음.  
진정인이 수치심을 느껴 침대에서 일어나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누워보라며 가슴을 만짐.

**합의내용**

피진정인은, 향후 환자들에게 진료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본 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고, 양 당사자들은 본 건 내용을 재론하거나 유포하지 않는다.



**상담: 60대 교사의 상습적인 성폭행에 대해 더 강경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008년 7월 공립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60대 교사가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주 후 가해자의 성폭력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형사 고소하였고 가해자는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가해자는 아이들의 바지를 벗기고 성희롱하였으며, 컴퓨터 게임을 가르쳐준다며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 여러 차례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사건이 발생하고 가해 교사가 형사 입건되기 직전에야 사직서를 받아 수리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파면해야 합니다.

OO교육청은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만 하는데 이런 행태와 직무유기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피해자의 심리치료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 위원회 진정 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성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사직서가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된 연금을 모두 회수하여 파면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는 OO시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성폭력 상담소 또는 OO시청 복지과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D대학 L교수의 성희롱에 대해 진정하고자 합니다.**

내담자는 2007년 D대학교 OO과에 입학하였으나 L교수의 성희롱으로 2008년 1학기 이후 휴학하고 2009년 자퇴하였습니다.

L 교수는 일대일 레슨을 받을 때 내담자에게 예쁘다는 말을 항상 하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치마를 입고 있을 때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클래스 모임 때 가면 항상 옆에 앉히려고 하였습니다.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계속 이런 일이 있어 레슨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한번은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라면서 내담자가 좀 더 성장하면 바닷가를 함께 걸으면서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안았습니다. 내담자가 놀라서 가만히 서 있으니 왜 자기를 안아주지 않느냐고 하였습니다.

자퇴신청을 하러 학교에 갔을 때 L 교수를 만났는데 내담자에게 “적응력이 부족해 자신의 표현을 이상하게 받아들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희롱에 대하여 진정하고자 합니다.

**보도자료** 2007년 4월 19일

**성희롱 발언한 교수에 경고조치 권고**

모 대학교 이모 교수가 교수회관 내 식당에서 노동조합원들과 학교 측에 노사문제와 관련해 항의하던 정모(여·37·진정인) 교직원에게 여러 명의 직원들과 교수들이 보는 앞에서 가슴을 가리키면서 “가슴이 보인다. 닫고 다니라”라고 하였다며 국가인권위에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이모 교수에게 국가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소속 학교 총장에게 이모 교수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하고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가리키며 발언하는 장면이 찍혀 있고, 녹음된 음성내용에 “가슴이 앞에 사람(에게) 보이니까 닫아요”, “거기 신경 쓰고”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바로 옆에 있던 교직원 두 명이 직접 피진정인의 발언을 들었다고 하였으며, 다른 교직원 두 명은 사건 발생 직후 진정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반면 피진정인은 관련 내용을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위와 같이 진정인의 진술, 행위를 목격한 증인,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 당일 피진정인이 보인 언동을 성희롱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상담: 성추행 사건 조사 중 검찰에서 2차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검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가 내담자에게 “성욕은 어떻게 푸느냐?”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담자가 성적 소수자임을 알고, 검사가 조사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여 내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싶습니다.

### 답변: 성적 소수자에 대한 검사의 성희롱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성 간의 성희롱뿐 아니라 동성 간의 성희롱도 조사범위에 포함합니다. ‘성추행’ 조사과정에서 검사가 성적 소수자인 피해자에게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한 경우 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06년 6월 28일

#### “동성애자 사병 차별과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인권교육 권고”

“군대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하였다”며 김모씨(23)가 2006년 2월 10일 연대장등 관계자들과 국방부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 ○○연대 연대장, 의무중대장 등 관계자 4인 등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주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또 신병교육대 대대장 및 군의관 등 관련자 9명에 대하여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아울러 국방부장관에게는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인권보호 지침을 수립하고 군대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2005년 6월 ○○소제 ○○○보충대 입대 후 7월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였는데, 신병교육대 부소대장과 고충상담을 위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게 되었고, 그 이후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변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전역심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성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키스 사진을 제출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 사진만으로는 동성애자임을 입증되지 않는다는 부대 책임자들의 통보에 따라 강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 끝에 성행위사진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으며 ▲명시적 동의 없이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와 매독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관계자들이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피해자를 전역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는 점,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개인정보의 관리가 소홀하게 다뤄진 점, 명시적 동의 없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나 매독 검사가 실시된 점 등을 인정하고 이는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인격권의 침해이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담: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는 교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입니다. A교수는 학생들 사이에서 남자를 좋아하기로 소문났습니다. 얼마 전 조문을 위해 A교수(남성)와 후배(남성), 제가 함께 상가에 갔습니다. 새벽 3시경 다음날 장지에 가야 하니, 잠을 자자고 하여 장례식장 근처 모텔을 잡았습니다.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잠결에 누가 몸을 만지고 있어, 후배 잠버릇인 줄 알고 “이러지 마”라고 하며 손을 치웠습니다. 몇 번을 치우다 순간 누가 어깨를 혀로 핥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후배는 침대 밑에 있고 땀 방에 있어야 할 교수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교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순간 놀라서 앉아 한숨을 쉬고 자는 후배를 깨워서 방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답변: **(동성) 교수에 의한 성희롱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도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은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이성 간의 성희롱뿐 아니라 동성 간의 성희롱도 조사범위에 포함합니다. 학교 교수의 경우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권위의 조사는 관련자 외에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내담자가 걱정돼서 그랬다며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담자는 미혼 여성이며 ○○산하단체 간사입니다. 2008년 1월과 8월 각각 직장상사인 사무총장(여성)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2008년 1월경 치마를 입고 출근한 내담자에게 “치마가 너무 짧아 속이 다 보인다. 눈을 어디다 돌지 모르겠다. 밤에 어디 나가느냐? 야시시 하네.” 등의 말을 했습니다. 이에 항의하자, “야하게 생기지 않아 농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008년 8월경엔 동료직원인 ○팀장과의 만남에 대해 “○팀장과 잤어? 잤잖아 빨리 말해, 남자 손 타서 살 빠졌다고 그러더라. ○팀장한테 성폭행 당했어? 맞았어?” 등의 성희롱을 했습니다.

원장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으나 처음엔 내담자에게 참고 잘 지낼 것을 권유했고 지금은 성희롱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징계조치하겠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성희롱 사실을 인정치 않고 내담자를 걱정해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가해자의 성희롱 사실 인정과 진정한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언론 보도 · 한국일보

**“성희롱 경계대상 1호는 직장 상사” 66% 차지… 조직 간부는 47%**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접수한 성희롱 사건 562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인 피진정인 가운데 46.8%가 조직의 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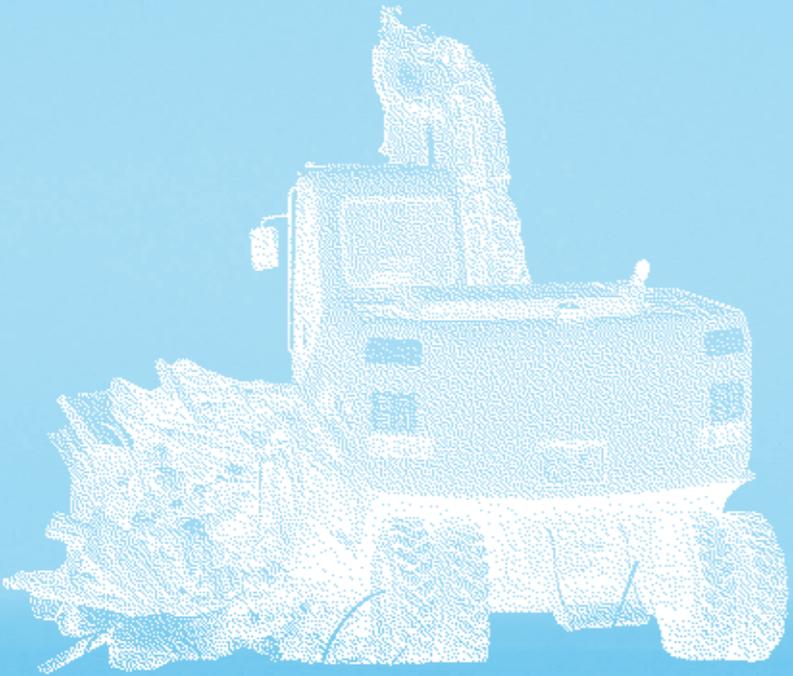
인권위가 30일 펴낸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2권’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기업 및 비영리 단체의 경영자인 경우가 136건(24.2%), 중간관리자가 127건(22.6%)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가해자로 연루된 사건은 85건(15.1%), 각종 학교의 교직원이 관련된 사례도 75건(13.3%)이었다.

성희롱은 주로 직장 내에서 직위를 이용해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직장 내 상하관계인 경우가 65.8%(370건)로, 직장동료(11.6%)나 교육인-피교육인(8.7%)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성희롱 장소도 대부분 직장(312건 · 52.0%)이었고, 다음은 회식장소 125건(20.8%), 사석 47건(7.8%) 순이었다.

성희롱 유형은 신체적 접촉 197건(35.1%), 언어적 희롱 173건(30.8), 선정적인 화면·사진 등을 보여주는 시각적 희롱 20건(3.6%), 이런 사례가 뒤섞인 복합적 성희롱이 172건(30.6%)이었다. 진정인은 대부분 남성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이었지만, 여성이 남성을 성희롱한 사례가 6건, 동성 간에 발생한 성희롱도 성별로 7건씩 14건 접수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자칫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가벼운 신체접촉도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다며 성희롱 판정을 받는 것이 요즘 추세”라며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더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 8



노인요양원 · 양로원 · 아동보육시설 · 놀이방 · 아동보호 법률조항 위반  
재개발 회사의 퇴거 압박 · 근로기준법 ·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단절 조치 · 쌍용자동차

##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회적 약자



“사회권도 자유권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권을 실현하려면  
국가의 자기 억제 의무와 적극적 의무를 동시에 절묘하게 동원해야 한다.”

샌드라 프레드먼 지음, 조효제 옮김 <인권의 대전환>에서

상담: 요양원에서 말 안 듣는다고 때린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신 상태인데, 양심선언을 한 요양사를 통해 요양원의 끔찍한 인권침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용변을 많이 봐도 네 시간 반이 지나야 기저귀를 갈아주고, 노인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경우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게 관행이라고 합니다. 용변을 많이 보면 귀찮다고 의식불명 환자에게 주는 ‘뉴케어’를 환자에게 주지 않고 요양사가 먹거나 피부에 바르는가 하면, 밤에 소변이 새지 않도록 몸에 두꺼운 테이프를 붙여놓아 아침에 이것을 뗔 때마다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혈당 부족으로 병원에 실려 간 적이 있는데, 요양사 얘기로는 요양원 측에서 ‘뉴케어’를 제때 공급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진정을 제기해 판단을 받아보시죠.

부모님이 겪으실지도 모를 일이니 걱정이 크실 듯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할 경우, 진정을 접수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제1호(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2호(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에세이 }

“어르신, 죄송합니다”

김소연 인권상담센터 전문상담원

화창한 오후 노쇠한 어르신이 인권상담센터 접수대 앞 의자에 털썩 앉으셨다. 들쭉날쭉 남아 있는 치아로는 온전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탓인지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제대로 따지지 않는 눈으로 몇 마디 하시는가 싶더니 이내 조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다. 귀를 기울여 그의 얘기를 들어 보았다.

그는 어느 노숙인 쉼터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젊은 사람들이 빠져서 갈 수가 없으니 쉼 곳을 찾아달라고 했다.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애원하는 어르신에게 “인권위에서 직접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어르신에게 당장 필요한 건 쉼터였다. 그래서 서울시청 복지과와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에 문의했다. 어렵게 오늘밤 잠시 머물 곳을 찾았으나 어르신은 그곳으로 가는 길을 몰랐다. 어르신은 쉼터까지 데려다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엔 중구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으나 행정구역이 달라서 곤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 지구대에서도 어르신이 행정구역까지 와야만 안내하겠다고 했다.

어르신은 내가 열심히 전화 돌리는 모습을 지켜보다 힘겹게 일어나 “고맙다” 는 인사를 남기고 떠나셨다. 어르신의 뒷모습이 왠지 걱정스럽다.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그때 함께 따라가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초저녁 날씨가 차갑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상담: 양로원 원장의 전황이 심각합니다.

저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양로원에서 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양로원에서는 원장의 폭행 때문에 입소자의 팔이 부러지는가 하면, 머리에 물이 차기도 합니다. 게다가 양로원에서 입소자들의 개인통장을 관리하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인 이사장도 통장 32개를 가지고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답변: 인권위 판단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내부의 문제라서 더 고민이 많으실 듯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선이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좋을 듯합니다. 시설을 담당하는 지자체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도 있고, 인권위 진정을 통해 조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일 경우, 우리 위원회가 진정을 접수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제1호(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2호(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상담: 의사가 치료하라는데 원장이 거부했어요.

제 조카는 부모가 이혼한 뒤 친할머니 집에서 크다가, 2007년 11월 전북 고창에 있는 아동수용시설 A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가족들이 자주 방문했고, 원장이나 담임선생님과 전화통화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8년 3월 수차례 전화해도 통화가 되지 않아 4월 초에 방문을 하니, 조카가 시설 내부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허벅지 부분을 심하게 다쳤더군요. 조카는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상처에는 물이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의하자 원장은 치료를 잘했으니 책임이 없다면서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치료 병원인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입원 및 MRI 촬영을 강권했는데도 원장이 거부했다고 하더군요.

조카는 현재 저희 엄마가 데려와 키우고 있는데, 상처는 많이 아물었지만 장애가 생길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답니다. 저희는 원장이 교통사고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치료를 미흡하게 한 것에 대해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답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직접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보호시설에서 아동이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소통이 가능한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다면, 아동복지법 등을 위반했는지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등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고소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담:** 원장과 교사에게 맞아 뇌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웃에 부모가 이혼하여 할머니가 키우는 7세 아동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아파트 놀이방에 맡겼는데, 1년여 동안 원장과 교사가 아이 머리를 수시로 때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아이가 손과 발을 떠는 등 후유증이 발생했고, 할머니가 왜 때렸느냐고 항의하자 교사와 원장은 말을 안 들어서 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답니다.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할머니가 교사를 때렸는데, 원장 남편이 합의를 보자며 돈을 요구했다더군요. 할머니가 이를 거절하자 결국 경찰을 불렀고, 원장과 교사가 각각 진단서를 첨부하여 폭행으로 할머니를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아이를 ○○병원에서 검진하니, 뇌 속에 흰색의 특이한 부분이 나타나는 등 이상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 머리를 자꾸 때려서 이상증세가 온 것이라면, 이 아이의 권리는 어떻게 찾아야 할지 걱정됩니다.

**답변:**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지원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아동보호의 의무가 있는 자가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있다면, ○○지역 아동학대예방센터 등의 지원을 받아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아이 뇌의 이상 징후가 놀이방의 구타 때문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우선 의사의 원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진단에 따라 민형사상 절차가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아이를 수차례 조사해 아이가 겁을 먹었어요.

이웃에 사는 11세 아이가 지난 토요일 문방구에서 놀이카드 몇 개를 훔쳤습니다. 문방구 여주인이 아이를 사정없이 때려서, 아이 머리가 여러 군데 붓고, 다리에 상처가 난데다, 등짝 전체가 시뻘게졌습니다.

문방구 주인의 남편이 지역 유지라, 경찰과 학교장까지 나서서 여주인이 사랑의 매를 때린 것이니 합의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이 여주인이 전에도 다른 아이를 폭행한 사례가 있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아동을 조사했는데, 그 뒤에도 지구대로 아이를 수차례 불러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며 조사하여, 아이가 겁을 먹고 있습니다. 지구대는 문방구 주인 말만 듣고 경찰서로 사건 이송을 계속 미루다가 얼마 전에야 경찰서로 사건을 보냈습니다.

아동 수사와 관련하여 아동보호 법률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동학대센터에 문의해봤지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답변:** 형사소송법에 보호조치 조항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필요 이상 출석시켜 반복진술을 요구하는 등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부당한 합의 강요에 관해서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의 2(동법 제221조제3항 준용규정)에 따르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경찰이 수사 시 보호자를 내보낸다거나 아동하고만 얘기하려고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04년 10월 25일

**“경찰수사 시 장애청소년 등 피의자의 심신상태 살펴 적절히 보호조치할 의무 있다”**

진정한 김모씨가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조모 경감 등 경찰관들이 2004년 3월 21일 미성년 정신지체장애자인 조모군(당16세, 특수고교1년)의 절도혐의를 조사하면서 ▲가족의 입회 및 접견을 거부하고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장시간 수갑을 채우고 ▲구타하는 등 부당한 수사를 했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조모 경감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신체의 자유 및 아동으로서 보호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강동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게 주의 및 경고 조치하고 ▲소속직원들에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당시 피해자는 정신지체 2급 장애로 특수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장애 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소년법 제9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1조, 범죄수사규칙 제197조 등에 따라 청소년 피의자의 성격, 경력, 가정상황, 심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면밀히 파악해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하고, 아울러 신속히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고지해 가족 및 후견인 등의 접견 및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담: 철거할 테니 나가라고 위협합니다.

용산구 제4구역 재개발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산 지가 10년이 되어 갑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5만원을 내고 살아왔는데, 최근 재개발 때문에 이주해야 할 처지입니다.

며칠 전 몸에 문신을 한 사람 여럿이 찾아와 집을 비우라고 협박했습니다. 오랫동안 터 잡고 살아온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위협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진정하고 싶습니다.

주거대책비 850만원으로는 어디 가서 방 한 칸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입주권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이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웃들은 대부분 이사했고 이제 몇 집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퇴거절차 완료 후에만 철거 가능”

우리 위원회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를 조사대상으로 합니다. 인권위는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문제를 직접 조사할 수는 없지만 철거민들의 이주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가이드라인을 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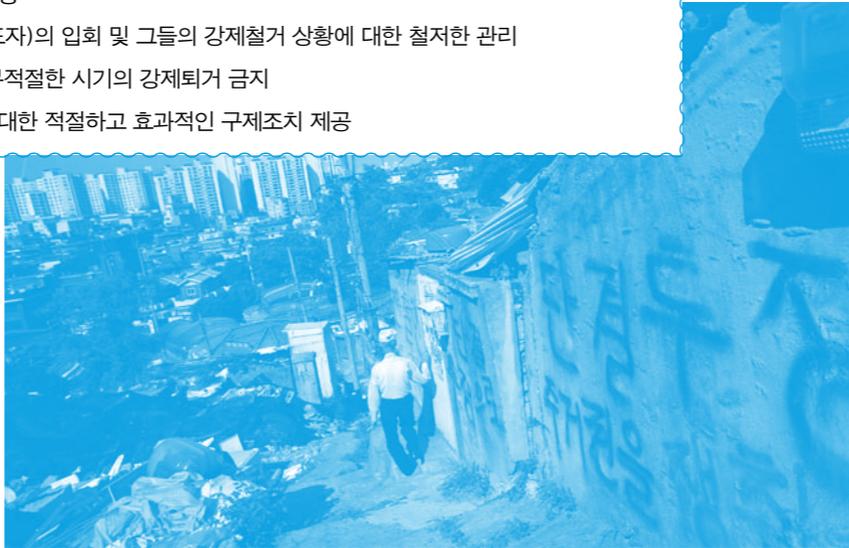
보도자료 2009년 3월 12일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 철저히 보호돼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철거에서 거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철거 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에게 ▲이러한 기본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강제철거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강제철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범위 내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을 참고해 부득이한 경우에 강제철거가 시행되더라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퇴거 절차 완료 이후에만 강제철거가 가능하다는 원칙 확립
- 퇴거를 당하는 이들에 대한 충분한 협상기회와 적절한 보상 제공 및 퇴거 예정 시기에 대한 적절한 사전고지 시행
- 공무원(또는 그 대표자)의 입회 및 그들의 강제철거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
- 겨울철과 야간 등 부적절한 시기의 강제퇴거 금지
-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조치 제공



{ 에세이 }



밥 같은 법은 없을까?

정미현 인권상담센터 전문상담원

밀도 끝도 없이 욱부터 해대는 만취한 내담자와 한바탕 흥역을 치렀다. 부릉대는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데 전화기가 또 울려댄다. “여보세요. 혹시 거기가 어디예요?” 전화해놓고 어디냐고 묻다니.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50대 중후반 아저씨가 말문을 연다. 보증금 300만원에 구청 소유 건물에 사는 영세상인들이 이번 겨울 대거 쫓겨날 판이란다. 잘 곳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해야 하는 채소가게 부부, 집 나간 며느리를 대신해 갓난아이를 보며 채소를 팔고 있는 할아버지, 장애인 남편과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수선 일을 해야 하는 눈이 어두운 할머니, 그들이 이번 겨울 모두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한다. 구청에서 복지관을 짓겠다고 올 12월까지 나가라고 한 것이다. 선거 때마다 복지관 짓는다고 하도 공약을 해대서 그때마다 가슴을 졸이며 지냈는데 이렇게 빨리 쫓겨나갈지는 몰랐다고 한다.

가슴이 답답해 온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달리 방법이 없네요.” 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다. 그걸 몰라 전화했을 리는 없다. 법으로는 안 될 것도,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권리’ 를 보호해준다 하니 전화하셨을 것이다. 고심 끝에 민간단체에 딱한 사정을 알려 도움을 청해보자는 말로 상담을 마무리했다.

상담을 받다보면 법이 무엇일까를 새삼 고민하게 된다. 국회의원이 만들고, 재판관이 해석하고, 구청직원이 집행하는 그런 무미건조하고 균형적인 것 말고, 따뜻하고 불균형적인 것, 그래서 사람 목소리를 듣는 그런 밥 같은 법을 만들 수 없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혹자들은 인권위가 약자의 편만 든다고 비판한다. 난 그때마다 항변하고 싶어진다. “당신은 손가락이 수저의 정중앙에 있지 않다고 해서 배고픈 사람에게 수저를 못 들게 할 것인가?”

### 상담: 휴식도 없고 일요일도 없어요.

보일러 A/S 접수를 받는 D지역 24시간 고객센터에서 일하고 있고, 이 회사의 아웃소싱 업체 소속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하는데, 말 그대로 숨 돌릴 틈도 없습니다. 이걸 너무 심하다 싶어 근로기준법을 봤더니 4시간 일할 때마다 30분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휴식시간이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점심시간이 1시간이니까 다 보장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점심시간은 20분이고 저녁의 경우 식대라고 5000원 주고서 밥 먹을 시간은 따로 주지 않습니다. 일요일에도 8시30분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도 없이 일합니다. 회사 사장에게 건의도 해봤지만, “그만두라”라는 타박과 함께 인격적 모독만 돌아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대우도 참기 힘듭니다. 저희는 하루 교육받고 일에 투입되는데, 그러다보니 당연히 모르는 게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걸 팀장 등 젊은 관리자들에게 물어보면 나이 든 센터직원들한테 면박을 주거나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아웃소싱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노조도 없고, 이 문제를 어디에 하소연할라치면 직장에 다닐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직종에 소문이 퍼져 다른 곳에서도 일할 수 없습니다. 대개 30~40대 여성들이라 여기서 나가면 취직할 곳도 마땅치 않으니 대항해서 싸우기도 힘듭니다. 고소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알려지면 직장만 잃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인권위가 10~40대 비정규직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개정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주길 부탁드립니다.

### 답변: 근로기준법 위반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권리로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여성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신분이 밝혀져 해고 등 또 다른 피해를 보실까 걱정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사안을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시면 정책과제로 검토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실질적 구제를 원하신다면 노동부에 직접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 2008년 4월 30일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 근로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점차 확대 적용하도록 하되, 특히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모범적인 기준이 아니라)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현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조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 1일 8시간 근로원칙을 비롯해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 수년간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했음에도 빈곤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근로빈곤층에 해당하는 이들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야말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크다 할 수 있음에도 현실은 오히려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같은 근로빈곤층의 열악한 현실의 개선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고 보고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즉 법적 보호의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차별적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노동보호를 통한 복지의 실현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상담: 근로기준법의 기본적 절차도 지키지 않습니다.

저는 H공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학교 측의 일방적인 시간배정으로 학부와 대학원에서 강의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신학기에 수업이 배정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사전 통지도 없었습니다. 시간강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제도개선을 위해 인권위에 진정했으면 합니다.

### 답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듯합니다.

시간강사의 처우에 관한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관행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듯합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제정될 때부터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법조항을 임의로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피해 내용을 인권위에 진정하시면 향후 정책검토 과제로 활용하겠습니다. 시간강사의 불평등한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2004년 6월 16일

#### “대학 시간강사의 차별적 지위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에 있어서의 차별적 지위를 개선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 검토결과 ▲대학 시간강사 제도는 본래 특수하고 한정된 범위에서 타고 교수나 기타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지만 ▲전임교수를 채용해야 하는 경우에만 확대 적용되어 현재 대학 강의의 상당부분을 시간강사가 담당하고 있고 ▲박사인력 배출이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을 증가하면서 ▲시간강사직은 전임교원이 되기 전의 수련과정이나 하나의 직업군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강사들은 ▲대학 내에서는 지위에 관한 법률적 근거 없이 일용잡급직으로 분류되고 ▲고용상 명시적인 계약도 체결하지 않아 전임교원에 비하여 법적 지위가 미비하며 ▲사회보험 같은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보수에 있어서도 전임강사의 1/5 이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시간당 평균 강사료 25,140원의 기준에 따라 시간강사가 1주일에 9시간을 강의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평균 강사료는 약 90만 5천원이고, 이를 다시 강사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방학기간까지 합해 1년 월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6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시간강사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로서 ▲이는 결과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저하시켜 실질적인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 상담: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끊었습니다.

저는 시각장애 4급이고, 차상위계층으로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3개월 분 전기요금을 미납했더니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를 끊겠다고 통지했습니다. 급기야 오늘 제가 집에 있는데도 우편함에 단전하겠다는 통지를 붙인 후 전기를 끊었습니다. 단전 고지 당시에는 형광등 등 최소한의 전기는 쓸 수 있게 해 준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단전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어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한전에 연락해 급히 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답변: 단전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공단, 공사 등에 의한 인권 침해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직접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단전·단수되는 빈곤가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주무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정책의 시행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약간 형편이 나은 사람들로 정상적 생활은 하나 희귀난치성 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보도자료 2007년 12월 3일

#### “빈곤가구 전기·수돗물 끊지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단전·단수되는 빈곤가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복지부장관, 산자부장관, 환경부장관, 건교부장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정책의 시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단전 또는 단수되는 가구는 매년 약 10만 가구가 넘고, 심지어는 장애인·여중생 등 우리 사회 주요 취약계층이 단전조치에서 기인한 촛불화재로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인권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거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와 수돗물은 일상생활에 필수적 재화인데 그 공급이 중단된다면 일상의 어려움은 물론 최소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가구에겐 생존마저 위협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못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이 없는 차상위계층 등 다수의 빈곤가구는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전기와 수돗물이 끊기더라도 아무런 제도적 지원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빈곤가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요금체납에 따라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에너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국가로 하여금 모든 국민에 대해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하도록 책무를 부여한 입법 취지에도 반할 수 있으며, 관련 국제규약에도 부합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상담: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해도 밀어냈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고, 27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 부근 인도에서 K 지방경찰청 ○○○ 기동대 소속 전경들이 노동자들을 체포 연행하는 것에 항의했습니다.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고 변호인 접견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으나, 현장 책임자는 변호사 접견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도 기동대를 동원해 저를 밀어내고 노동자 8명을 체포 연행했습니다.

저는 변호인의 접견권이 침해됐음을 재차 고지하고 전경버스 앞을 혼자서 가로막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현장책임자는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다며 전경대를 동원해 내담자를 체포 연행했고, 지금 저는 S경찰서 수사지능1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권위 진정 및 긴급구제를 요청합니다.

**답변: 긴급구제 여부, 신속히 판단하겠습니다.**

현장 상황이 다급해 보입니다. 진정 내용을 신속히 보고해 긴급구제 여부에 대해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인정돼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

**보도자료** 2009년 7월 30일

**쌍용자동차 농성장에 식수 및 의약품 반입 등 긴급구제조치 권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7월 30일 경기경찰청장에게 (주)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이 신청한 농성중인 평택 (주)쌍용자동차 공장내에 ① 식수(소화전 포함) 공급, ② 의료진 출입, ③ 농성중인 노동조합원 중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도록 경기경찰청장에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이 임무카드를 통하여 경찰지휘부에서 물·식량 등 임의반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하였고, 현장조사 결과 경찰이 “물·식량 등 임의반입 차단”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경찰의 식수(소화전 포함) 및 의약품 등 반입 차단 조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소화전의 경우 인화물질이 다수 쌓여 있는 농성현장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불의의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물공급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009년 8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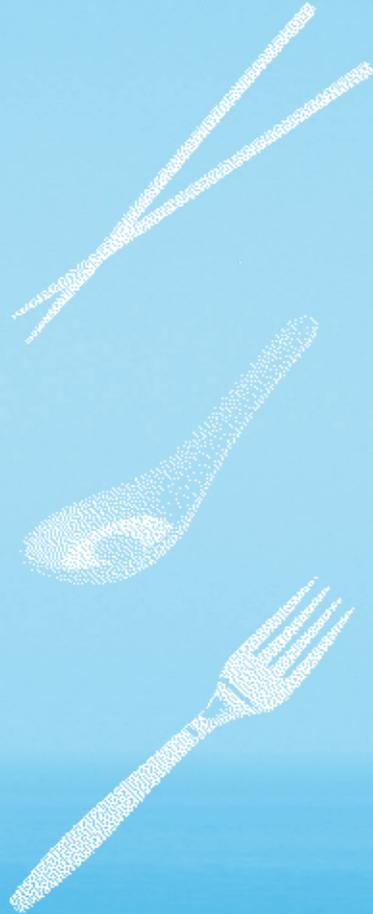
**생명체 안전 보장되지 않은 쌍용차 농성장 강제진압 자제 긴급구제조치 권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8월 5일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주)쌍용자동차 농성자 강제진압에 대한 긴급구제요청과 관련 농성노동자 뿐만 아니라 진압경찰 등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강제진압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제진압으로 인해 실제 수십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경찰의 강제진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사용중인 장비(살수차, 헬기를 이용한 최루액의 공중살포, 지게차, 전기총 및 전자총격기 등)와 노조 측이 강제진압에 저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화염병, 새총, 사제대포 등)는 인체와 사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장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강제진압의 최후거점인 도장2공장 내에는 다량의 인화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전기 및 소화전의 차단으로 화재와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어 다수의 신체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우려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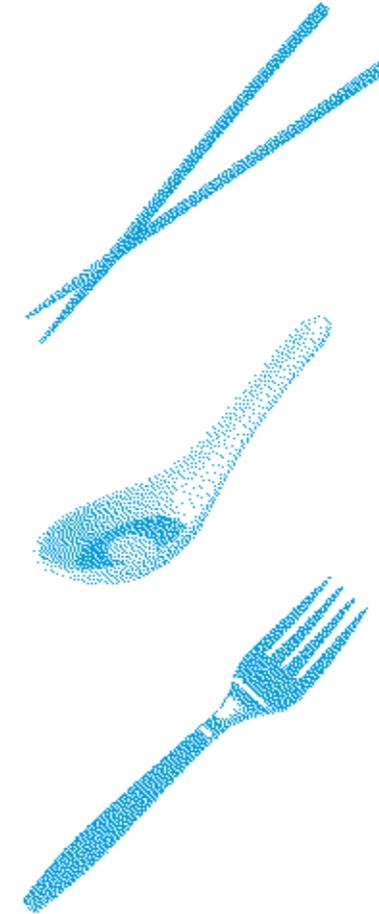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긴급구제진정이 위원회법 제30조의 조사대상에 해당하고, 법 제48조에서 규정한 긴급구제요건(인권침해가 계속 중에 있다는 개연성,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9



강제 단속 · 단속 중 상해 · 고용허가제 · 작업장 인권침해  
체불 임금 · 산재 처리 · 배우자 폭력 · 다문화 가정 · 강제 퇴거  
외국인 보호시설 · 외국인 장애등록 신청

## 길을 잃은 코리안드림



“말기 암에 걸렸다고 (죽기) 하루 전에 통보받은 것 같네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했어요. 18년 동안 긴 꿈을 꾸다 깨어난 것 같습니다.” 18년간 한국에서 살다가 네팔로 추방당한 이주노동자 미누의 말

**상담: 출입국 직원에게 막무가내로 단속 당했습니다.**

2008년 8월 어느 날 밤 9시30분경 동료 2명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신발을 신은 채 방으로 들어와 이불 위로 다니더니 우리 세 사람에게 아무 설명 없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유를 묻자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자 수갑을 풀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 ○○○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사과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외국인인 줄 알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소속도 밝히지 않고 연행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갑을 채워 연행하려고 한 것은 적법절차 위반으로 생각되므로 위의 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랍니다.

**답변: 형사절차에 준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 단속과정에 대해 진정하세요**

인권위는 2005년 법무부장관에게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단속 시 형사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권고한 이후, 단속반원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 부상자 방치 행위 등에 대해 수회에 걸쳐 관련기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단속과 연행 등에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경우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데도 주먹으로 가격하고 체포했습니다.

2008년 6월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2008년 8월까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 중 ○○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체포되어 2008년 8월 ○○출입국사무소로 압송됐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여권을 요구하여 보여주었는데도 체포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아르바이트한 적은 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현장을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체포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체포를 거부하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주먹으로 눈을 가격하고 강제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렌즈를 착용하는데 현재 눈이 부어서 매우 불편합니다. 납득할 만한 체포 이유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폭력을 사용하여 체포하고 구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루빨리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권위에서 도와주십시오.

내담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인으로 영어로 상담을 진행함.

**보도자료** 2009년 11월 11일

**미등록외국인근로자 단속과정 인권침해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2009년 7월 10일 원곡동(경기 안산시 소재)에 거주하는 미등록외국인근로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과잉진압, 주거무단진입,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자의 단속 참여 등에 대해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장에게 ▲단속에 참여한 출입국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에게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근 주민 등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참고인 등이 제출한 사진 등을 종합할 때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들이 주거에 무단 진입한 점 ▲단속반원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를 집행하면서 긴급보호 취지 고지를 강제력 행사가 개시되기 직전이나 직후가 아닌, 단속차량 탑승 후에 한 점 ▲신분증 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운전원이 단속에 참여한 점 ▲윗옷이 벗겨지고 반바지만 입은 상태로 공공대로변에서 수갑을 채워 호송한 점 ▲수갑으로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게 한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헌법 제17조 사생활 보호 침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주거무단진입 등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습니다.

### 상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밀어서 창문에서 떨어졌어요.

2008년 7월 국내 한 공장에서 미등록 신분으로 일하던 도중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반원들이 공장에 들이닥쳤습니다. 마구잡이로 단속하길래 창가 쪽으로 달아났는데, 저를 추격하던 직원이 손으로 밀어서 창밖으로 추락했습니다.

왼쪽 팔과 머리에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됐습니다. 근무 현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과잉 단속으로 부상당했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인권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내담자는 나이지리아인으로 영어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답변: 과잉단속에 대해서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보세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과잉단속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경우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은 인권위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다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 · CBS 2008.11.18

#### 대법원, 단속 피해 도주중 다친 외국인 노동자 '산재'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다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국인 노동자 장슈아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외 전자업체에서 근무하던 장씨는 지난 2006년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오자 사측의 지시에 따라 2층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장씨는 도주 도중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반신불수가 됐고 이에따라 장씨 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신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면서 "장씨의 피신 행위는 작업 도중 이루어진 것이란 사실을 감안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나리 기자



**상담: 사용자의 실수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출신의 P씨는 고용허가제로 2006년 11월경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전 회사와의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진정인의 회사에 2008년 7월 입사했습니다. 전 직장 퇴사 후 이주노동자가 구직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2008년 6월부터 2008년 8월까지였으며 P씨는 우리 회사에 2008년 7월경 입사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유효기간 내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했으나, 진정인의 실수로 그 기간을 조금 지나 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에 갔습니다. 노동부에서는 P씨를 불법체류자로 분류하여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 측 담당자(진정인)가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고, 회사 측 실수로 말미암아 신고기간을 어긴 것입니다. P씨는 제 실수로 이주노동자의 신분이 합법에서 불법으로 변경되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도 노동자의 신분을 불법으로 규정한 노동부를 조사해 주길 바랍니다.

**답변: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문제이시군요.**

인권위는 2007년 1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사업장 변경기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무총리 및 노동부장관에게 정책 권고했으며, 2008년 9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한 탓에 미등록외국인근로자 신분이 된 P씨의 문제에 대해 인권위 차원에서 권리구제가 가능할지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07년 1월 22일

**“고용허가제도 운영체계 방안”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11월 30일 ‘고용허가제도 운영체계 개선방안’(이하 개선안) 내용 중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산업연수생제도의 연수추천단체를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으로 선정할 것과 관련하여 위 사안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국무총리와 노동부장관에게 고용허가제 운영체계 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는 고용허가제도 도입취지상 외국인노동자의 국내도입 창구(송출국가 관련업무 일체)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고, 사용자 위임에 의한 다른 대행기관의 현지 면접·선발 대행업무 또한 불허할 것과, 향후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행기관의 업무내용 선정 시 위탁이 가능한 범위를 그 성격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선정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대행기관의 선정, 평가 및 제재, 재선정 기준 수립 시 기존 대행 업무의 운영실적 등을 이에 포함시켜 부실운영 기관을 배제하는 등 선정기준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고 ▲외국인력 도입신청 업무를 사업주 단계에서 일괄 대행할 경우 노동부에서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철저한 사후감독을 통해 국내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라는 고용허가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 취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선정과는 다른 별도의 기준으로 취업교육기관의 선정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취업교육기관을 감시·감독하는 관리기관이 필요하고 ▲관리기관이 취업교육기관으로 동시에 지정받지 않도록 제한하고, 교육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교육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현행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교육기관 명칭을 명시시키지 아니하고, 정부(노동부)가 취업교육 사업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만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은 정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원활한 한국생활 적응 및 인권보호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통역지원기관의 설립과, 외국인노동자의 애로나 각종 사고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의 확대 운영이 필요합니다.



{ 에세이 }

**바다가 육지라면**

박상욱 인권상담센터 전문상담원

한국말이 어눌한 외국인 한 분이 상담을 하셨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바닷가에서 배를 타며 일을 했습니다. 바닷바람과 짙물, 더가운 태양으로 온몸에 갈색 반점이 생기고 가려움 증세가 심각합니다. 의사는 “더 이상 지금 같은 작업환경에서 방치될 경우 병이 악화돼 치료가 불가하다” 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내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 상태를 보여주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바지를 추켜올렸습니다. 검게 그을린 팔과 다리를 보니 표면상으로도 피부반점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가 괴롭고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국인은 병원 치료를 받은 뒤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진단서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노동청에 직종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했기 때문에 직장변경은 가능하되 직종변경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비자만기가 2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계속 바닷가에서 일한다면 그는 치료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고용허가제의 직종변경 불가 원칙이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종변경 요구 불허의 부당성 및 병력에 의한 차별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다급한 처지에 몰린 그는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닷가가 아닌 곳에서 일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한국인이란면 누구나 누리는 평범한 권리입니다.

**상담: 작업장 내 폭행으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주노동자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한국인 동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가서 폭행 사실 확인서를 갖고 고용지원센터에 찾아갔습니다. 사업장을 변경하려는데 고용지원센터 상담원이 폭행 사실만으로는 사업장을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세요**

사업주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주의 폭행, 상습적인 폭언 등은 사업장 변경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동료에 의한 폭행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동료의 폭행을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 사업장 이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변경 요청에 대한 판단은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십시오.

언론보도 · 연합뉴스 2009.12.6

**이주민들 '희망발언대'서 맺힌 말 쏟아내**

"일할 때는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월급 명세도 자세히 알고 싶어요(이상 이주노동자). 잘한 일을 하면 동포라고 부르고, 잘못했을 때는 조선족으로 부릅니다. 중국 동포로 불러주세요(중국 동포).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다름을 인정해 주세요(이주 아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인권단체연석회의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이주민 희망발언대'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중국 동포, 이주아동, 난민, 이주여성 등 이주민들은 그 동안 마음 속에 담아놓기만 했던 말을 작성하고 쏟아냈다.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 노동자 디랑커(27) 씨는 "가난한 나라에서 왔고 한국말도 서툴지만 우리는 사람인 만큼 사람으로 배려해주길 바란다"면서 "월급에는 기본급이 얼마인지, 잔업이나 연장 근로 수당이 얼마인지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장님들이 우리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일하다 다치면 산재 혜택도 받지 못한다"며 "일하고 있을 때는 제발 나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중국 동포 김용철(50) 씨는 "뉴스를 보면 잘한 일에는 동포라고 하고, 잘못된 것을 보도할 때는 조선족이라고 한다"며 "한국에서 일하며 시간당 4천원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임금 체불도 많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앞으로 중국 동포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를 만들어 요구를 전달하고, 사회에 참여할 것"이라며 "중국 동포의 자유왕래가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인 결혼이주 여성인 단기옥(32) 씨는 한국에 온 지 8년이 됐다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 "'네 나라에 이런 것 없지' 또는 '네 나라에서 이런 것 안 먹어봤지' 같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불쾌해서 살기 싫어진다."면서 "한국은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온라인 쇼핑도 할 수 없고 은행 통장도 만들 수 없는 이상한 나라다"고 털어놓았다.

한국에 온 지 10년 된 몽골인 소녀 온드라는 "7살 때 한국에 온 직후 거의 갇혀 살았다"면서 "초등학교 때 친구들로부터 들은 '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이 큰 상처가 됐다. 지금은 몽골어를

거의 잊어버려 고교를 졸업한 다음 몽골로 돌아가면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온드라 양은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고 싶다"면서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고, 다름을 인정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주민이 연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내야 한다는 뜻에서 가칭 '100만 이주민 희망연대'를 발족하기로 하고 그 준비 차원에서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고 외노협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은 앞으로 상호 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해 '희망연대 포럼'을 꾸린 후 이를 바탕으로 내년 2월 중 '100만 이주민 희망연대'를 공식 발족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발언에 앞서 최의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들이 직접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한국이 새로운 사회, 인간다운 사회,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변하길 기대한다"며 "이들의 외침을 경청하는 것이 한국 사회를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연대사에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것은 이주민에게, 동포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이들을 형제자매처럼 대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인간으로 대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다"고 힘줘 말했다. 양태삼 기자



**상담: 밀린 임금에 대해 노동청에서도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노동자입니다. ○○에 있는 양어장에서 2년 정도 일했는데 4개월치 임금만 받고, 20개월간의 임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양어장 주인(고용주)은 밀린 임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지만 한 달째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불 임금을 조속히 돌려받고 싶은데 현 상황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답변: 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세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에 따라 사용자는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출국만기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판단은 고용지원센터에서 합니다. 만약 고용지원센터에 이미 신고했으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법률 정보의 부족 등으로 고용지원센터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지역 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센터 진정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 관련 위원회 합의종결**

**회사 내 외국인에 대한 욕설 및 차별 관련**

**진정요지**

진정인은 모 지역 소재 공장에서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일하는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이유 없이 '돼지'라고 부르고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고 점심시간에도 30분을 더 일한 진정인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합의내용**

- 가. 피진정인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진정인에게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1일 1시간)을 지급하기로 한다.
- 나. 진정인은 위 가.항의 이행을 조건으로 진정을 취하한다.



상담: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치료비까지 월급에서 제외했습니다.

2004년 12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전력에 3년간 근무 후 2007년 12월 출국하였습니다. 3년간 근무한 퇴직금을 2년치만 받고 1년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2007년 7월경 회사에서 철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2007년 7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병원비를 회사에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4개월간 근무한 봉급에서 병원비를 가불 형식으로 제외하고 지급하였습니다.

8월 372,010원, 9월 200,000원, 10월 200,000원, 11월 500,000원 총 1,272,010원을 봉급에서 병원비로 지출했다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십시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하여 근로계약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임금이나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는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십시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에 따라 사용자는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 권리구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역 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남편이 여권 등 개인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저는 캄보디아 출신으로 2007년 9월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2007년 10월 입국하였습니다. 2008년 3월 잠깐 외출했는데, 남편은 가출한 것으로 여기고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습니다. 옆집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경찰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가출 이유를 물어봐서 남편의 폭행 때문이라고 말하자, 이주여성인권센터에 데려다주었습니다.

저는 결혼생활을 계속하려고 남편에게 연락하였으나 남편은 캄보디아로 돌아가라고 할 뿐입니다. 남편은 여권 등 제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고 결혼비용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 시에는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남편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사인으로 볼 수 있으며, 사인의 인권침해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 남편의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제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의 경우 「국적법」에 의해 간이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해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문의해 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참고**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배우자 폭력 및 강제퇴거 요구 유사 상담사례 】

한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이방인 취급을 당합니다

결혼 이주여성으로 결혼 9년 차이며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의 한국인 남편은 결혼 초부터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제가 필리핀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내담자는 국적을 취득했다가 상실하여 현재 회복신청 중입니다. 아이들은 생김새 때문에 한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녀까지 폭행하여 굿네이버스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아이들과 쉼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할 경우, 주위사람들이 여성을 피해자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도자료 2005년 6월 8일

“이혼소송중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 조치한 것은 인권침해”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소송 진행중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강제 출국조치된 것은 부당하다”며 임은종(56·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이사장)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피해자 김모(44·여·한국계중국인)씨를 대신해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의 입국규제를 해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국적법 제6조에는 간이귀화 요건으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의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2004년 4월 1일부터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별거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국적 취득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4월 22일 김모씨의 소송 결과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판결이 선고된 만큼, 2004년 4월 13일 강제 출국당하지 않았다면 국적법 규정에 따른 귀화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김모씨가 이혼소송중에 체류자격연장 및 불법체류 해소를 위해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문제를 강제출국의 방식으로 조치한 것은 과도한 법집행이며, 법무부가 이혼판결로 피해자가 국적법에 의한 귀화신청대상자에 해당함에도 3년간 입국규제를 하여 귀화신청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피해자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담: 이주여성 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담자는 중국 국적의 한족으로 2002년 혼인 입국하여 2008년 3월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지역의 이주여성센터에서 2년 전부터 통역봉사와 중국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여성들의 경우 자녀의 언어교육이 어렵고, 위탁할 곳이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이주여성들은 한국 남편과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부인을 남편이 때리는 등 가정폭력이 빈번하고, 이혼소송 때는 동네주민들이 남편의 폭력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거나, 증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의 편을 드는 일도 있습니다.

이주여성 가정폭력 쉼터가 있으나 후원과 지원이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주여성 정착을 위하여 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바랍니다.

답변: 이주여성 인권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을 넘었습니다. 그중 결혼이주민이 16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법에 의해 이주여성쉼터나 다문화지원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여러 부처에서 이주여성의 정착을 위하여 문화적, 교육적,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이주여성 인권보호와 차별개선을 위한 정책검토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8년 11월 ‘다문화사회에서의 이주민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국제회의를 통해 ‘서울가이드라인’을 채택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목적),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참고

{ 다문화 가정 여성 유사 상담사례 }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1995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결혼 후 2000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주여성센터에서 3년째 봉사하고 있습니다. 2003년 냉장고를 사려고 했습니다. 영업점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음에도 외국인 이름이라며 할부 구매를 거절했습니다. ○○은행은 2007년 재직 증명서와 급여증명서를 제시했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카드 발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주여성은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한국인과 한국기업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위해 올바른 양성평등교육이 필요합니다.

○○시 이주민지원센터 사무국장입니다. ○○○부 정책연구소에서 공무원으로 위탁사업체에 이민자 설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문 내용이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가학적 성행위를 하는지와 집에 몇 번 돈을 보내는지 등을 묻고 있습니다. 20여 장 분량의 설문인데, 남편이 기분 나쁘다며 찢어버린 일도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배우자에게 양성평등과 인권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남성 우월적 교육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에세이 }

어느 베트남 여성이 수술을 받기까지

최희자 인권상담센터 전문상담원

“제가 다니는 교회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있는데 사정이 너무 딱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소리의 느낌이 어딘가 모르게 따뜻했다. 이웃을 생각하는 고마운 마음을 떠올리며 상담에 입했다.  
 베트남 여성은 5년 전 지체장애 3급인 한국 남성과 결혼해 다섯 살 된 자녀가 있으며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면서 살아왔다고 했다. 얼마 전엔 난소에 혹이 발견돼 빨리 수술하지 않을 경우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혹이 터지면 그만이지 무슨 수술을 하느냐?” 고 했단다. 그리고 수술하더라도 수술 서약서에 절대 서명하지 않겠다고 으박질렸다고 했다. 물론 병원 측은 가족의 서명 없이 수술에 들어갈 수 없다고 통보했다.  
 결국 문제는 수술비와 가족의 서명이다.  
 가족폭력으로 집을 나온 여성이라면 수술비와 서명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하지만 이 여성의 경우 형식상 남편이 있기에 문제가 간단치 않다.  
 우선 가족 서명 문제를 고민했다. 외국인의 경우 친정 식구가 외국에 있다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과 시집 식구들이 서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한다면,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 위원회 진정 절차를 안내했다.  
 다음은 수술비였다. 외국인노동자의 경우엔 무료로 수술해주는 병원이 여럿 있다. 이 여성은 가족이 있기에 우선대상이 되기 힘들다. 고심 끝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문의하니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사회복지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상담을 마치고 며칠 지나 내담자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우여곡절 끝에 수술을 받게 됐다는 얘기에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  
 외국에서 시집과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이주여성, 병에 걸렸는데도 남편과 시집식구들에게 외면당하는 피해여성의 심정은 어떨까? 같은 여성으로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상담이었다. 그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한다.

### 상담: 국적심사를 한다고 불러놓고 강제 구금했습니다.

아들은 중국 국적자로 귀화를 신청해놓은 상태이며 탈북자들 사이에 발생한 싸움을 말리다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받고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제 아들이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했는데,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은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강제 추방하겠다고 아들들을 강제 구금했습니다.

아들의 전과는 싸움을 말리다 생긴 것입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억울하지만 탈북자 간에 발생한 일이라 항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현재 고령으로 아들이 지금 추방되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국적심사를 하겠다고 불러놓고선 고령의 노모가 보는 앞에서 강제 추방하겠다고 아들을 구금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였습니다.

### 답변: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아님에도 구금한 것에 대해 위원회 판단을 받아보세요.

귀화심사 중인 아들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요건)의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화에는 간이귀화 외에 특별귀화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의 대상자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수감명령을 받은 것이 강제퇴거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노모 앞에서 협박성 발언을 하고, 부당하게 아들을 구금한 경우는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합니다. 진정하여 인권위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제6조(간이귀화 요건), 제7조(특별귀화 요건) 참고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60조(이의신청) 참고



{ 에세이 }

### 모두에게 외롭지 않은 대한민국을 꿈꾸며

김소연 인권상담센터 전문상담원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의 목소리. 자신은 임신 5개월의 몸이고, 남편은 이집트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인데, 간밤에 일하러 나갔다가 단속되어 외국인보호소에 있다고 한다. 여성은 남편이 강제출국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곧 아이가 태어날 텐데, 남편 없이 어떻게 하느냐고, 남편은 한국을 무척 좋아하고, 아이도 한국에서 자라기를 바라고 있으니 제발 쫓겨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나도 그 여성만큼이나 다급해서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했다. 안타깝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내려진 강제출국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일단 처분에 따라 출국한 뒤 한국인의 배우자 신분으로 법무부에 입국 신청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답변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얘기를 어떻게 전해야 하나.

여성이 반갑게 전화를 받는다. 곧이어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린다. 출국하면 확실히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거냐고, 외국인보호소에서 떨고 있을 남편이 걱정된다며 또 운다.

나는 그 여성에게 입국할 수 있다는 확답을 줄 수가 없었다. 다만 입국이 거부될 경우 행복추구권 침해로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안타까운 사정을 들어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도 그 여성은 “희망이 조금만 있어도 괜찮다”며 용기를 얻은 듯 남편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다.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람들. 그들은 이미 한국 사회의 일원이다.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비극이 끝났으면 한다. 그들에게도 외롭지 않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 상담: 보호소에서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의 차이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차별입니다.

외국에서 어렵게 찾아온 가족에게 10분이라는 짧은 접견시간을 주는 것은 문제입니다. 외국인 수용자는 가족들로부터 영치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출역 노임의 일부라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수용자의 나라별 음식을 고려하여 빵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 수용자에게는 빵을 줄 것을 바랍니다.

재판과정에서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 답변: 외국인보호시설의 차별적 관행에 대해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호소하신 내용은 보호시설의 외국인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외국인보호규칙」에 의해 호소하신 내용의 대부분이 이미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에서 인권침해 혹은 차별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에 대해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보호시설 외국인의 처우개선에 대해 권고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보호규칙 제16조(음식물 등 급여), 제33조(일반면회), 제36조(전화와 전보) 참고

### 강제구금 사유조차 설명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강제 구금된 후 수차례에 걸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구금사유를 해명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무시당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통역 서비스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역시 무시당했습니다. 강제구금 사유도 설명해주지 않으니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내담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인으로 영어로 상담을 진행함.

### 몽골에서 가족이 면회를 왔는데 10분은 너무 짧아요.

몽골에서 가족들이 면회를 왔으나 일괄적으로 10분만 면회를 허용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멀리서 오면 30분 이상 주는 일도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가족이 아프거나 사망)이 발생하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가족과의 전화도 안 됩니다. 3개월에 1번 정도씩 규칙적으로 전화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안부만 물어도 3분은 소요되니 통화 시간이 길었으면 싶습니다. 수용시설이 2인 1실인데, 한국인실과 달리 화장실 칸막이가 없어 사생활침해가 심합니다. 또한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들과 한방에 배치되면 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보도자료 2008년 3월 4일

#### 법무부에 보호 및 교정시설 내 외국인 처우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6월부터 11월까지 30여명의 외부 전문가와 10개의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보호절차 및 보호시설 내 처우 개선과 외국인 수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도소 내 처우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방문조사를 통하여 발견된 구체적 문제점은 '보호'에 적합지 않다는 것과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는 점입니다. 교도소 방문조사와 관련해서는, 수용자를 접견하는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사용 능력에 상관없이 자국어로 면회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수용자의 경우에는 전화통화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부교통 수단임에도 현재는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명절이나 연말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이들에 대한 전화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 수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교도소 생활안내와 고충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식생활의 특성을 고려한 식단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 ▲수용자의 출신국가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된 도서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 등도 권고하였습니다.

상담: 8개월 된 딸과 1년이나 떨어져 있을 순 없어요.

부인은 조선족으로 2006년 10월 밀입국하여 2007년 9월부터 본인과 사실혼 관계로 있었습니다. 2008년 4월 딸이 출생하여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자 자진 출국하면 3개월 후 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2008년 9월 자진출국했고 3개월이 지났으므로 입국하려고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1년 동안 입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3개월이 지나면 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법무부가 허락해야 한다고 답변합니다. 8개월 된 딸이 있는데 1년 동안이나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답변: 행복추구권 등의 침해로 진정 후 판단을 받아보세요.

입국비자 발급 여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유의 업무영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별거로 인한 행복추구권 침해를 요지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03년에 인권위는 유사사안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규제를 해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강제퇴거 위기의 자의 비자를 결혼비자로 전환해줄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90.7.10.적용) 제23조 제1항: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자료 2003년 10월 22일

인권위 권고 수용해 중국동포 입국규제 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3년 9월 8일 중국동포 오모씨(여·21)의 입국규제를 해제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9. 19 보도자료 참조)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10월 20일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오모씨의 입국규제를 해제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중국동포 오모씨는 한국인 김모씨(남·31)와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뒤 서울출입국관리소 측이 과거 불법체류 사실을 이유로 오모씨에게 입국규제 조치를 취하자, 남편 김모씨가 2003년 4월 "사실혼 및 법률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입국규제 조치는 부당하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상담: 국적 취득신청 중인데,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중국동포로 방문 취업비자(체류자격 H-2)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고 장애 등급도 받았습니다. 현재 국적 취득  
신청 중인데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외국인 장애인등록에 대한 인권위 권고가  
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외  
국인의 장애인등록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에게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 제도  
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보도자료 2008년 9월 17일

**“국내거주 외국인도 장애인등록 신청 허용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시책의 적용대상을 개별 사업마다 달리 정하고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  
나라는 장애인등록제도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및 급여적 성격의 수급권 적격자를 1  
차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등록조차 불허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초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조차 이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를 가진 외국인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와 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 이용의  
기초 자격증명 요건인 장애인등록 신청은 국적과 관계없이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헌법」이나 각종 장애인 관련 국제 기준, 그리고 최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대해 국  
내 거주 외국인들도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제도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권씨 | 다문화사회의 이방인들

# “한국, 단일민족 환상 깨라” 이주노동자 50만 시대, 여전한 인종차별 실태

토끼몰이 기습단속, 미란다원칙 무시, CC-TV감시 ... 한국 인권대사 국제사회에서 얼굴 못들 정도  
결혼이주여성 매매혼 · 폭력 등 인권 사각지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서 27가지 권고 받아

육성철 |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팀 사무관

## 이주노동자인권, 80년대보다 나아진 것 없어

2008년 11월 12일,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아시아 지역 인권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였다. 이들은 사흘간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를 마치고 역사적인 '서울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다문화 정책에 관한 국제적 협력 지침을 공식 성명서로 발표한 것이다.

성명서의 핵심은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철저히 예방하고 인권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이었다.

바로 그날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

도 남양주시 마석기구공단에 출입국사무소 직원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 200여명이 들이닥쳤다. 기습적인 대규모 집중단속으로 부상자가 속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인권의 조사 결과 단속반원들은 사업주의 사전 동의를 받고 단속하게 돼 있는 규정을 무시했다.

이성 기사사 문을 부순 뒤 잠자던 여성 외국인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연행 도중 고통을 호소한 사람들의 호소를 묵살하는가 하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한 사람들에게 화장실이 아닌 옥외에서 용변을 보게 했다.

이 날의 풍경이 나라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국내 이주인권 단체들의 비판을 시작으로 국제인권기구들은 한국정부의 대응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

응을 내놓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자, 국제교역량 규모 세계 10위권을 오르내리는 '경제대국'의 모습으로 믿겨지지 않는다는 촌평도 뒤따랐다.

이처럼 이주민 인권문제는 국내적 현실과 국제적 기준의 편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안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해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해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을 특별 면담한 자리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초대 대한민국 인권대사를 지낸 이화여대 박경서 석좌교수는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한국 정부의 무심한 태도를 비판했다.

1980년대 이래로 이주노동자 인권문제는 한국사회의 상처이자 그늘이었다. 한국인들이 취업을 꺼리기 시작한 3D업종에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원동력이었다. 그럼에도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의 반의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만성적인 직업병과 산업재해에 내몰렸다. 이러한 병폐는 이주노동자가 50만 명에 육박한 현 시점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 이주노동자 보호시설, 이동의 자유도 없어 교도소 수준

한국 정부는 고심 끝에 2002년 7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산업연수생제도가 온전히 남아 있었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당초 제3세계와의 기술 협력을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편법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런 이유로 인권위가 국무총리에 단계적 폐지를 권고하자, 경제단체들은 인력난을 이유로 강력 반발했다.

여전히 산업화 시대였다면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 위에서 배타적으로 이윤을 독점할 수 있다는 생각이 통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글로벌 스탠더드는 한국의 예외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세상 물질 모르고 봉니를

부리다간 국제적 미아가 될 수도 있다. 산업연수생 제도가 사라지고 고용허가제가 시행 5주년을 맞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에도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고용허가제 자체의 결함이 큰 데다 일선 노동현장으로 갈수록 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반인권적 관행이 여전한 탓이다. 2007년 2월 11일 발생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은 우리 사회의 인권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날의 참사로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주노동자 보호실은 교도소와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담혀 있었다. 말 그대로 단기간 보호해야 할 보호실에 임금 체불로 1년 3개월씩 머문 사람도 있었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가두어 둔 곳에서 불이 났고, 안전대책이 소홀하다 보니 대형 참사로 이어진 셈이었다.

인권위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설의 이주노동자들은 기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손을 철창 밖으로 내밀어야만 물을 마실 수 있고, 보호실 내에서도 자유로운 이동이 어렵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보호실에서 온종일 TV를 보는 게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심지어 면회 시 자국어가 아닌 한국어 사용을 강제하거나 보호실 내부의 은밀한 장소를 들여다보는 CCTV가 설치된 곳까지 있었다. 참고로 영국의 보호시설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일과시간 내에는 보호시설 밖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운동장, 컴퓨터실, 도서실 출입에 제한이 거의 없다. 똑같은 OECD 국가지만 우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주노동자 중에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특히 사각지대다. 이들은 고용주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작업 도중 중상을 입더라도 산재보험 처리를 받기 어렵다. 2005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타이 여성 이주노동자 8명이 노말해산에 중독돼 다발성 신경장애로 허반신이 마비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업체가 이를 은폐한 채 환자들을 소홀하게 대처하다 파문이 확산되기도 했

다.

마석공단 사건처럼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의 인권침해는 있을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연례행사다. 인권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단속반원들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기 않고 강제 연행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이른바 '미란다 원칙'도 거의 무시했다. 심지어 사업주의 동의도 없이 사업장에서 연행을 시도하다가 사업주가 중상을 입는 사건까지 있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절차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주노동자의 신분이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그건 그저 행정적 구분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국 땅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만 되면 불법 딱지를 붙여 토끼사냥에 나서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은 요원할 뿐이다. 우리 사회의 필요에 의해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에게 어떤 기억을 남기느냐 하는 문제는, 정부가 그토록 열망하는 '국가브랜드 제고 전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혈통주의 이중차별, 혼혈인 50%가 자살충동 경험

'다문화 없는 다문화 사회'. 이주민 인권에 민감한 사람들은 오늘의 한국사회를 이렇게 부른다. 정부 부처가 앞을 다투어 다문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민의 권리는 부차적 개념으로 둘러지기 쉽다. 각종 실태조사와 인터뷰에서 이주민들이 소외와 차별의 고통을 털어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권위가 2003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자녀의 28.7%는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절반 이상은 "차별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선생님이 한국 학생과 다르게 대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16.7%에 달했다. 또한 이주노동자 부모 3명 중 2명은 '아이가 아플 경우 병원 방문이 어렵다'며 그 사유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불법체류 신분을 꼽았다.

이주민이 한국인과 구분되는 지점은 곳곳에 널려 있다. 이주민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업재활훈련을 신청할 때도 제외돼 왔고, 인터넷상에서도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해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두 사건 모두 인권위 권고를 통해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으나, 이주민들의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부지기수다.

특히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나라 출신의 이주민들이 더 높은 장벽을 만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 만연한 인종 차별의 세태를 엿볼 수 있다.

2007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한 뒤 27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이 "다민족 국가임을 인정하고 단일민족국가 이미지를 극복하라"는 대목이었다.

우리 사회는 정치, 교육, 정보, 문화 등 다방면에서 순수 혈통을 강조해온 것이 사실이다. 흑인에 대한 정서적 편견은 구한말의 개화파에까지 맥이 닿아 있으며, 중국 화교에게 직업까지 세세히 제한하는 차별은 최근까지도 공공연하게 이어져 왔다.

인권위 출범 초기 인종차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 사건이 있었다. 바로 '살색' 크레파스를 둘러싼 피부색 차별 문제였다. '살색'은 인종에 따라 다양한 빛깔을 띤다. 그럼에도 우리는 황인종의 피부 색깔에 '살색'이란 명칭을 부여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특정 색을 '살색'으로 명명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자 기술표준원은 KS 표준(관용색)에서 살색을 없애고 살색의 계통색 명칭인 연주황(軟朱黃)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와 중학생들이 "어려운 한자인 연주황을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나긴 논의는 결국 기술표준원이 2005년 5월 KS 표준 관용색을 전면 개편해 '살구색'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일단락됐다.

피부색 차별의 희생자로 내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혼혈인이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혈통주의와 맞물려 이중차별에 시달려 왔다. 인권위가 2003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혼혈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차별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한다. 교육, 고용, 혼인 등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놀림과 따돌림의 대상이 됐다.

혼혈인 가구의 월평균 수입이 101만원에 이르고 평균 빚이 4천만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면접대상자의 절반 이상(57.8%)이 자살충동을 경험했다는 대목에서 혼혈인들이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결혼중개업관리법」, '매매혼' 국제결혼 폐해극복 기대

유엔은 2002년 기준으로 1억 8500만 명의 인구가 자신이 태어난 국가를 떠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7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단기체류를 포함해 국내 주민등록인구의 2%를 차지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결혼이민자의 증가 추세도 가파르다.

2002년 3만4,710명에서 2007년 10만4,749명으로 5년 사이 3배가 늘었다. 2006년엔 한국에서 혼인하는 사람의 13%가 국제결혼이었다. 국제결혼의 형태는 한국 남성과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결합이 대부분인데, 농촌지역의 경우 세 쌍 중 한 쌍 꼴로 비중을 크다.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중개브로커를 통한 매매혼의 양상을 띠는 상황에서 이주여성들의 인권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평균 나이 차이가 열 살 이상 나다 보니 한국인 남편들은 외국인 아내가 자신을 떠날지 모른다는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식 가족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불평등한 부부관계를 강요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A씨가 대표적인 경우다. A씨는 베트남에서 19년을 살다가 국제결혼 브로커를 통해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40세의 한국 남성과 결혼해 시부모를 모셨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와 남편의 폭행이 시작됐고, 아이를 낳은 뒤에는 시부모가 이혼을 강요하고 있다. A씨도 폭행이 두려워 이혼하고 싶지만 베트남에서



2007년 체류 외국인은 국내 주민등록인구의 2%를 차지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도 100만 명을 넘어 이제 한국도 혈통주의에서 벗어나 다문화사회임을 인정할 때가 되었다. 사진은 2007년에 열린 '다문화 축제'에 참가한 이주민들.

지고 온 빛과 막 태어난 아이 때문에 고통을 감수하며 살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은 '홀로서기' 지원이다. 남편의 도움 없이도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개인적 고통을 사회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마을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주민을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

정부가 앞장서서 다문화 시대를 강조하는 요즘, 안타깝게도 이주민들이 부대끼는 현실은 더욱 딱딱해지는 느낌이다. 인권위의 거듭된 권고와 요청에도 서둘러 이주노동자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모습이 국제사회의 눈총을 비껴갈 수는 없다.

내국인이면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도 외국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공공비용과 행정관리가 부담스럽다는 정부의 변명을 국제사회가 이해해줄 리도 만무하다.

정치적 박해 등을 피해 세계를 떠돌다 한국으로 찾아 들어온 난민은 또 어떤가. 한국은 난민 인정에 까다롭기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천신만고 끝에 난민 지위를 얻더라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법무**

# 10

생년월일 식기 년 월 일생 (관 세)

정년 · 직급 · 채용 · 대입전형 · 금융기관 신용대출 · 전문직 자격 차별

## 나이로 줄 세우는 사회

생년월일 식기 년 월 일생 (관 세)

“하루아침에 무 자르듯이 내치는 모습을 보고 배신감이 들더군요.  
그것도 나이가 유일한 기준이라니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퇴사조치의 부당성을 인권위에 진정한 정모 씨의 말. 인권위는 해당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상담: 공무원 시험에서 소방직과 경찰직은 여전히 나이 차별을 하고 있어요.

35세로 소방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무원의 나이 제한은 없어졌는데, 유독 소방직과 경찰직 등 아직도 특수직 공무원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소방직은 만 30세로 응시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직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만 50세를 넘긴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의 체력이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답변: 수행능력이나 신체활동성과 나이의 상관관계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체활동성과 나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의학적, 사회학적 검토 없이 30세 이상을 응시자격에서 제한하고 있다면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차별금지법」 제4조의5 ‘차별금지의 예외 조항’에 해당될 경우는 차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령차별금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보도자료** 2009년 5월 12일  
**“경찰·소방 공무원 채용 시 나이제한은 차별”**  
 “경찰청이 순경, 경찰간부후보생 등 경찰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차별”이라며 어모씨(남·31) 등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과 소방방재청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이 순경으로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강인한 체력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현행 공개경쟁 채용시험 체제에서 순경 업무에 필요한 능력과 체력을 개인별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순경 공개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면 신체활동성과 나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학적, 사회학적 검토를 통해 응시상한 연령을 설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선발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 사무직과 기능직 정년이 다릅니다.

L협회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사무직은 58세, 기능직은 5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은 협회에서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데, 제가 보기에 사무직과 정년을 달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인권위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요? 인권위에 진정했다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직급별 정년 차별도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것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업무특성, 수행능력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없는데, 나이라는 형식적 기준만을 가지고 기능직과 사무직의 정년을 달리하고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연령차별금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셔서 차별 여부를 판단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이것 또한 위원회에 진정해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09년 6월 2일

“직급에 따라 정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

“한국과학기술원은 직원의 정년을 교원의 경우 65세, 직원의 경우 책임급은 61세, 선임급·원급·전임조교 및 기능원은 58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급·직종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며 김모씨(남·49)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에게 관련 인사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이 직원의 정년을 직급별로 달리 정한 주된 사유는 공무원이나 타 기관 등에서 직종 및 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등적으로 정한 사회 일반적 경향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업무적합성 및 직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현재 기술원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우선 참고했을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의 정년 규정이 직급별 구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미 개정되었거나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직급·직종별 정년에 차등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능력과 업적이 우수한 책임급 직원은 고연령에서도 업무활용도가 높다”는 주장은 선임급 이하 직원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결국 피진정인이 선임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책임급보다 낮은 연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상담: 도우미는 만 30세가 되면 퇴사해야 해요!

무기근로자로 전환된 비정규직 도우미입니다. 도우미는 관련 규정상 만 30세 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도우미가 8명이었는데, 나이를 이유로 3명이 퇴사했고 현재 5명이 남아있습니다. 도우미가 모자라니까 도우미 제복을 착용하지 않은 다른 정규직 남녀직원들이 도우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의 나이가 정해진 것은 1993년 엑스포 도우미부터이며 30세가 넘으면 해고되었습니다. 다만 엑스포 도우미들이 고소하여 회사 측에서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간 분위기로 다른 도우미들은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인 것 같은데 내담자는 나이 때문에 이미 6월 30일까지 퇴사 권고를 받은 경우라 위로금도 지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답변: 현재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연령차별금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유사한 사건이 이미 진정 접수되어 인권위가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 { 고용 상태에서의 차별 - 사기업 나이 차별 유사 상담사례 }

#### 정년을 제한하는 내규도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인가요?

2005년 1월부터 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로부터 1948년생 이상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내규상 정년은 57세이고, 이사장의 재량으로 그 이상의 연령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948년생 이상을 해고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년을 60세로 제한하고, 그 이상은 재계약하지 않는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보도자료 2009년 10월 29일

#### “도우미 정년도 다른 특수직 정년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A공원이 다른 특수직의 정년을 57세로 하면서 도우미의 정년만 30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며, 이 때문에 잔여 정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 위로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며 진정인 J(여·30)씨 등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을 이유로 한 정년 차별이므로 도우미의 정년을 다른 특수직 직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도우미의 업무인 전시관 안내와 매표 등의 업무를 남성 또는 30세 이상의 여성이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A공원은 도우미들의 퇴직 이후 성별 및 연령에 상관없이 정규 직원들을 순환시키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어 도우미 업무와 성별 및 나이와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A공원은 2009년 10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도우미의 정년을 다른 특수직 정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였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상담: 인턴 채용 시 왜 나이제한을 두는 건가요?

근래 행정인턴을 채용하겠다는 뉴스 보도를 보셨나요? 지자체 공공기관이 인턴을 뽑을 때 나이를 제한하는 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채용에서도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있는데, 인턴을 채용하면서 왜 나이제한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권위에서 '행정인턴 채용 시 나이제한은 차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인턴 채용 시 나이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특성별·유형별 실업해소 정책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나이를 제한해야 할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국가는 고용평등 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그 어느 사용자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관련 부처의 권고 이행 여부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 에세이 }

**보이지 않는 차별의 저울 '나이'**

박상욱 인권상담센터 전문상담원

---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올해 9급 공무원 공채에서 50세 이상 합격자가 3명이나 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올해부터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이 폐지되면서 늦깎이 수험생의 응시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공무원 응시관련 나이차별 개선을 권고했고 적지 않은 기관에서 위원회 권고를 적극 수용해 법령을 바꾸고 관행을 시정했습니다.

---

2009년 3월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나이차별과 관련한 상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나이는 사람을 구별 짓는 '보이지 않는' 저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

37세에 입사원서를 제출했는데 나이가 많다고 거부된 사례, 동일한 일을 하는데 55세라고 30대보다 급여가 적은 사례, 같은 회사에서 다른 직종의 정년은 60세임에도 조리사만 55세로 규정된 사례... 또 어떤 분은 부인의 증풍을 치료하느라 병원비가 절실하고 대학생 자녀가 둘이라 학비 걱정까지 태산인데, 회사에서 50대는 나이가 많으니 빨리 나가라한다며 눈앞이 깜깜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

인권위는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2010년부터 나이를 이유로 한 임금지급, 배치, 해고과정의 차별까지 조사하게 됩니다. 이번 법 적용의 확대를 계기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다 오랫동안 일터를 지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이는 나이일 뿐, 그 이상의 기준이 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담: 나이 때문에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어요.

아들이 ○○대 수시모집 특별전형에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2010년 모집전형에 나이를 제한하고 있어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 측에 나이 제한의 사유를 문의했더니 “특별전형은 삼수생이 합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2010년 모집전형에서 나이 제한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답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단지 삼수생이 합격한 경우가 없다고 해서 응시자격을 제한했다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검정고시생이라는 이유로 수시모집 지원자격을 박탈한 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나이를 이유로 한 자격박탈을 조사한 예는 없습니다. 인권위에 진정해서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 시험 응시자격 차별 유사 상담사례 }

검정고시 합격생들에게 지원 자격을 주지 않는 대학이 아직도 많습니다.

대학의 수시모집 시 검정고시 합격생들에게 지원 자격을 주지 않는 대학이 아직도 많습니다. ○○대는 삼수생도 수시 지원자격이 없습니다.



상담: 나이가 많다고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S은행에서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신용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가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나이만을 가지고 제한했다면, 진정 접수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신용 상태나 변제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했다면 인권위에 진정해 차별 여부를 판단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61세 되신 분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다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해 인권위에 진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위원회는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게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학업적령기의 재학생에게 보다 우선적인 학자금 대출 혜택이 돌아가도록 일정 연령 이하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학자금 대출이라는 특성이 있어 연령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상담: 감리원 연령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의 건축 감리 입찰 때 건축 감리원 감리단장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1세마다 0.1점씩 감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 감리 낙찰을 받는데 67세인 제가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감리원 연령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인권위원회에서 이미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인권위는 2007년 7월, 65세 이상 감리원의 감점제도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주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국토해양부 또는 국회에 법 개정 청원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보도자료 2007년 7월 12일

**“나이 기준 일률적 감점 규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선정할 때 감리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 감점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윤모씨(66·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중 감리원 연령제한 항목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의 원인이 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52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은 「주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경우 매 1세마다 0.1점씩 감점하여 만 69세 이상의 경우는 0.5점을 감점하도록 하는 연령제한 항목이 있었으며, 동 고시가 2007년 5월 10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63호로 개정될 때에도 당해 항목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나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약화는 개인차가 크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현업에 종사하기 충분한 육체적 능력을 보유한 이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단지 나이라는 형식적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감점하는 규정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009년 3월 17일

**“고용상 연령차별 피해는 인권위에 진정 접수하세요”**

- 모집·채용에서 퇴직·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
- 유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혹은 특정 연령집단)을 다른 연령의 사람(혹은 집단)에 비해 불이익하게 취급할 때 연령차별로 보며,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
- 고용상 연령차별을 당한 당사자는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인권위에 진정 제기,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접수 후 조사, 심의하여 차별행위로 인정할 경우 시정권고 및 언론공표 → 인권위는 권고 내용 노동부에 통보
-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 혹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결과적 차별(간접차별)도 차별로 인정
- 노동시장에 끼치는 충격을 고려하여 모집·채용 분야는 2009년 3월 22일부터, 그 외 임금, 임금 외 금품, 승진, 퇴직·해고 분야는 2010년 1월 1일부터 단계적 시행

안녕하세요? 인권씨 | 나이 차별과 「고용연령차별 금지법」

# ‘이태백 · 사오정 · 오류도’ 나이차별 사라진다

올 3월 시행된 「연령차별금지법」, 벌칙조항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보다 규제 강화  
모집 · 채용에서 나이제한 폐지, 2001년부터는 임금 · 승진 · 퇴직 · 해고에서도 연령차별 금지

육성철 |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팀 사무관

## 3월 시행된 연차법, 고용상 나이차별에 벌칙 조항

손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이야 나무랄 일이 아니다. 다만 매사가 그렇듯이 지나치면 부작용이 따르고, 사회 구성원이 묵인할 경우 불합리한 차별을 낳게 마련이다. 조금 어렵다고 경쟁에서 제외하거나, 몇 살 더 먹었다고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은 모두 공정한 게임이라 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3월31일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차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이로 사람을 구분 짓고 차별하는 관행에 대해 국가가 법으로 금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연차법이 나오기까지 이 사안을 다루던 법률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었다. 이름 그대로 이 법은 고령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 핵심으로, 법조문도 선언적 규정에 머물렀었다. 형식적인 고용여건 개선을 내걸었으나 실질적인 차별시정 방안은 없었다. 이리다 보니 IMF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나이를 기준으로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마땅한 해법이 되지 못했다.

올해 시행된 연차법은 모집 · 채용에서 퇴직 · 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全) 단계에 걸쳐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고용상 차별을 당한 당사자는 그 원인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가 차별로 판단할 경우 시정권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과거의 「고령자

고용촉진법」과 달리 벌칙 조항도 추가됐다.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연차법상 차별의 판단기준은 유사한 상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혹은 특정 연령집단)을 다른 연령의 사람(혹은 집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했는가다. 여기서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 혹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됐다면 그 또한 차별(간접차별)로 인정된다.

연차법은 광범위한 효과를 내기 위해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을 포괄한다. 다만 노동시장에 끼치는 충격을 고려해 모집 · 채용 분야는 곧바로 적용되고, 임금 · 임금 외 금품 · 승진 · 퇴직 · 해고 등의 분야는 2010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 연차법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모집 · 채용 공고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19년도 이후 출생자’, ‘만 30세 이하’, ‘만 25세 이상 29세 이하’, ‘2009년 졸업(예정)자’,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등의 문구를 쓰면 차별행위로 간주된다.

면접시험에서도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만일 면접관이 수험생에게 “나이가 어린데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나이가 많은데 이런 상사랑 일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면, 인권위에 제소될 가능성이 크다.

## 공무원시험 나이제한 폐지, 인권위 권고의 큰 성과

이쯤 되면 너무 심한 게 아니냐는 불멘소리도 나올 듯하다. 특히 유난히도 자율성을 강변하는 한국 기업의 속성상 ‘업무방해’라고 비판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나이차별을 제도적으로 개선한 선진국의 경우 ‘젊은 임원’, ‘생기 발랄’, ‘신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등의 수식어조차 차별로 간주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물론 연차법에도 예외는 있다. 일의 성격상 특정 연령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기준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다. 예를 들어 젊은이들의 옷을 광고하면서 젊은 사람을 모델로 쓴다면 이것은 합리적 기준이라 할 것이다. 또한 근속기간 차이를 고려한 임금이나 복리후생,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조치 등도 합리적 차등으로 인정된다.

사실 나이차별에 대해 국가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01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평등권 침해의 사유로 나이가 포함되면서 고용차별 등에 관한 진정이 꾸준히 제기됐다. 2009년 3월 현재, 인권위가 접수한 진정사건만도 426건. 이 중 고용차별이 317건(74.4%)에 이르는 것으로 미루어 나이가 고용문제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에서의 나이차별은 인권위 권고를 통해 대폭 시정된 사례로 꼽을 만하다. 인권위는 법원이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9급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 28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으며,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이 40세 이하로 제한돼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대해서도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연이은 권고는 공직사회 내에 나이 차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마침내 철용성 같았던 응시연령 제한 규정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민간기업의 직원모집 시 연령차별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2004년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등 9개 공기업이 자발적으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나이 제한을 폐지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16개 광역자치단체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사례 등 총 23건의 직권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이차별 관행이 사라지

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사건의 경우 다른 인권침해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연소자들은 “나 하나 어쩔다고 세상 달라질까?”라며 지레 포기할 수 있고, 연장자라면 “다들 참는데 뭐 그 정도쯤”으로 넘겨버릴 수 있다. 하지만 침묵이 이어지는 한 피해자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누군가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외치고 나서야 세상은 조금씩이라도 변하는 것이다. 나이차별의 부당함을 외치며 인권위로 달려온 사람들의 모습은 그래서 더욱 소중하다.

### 26세는 여성무원 못된다? 다양한 나이차별 사례들

인권위 출범 이후 첫 번째 나이차별 개선 사례의 주인공은 정진오씨다. 정씨는 2002학년도 대구가톨릭대 의예과 특별전형에 응시했는데 입학시험에서 정씨를 포함한 3명의 동점자가 발생하면서 회생양이 됐다. 학교 측이 교칙에 따라 연소자 우선으로 합격 처리하면서 세 사람 중 연장자인 정씨가 불합격한 것이다.

인권위는 정씨의 진정사건을 조사한 뒤, 대입전형에서 연소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대구가톨릭대에 “빠른 시일 내로 합격시킬 것”을 권고했다. 이후 가톨릭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정씨를 합격 처리했고, 정씨는 대학생이 됐다.

2006년엔 경상남도교육청의 중등교원 임용고사에서 동점자가 발생해 연장자가 우선 합격했는데, 이와 관련된 문모씨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개선을 권고했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동점자 발생 시 취업보호대상자, 전공과목 고득점자, 병역의무 수행자, 생년월일 순으로 합격자를 정했다. 문씨의 경우 3순위까지 점수가 같았고, 4순위에서 나이 때문에 밀렸던 것이다.

한국항공대학교가 2007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병역미필자는 만 20세 이전, 병역필자 및 병역면제는 만 24세 이전으로 제한한 사건도 연장자 차별 사례에 해당한다. 당시 한국항공대학교는 조종사 양성교육의 특수성을 근거로 연장자 선발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지만, 인

권위는 조사과정에서 재학생들이 수업을 받으면서 다양하게 진로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항공기 여성무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나이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그랬다. 비록 나이 문제를 인권위로 들고 온 뜻있는 이들의 당찬 문제제기로 공식적인 제한 규정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젊지 않으면 승무원이 되기 어렵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공식적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윤씨와 박민경씨(이상 가명)는 2005년 8월 다른 두 명의 동료와 함께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항공사가 여성무원을 모집하면서 일률적으로 나이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2006년까지 우리나라 항공사 여성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23~25세로 상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다. 대한항공의 경우 2, 3학년제 대학 졸업자는 만 23세,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만 25세까지만 지원이 가능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의 경우 2, 3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중 만 24세, 국제선의 경우는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만 24세로 지원 자격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한 항공사의 공식적 인답변은 고개를 가웃거리게 만들었다.

“여성무원의 직업 선호도가 높아 과다 지원에 따른 채용 일정 및 인력 수급계획의 차질을 방지하고, 기내 안정을 위해 엄격하고 원활한 지휘 체계를 확립하며, 승무원의 근속 연수가 짧아 고령자 입사 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어느 문구도 나이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이유를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항공사의 인사관리 고충을 심분 이해하더라도 왜 25세가 마지노선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26세가 넘으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근거 또한 없다.

인권위는 2006년 9월, 이 사건에 대해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곧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나이 제한을 폐지했다. 항공사 여성무원의 사례처럼 나이가 직업선택의 진입장벽이라는 진정은 인권위에 자주 접수된다. 사단법인 한국프로골프협회

의 경우 프로골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만 50세 미만으로 제한했는데, 인권위는 이에 대해 의로기술이 발달하면서 나이와 경기력간의 상관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이유 등을 들어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 업무능력 고려 없는, 나이 기준 구조조정 사라져야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서는 ‘이태백·사오정·오륙도’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태백’이 워킹 수위까지 치달은 청년 실업을 풍자했다면, ‘사오정’과 ‘오륙도’는 중장년층이 가지는 퇴직의 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낸다. 경쟁과 효율의 논리가 사회 곳곳을 휩쓸고 있는 세대라지만, 한창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일꾼들을 나이라는 획일적 잣대로 몰아내는 것은 되짚어 봐야 할 우울한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정기현씨는 평생 은행에서 살아왔다. 모범적인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정씨의 삶에 변고가 생긴 건 IMF 외환위기 직후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씨는 은행측이 나름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장기 근속자들을 예우할 것으로 기대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실제로 그의 근무성과표에는 동급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정씨는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정든 직장과의 이별했다. 정씨가 관리하던 지점은 경영 평가군 12곳 중에서 8등을 했지만, 유독 정씨만이 ‘역직위 전보’<sup>1)</sup> 발령을 받았다. 정씨는 물론 동료들도 놀란 인사 조치였다. 이 무렵 은행 안팎에서 나돈 소문들을 추려보면, 인사 발령의 절대적 기준은 실적이 아니라 나이였다고 한다.

자신을 알리지 않는 회사에 정나미가 떨어진 정씨는 28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났다. 하지만 실추된 명예는 꼭 회복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것이 동료직원 22명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을 낸 이유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업무 수행능력, 근무성과 등은 고려하지 않고 나이만을 기준으로 역직위 발



2006년까지 우리나라 항공사 여성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23~25세로 상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연차법의 시행으로 이와 같은 고용에 있어 나이차별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령을 낸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은행에게 향후 근로자의 나이만을 근거로 정보발령을 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나이가 구조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부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모씨를 ‘준 정년퇴직 대상자’로 분류해 원격지 대기발령을 내고 급여를 삭감한 사건도 여기에 해당한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인사배경 등을 조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쌍방향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이씨의 직위와 임금을 원상회복 조치했다.

인권위가 조사한 나이차별 사건을 분석해 보면 대개의 경우 성별·학력·외모 등 다른 유형의 차별과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다. 앞서 소개한 항공사 여성무원의 인사 연령 제한은 우리 사회 저변의 외모 차별 관행과 젊은 여성 선호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의 자동퇴사 연령을 42세로 규정한 모 컨트리클럽의 사례도 이와 유사하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골프장 경기보조원 업무의 특성과 42세 연령 사이에는 필수적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수두룩하다. 고통 속에서 말 못하는 피해자 또한 적지 않다. 시민들이 이번 연차법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다. **법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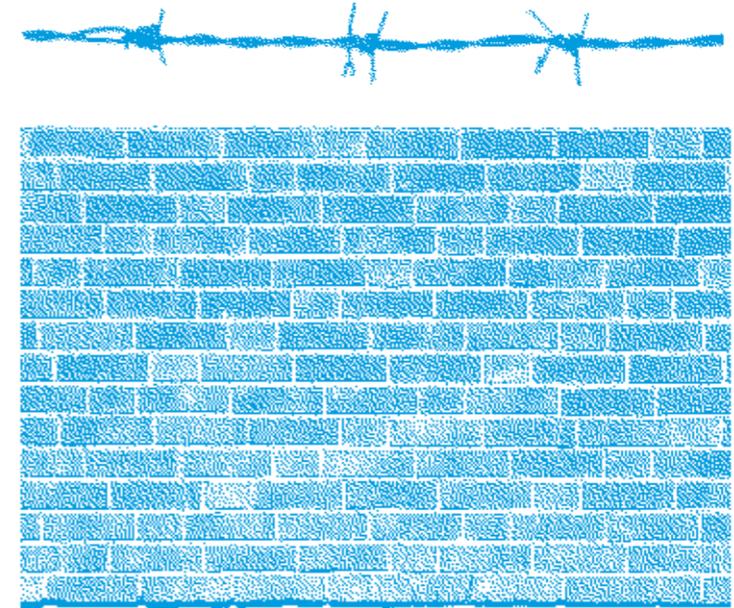
1) 나이가 들어도 성과가 좋지 않으면 직위와 임금이 거꾸로 내려가는 제도. 현장에서는 해고의 전 단계 조치.

# 11



강박 · 의료권 제한 · 외부교통권 · 진정권 방해 · 강제입원  
CCTV · 격리 · 가혹행위

## 정신병원, 문을 두드리다



“정신장애인이 ‘극소수’라는 생각은 무지의 소산이고, ‘위험하다’는 의견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회복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정신장애인 인권 문제의 세계적 권위자인 브라이언 버드킨(Brian Burdekin)의 말

상담: 8일간이나 강박당해 있었어요.

저는 얼마 전 알코올 의존증세로 대구 J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한 날로부터 8일간 침대에 끈으로 팔이 묶여 있었고, 묶인 부위가 까져서 별경게 피가 났습니다. 묶여 있을 땐 물도 잘 주지 않았고, 퇴원해 집에 있는 지금까지 그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퇴원 후 S보건소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담당자는 “알겠습니다.”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답변: 지나친 강박행위인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병원에서 8일간이나 묶여 있으셨군요.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는 한, 격리시키거나 묶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정신보건법」 제46조의 ‘환자의 격리제한’ 조항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환자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했느냐는 일단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령 강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할지라도 피가 나고 흉터가 남을 정도라면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에 진정해보세요.

( 수용시설 인권 침해 관련 유사상담 사례 )

빛자루와 발로 구타당했습니다.

H병원에 강제 입원되었습니다. 시설응급대로 호송되는 도중 직원에게 구타를 당했고, 병원 생활 내내 많은 인권침해를 겪었습니다.

우선 입원 첫날부터 독방에 5일간 구금되었고, 보호사와 의사가 빛자루와 발로 구타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방장 제도를 두고 방장이 말 안 듣는다고 지목한 환자에게는 수면제를 처방했습니다. 외부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방장이 가로챍니다.

전화도 2주에 1회 가능하고, 인권위에 진정하면 바보 만드는 약물을 먹여 5일간 꼼짝 못하게 합니다. 또 저한테만 화장실 청소를 시켜, 한번은 밤 11시까지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 정신병원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 팔을 절단할 뻔했어요.

동생이 얼마 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팔꿈치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이 보름 동안 소독만 하고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상처가 심해졌습니다. 상처가 온 팔뚝으로 번진 다음에야 의사가 와서 보고 큰 병원으로 보내 진료했는데, 잘못하면 팔을 절단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치료해서 지금은 거의 완치되었지만 이건 정신병원의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상태를 악화시킨 정신병원에서는 치료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의료조치 미흡도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상처를 입었는데 치료를 소홀히 해 팔이 절단될 위기까지 갔었다면, 병원이 정신보건법상 권익보호의 의무를 벗어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진정해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병원치료비의 경우는 일단 병원 측과 상의해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법률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상담: 병원에서 전화를 못 하게 막아요.

여자친구가 H병원에 한 달째 입원 중입니다. 통화를 하고 싶어도 가족이 아니면 전화를 바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 여자친구가 전화로 공중전화카드를 사달라고 해서 직접 H병원에 찾아갔는데, 본인을 만날 수 없어서 원무과 직원에게 전달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중전화카드를 뺏겼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와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답변: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도 전화통화까지 막아선 안 됩니다.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등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목적 범위를 벗어난 기본권 제한은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교통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해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닐지라도 구체적 상황을 알고 있다면, 제3자도 직접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제45조

-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유사 사건 위원회 합의종결

정신병원에서의 외부교통권 제한 관련

진정요지

모 정신병원에서는 수요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전화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직계가족에게만 할 수 있고, 보호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환자에게 전화를 전해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병원에서는 편지를 미리 읽어보고 난 뒤에 보내어 진정인이 문제제기를 하자 "미리 편지 내용을 얘기하면 그냥 보낼 수도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합의내용

- 가. 피진정병원의 전화사용 제한 및 편지발송에 대한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공중 전화 설치 계획, 전화사용의 일률적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취지 등을 진정인에게 설명하자 진정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편지발송과 관련, 밀봉된 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봉하여 그 내용을 읽어보는 경우가 없으며, 치료목적상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판단이 있는 경우 환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 요청하겠다고 설명하였고, 진정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 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본 진정사건에 관해서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이를 서로 이해하기로 하며, 상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본건을 합의종결 처리하는 데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상담: 병원에 진정함이 없어요.

2년 전 아들이 저를 K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제가 퇴원을 요구하자 병원에서는 저를 꾀꾀 묶고 강제로 투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권위에 진정하려 했는데, 병원에 진정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인권위에 보낼 편지를 간호사에게 주었더니, 의사가 이 편지를 열어보고 저를 퇴원시켰습니다. 진정함을 비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진정하고 싶습니다.

답변: 정신병원의 진정함 설치는 법적 의무입니다.

병원에 계신 중에 진정함이 없어 진정을 못 하셨군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정하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진정권 방해 유사 상담사례 )

인권위 조사관 돌아가면 진정함도 없애버립니다.

제가 입원한 병원에서는, 편지를 모두 검열하고, 화장실과 목욕탕에 치료 목적이라며 CCTV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인권위 진정함은 있지만 조사 나왔을 때에만 주소와 팩스 번호를 붙여놓았다가, 조사를 끝내면 다시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의료보호 1종 환자인데도 수액요금으로 3만원씩 받았고, 원장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10만원씩의 교육비를 내게 했습니다.

상담: 잠자고 있다가 강제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외삼촌이 4개월 전 새벽, 술을 먹고 잠자다가 장정 2명에게 강제로 들러 J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외삼촌은 술을 자주 마시긴 하지만 알코올 중독은 아닙니다. 숙모는 외삼촌이 정신병원에 있는 동안은 편하기 때문에 퇴원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본인 의사 확인도 없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지요?

답변: 입원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었고,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었다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입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삼촌이 입원할 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서가 있었는지, 의사의 소견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봐야 정확히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위에 진정해서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판단받아보십시오.



보도자료 2009년 9월 21일

“입원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은 감금죄 해당”

“미신고 시설인 ‘B공동체’에 거주하던 중 시설장이 A정신병원에 가면 밥과 옷을 공짜로 준다 하여 따라 갔다가 강제입원되었으며, 정신질환이 없으므로 조속한 퇴원을 원한다”며 “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북 소재 A정신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관리감독기관인 ○○군수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한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A정신병원은 ▲진정인을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B공동체’ 시설장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동의서를 작성했으며 ▲진정인이 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지 6개월째인 2009년 1월 22일 퇴원 후 재입원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정신병원장이 미신고시설의 장을 보호의무자로 한 입원동의서를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와, 입원 이후 6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입원심사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법」상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에세이 }

행복한 상상

김미숙 인권상담센터 전문상담원

상담실에 들어서는 A의 모습은 언뜻 보기에도 지친 표정이었다. 그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던 듯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밝히기를 주저했다. 그가 풀어놓은 사연은 이리했다. 이웃에 B라는 여성이 아들 하나와 살고 있었다. B는 2~3년 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납치, 감금당하는 일을 겪은 뒤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서워 외출을 꺼린다. 그래서 A가 2~3일에 한 번씩 B의 집을 방문하여 장을 봐주고 음식도 해주곤 했다.

그런데 B가 아들을 방치하고 밥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웃의 신고로 구청 직원과 아동보호센터 직원이 B의 아들을 아동보호센터로 데려갔다는 것이다. A가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보아도 A는 이들과 가족관계가 아니어서 어떤 정보도 구할 수가 없었다. 나중에는 B까지 정신병원에 입원되었다고 한다. A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B의 부당한 정신병원 입원을 요지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런 상상을 해본다. B는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치료를 통해 대인기피증을 치료받고, 지역의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B의 집을 방문하여 B와 아들의 집안일을 돕는다. 그리고 A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B와 친분을 유지하며 가족처럼 지낸다. 그 상상 속에는 엄마와 아들이 가슴 아프게 헤어지거나, 지인이 정신병원에 입원되는데도 속수무책으로 쳐다봐야만 하는 장면은 없다.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말이다.

### 상담: CCTV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경과 병동에 입원했다가 얼마 전 퇴원했는데 여러 가지 인권침해를 겪었습니다.

우선 제가 다른 방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병원의 방장이 다른 환자들을 내보내고 문을 잠근 다음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방에 CCTV가 있어 간호사가 폭행 사실을 볼 수 있었는데도 묵인했고, 그 뒤에도 전혀 제재나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뒷짐을 지거나 팔짱을 끼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환자에게 청소와 빨래 등을 시켰고, 감사가 나오면 환자 20% 정도를 외부로 빼돌렸습니다.

의사 진료는 극히 형식적이었고, 병원 보호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욕설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독방에 환자를 가두고 24시간 이상 묶어 두기도 했습니다.

입원한 지 2주 동안은 전화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진정함 위에 CCTV를 설치해놓고 누가 진정함을 이용하면 보호사가 와서 왜 썼느냐고 욕하기도 했습니다.

### 답변: 말씀하신 내용 모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침해, 진정권 방해, 인격권 침해, 노동 강요, 통신의 자유 침해 등은 모두 「정신보건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시면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병실 규모와 의사 수에 따른 적정 입원 환자 수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밀입원에 관해서도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08년 2월 21일

#### “강제 입원, CCTV 설치 등 정신병원 인권침해 여전”

“부당한 강제입원, 부당한 행동자유 제한, 과도한 CCTV 설치, 입원환자의 정원초과 등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며 최모씨(38), 김모씨(77)가 경기도 김포시 소재 A병원장 등을 상대로 한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행려자 김모씨·강모씨·유모씨를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장기간 불법적으로 감금한 사실에 대해서 「형법」 제276조를 적용하고, 위 행려자들에 대해서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및 제57조 제2호를 적용하여 A병원 전 대표 김모씨, 이모씨를 검찰총장에게 각 고발했습니다.
2. 피진정병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는 강제입원, 정신과전문의 진단 없는 강제입원, 계속입원심사 미청구 등 입·퇴원 절차 위반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했습니다.
3. 피진정병원의 「정신보건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 박모씨, 한모씨에 대해서 경고조치할 것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김포시장에게 각 권고했습니다.
4. 정신장애인의 입원 절차 및 서면통지무 위반, 계속입원심사 미청구, 부당한 격리 및 강박, 인력기준 미달 등 정신보건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과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을 피진정병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상담: 독방에서 3일간 손발이 묶인 채로 지냈어요.

저는 알코올 중독으로 J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곳에 3번째 입원했는데, 두 달 전 과장과 면담해 퇴원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3일간이나 독방에 손발이 묶인 채로 감금되었습니다. 인권위에 편지를 썼다가 직원한테 두들겨 맞은 사람도 있고, 인생을 비관해 목을 매달아 죽어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답변: 치료 목적을 벗어난 격리일 수 있겠네요.

격리 조치는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정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진정권 보장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십시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08년 2월 27일

“법 준수 없는 격리강박 개선되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소재 A, B병원, 경기도 소재 C, D병원, 충청남도 소재 E병원, 광주광역시 소재 F병원, 부산광역시 소재 G병원 등 7개 병원에 대해 강제입원,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격리 등의 인권침해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감독기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경기 소재 C병원에서 피해자는 입원일로부터 3일 동안 일반의사 S씨에 의해 부당하게 격리조치 되었습니다.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은 '환자를 격리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격리는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므로 정신과전문의에 의해서만 지시·시행되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과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에 의해 지시·시행된 격리조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C병원에 일반의사 S씨를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만일 병원 관계자가 관계법령을 준수하였다면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환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정신병원 관계자가 「정신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도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상담: 병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검사받지 않은 검사비가 청구되었어요.**

저는 알코올 중독을 치료받기 위하여 어머니와 함께 2008년 10월 H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동의서에 사인하고 나가자마자 의사의 지시 하에 남자 5인이 진료실로 들어와서 제 팔과 다리를 강제로 묶더니 독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결박하고 7일 동안 밥도 주지 않은 채 주사와 약만 투여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면회를 오셨으나 한 번도 면회를 시켜주지 않아 제가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며칠 전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제가 큰 소리로 불러서 비로소 제 상황을 알게 되셨는데, 제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통곡하며 퇴원을 요구해 11월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보니 총 진료비가 300만원이 넘었는데, 그중에는 검사비 110여 만원과 CT촬영비 27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촬영은 물론 어떠한 검사도 받은 사실이 없으니 억울할 따름입니다.

**답변: 가혹행위도 인권위에서 조사합니다.**

병원 생활 중 병원관계자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제 43조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만약 위반할 시는 동법 55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과다청구 문제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해당지역 보건소, 한국소비자원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유사 사건 위원회 합의종결**

**정신병원에서의 환자 폭행 관련**

**진정요지**

2009년 4월 진정인은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있어 ○○병원 응급실에 피해자를 입원조치 하였는데, 동 병원 직원 여러 명이 입원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갈비뼈가 골절되었다. 당시의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불허하였다.

**합의내용**

가.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는 원인과 결과를 떠나 상호 심정적으로 사과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본 진정 건과 관련하여 수반된 갈비뼈 골절 및 환자가 호소하는 가슴통증 부분에 한하여 진단서를 발급하여 제출한 경우, 병원의 과실과 발생일을 입증할 수 없는 불명확한 사고이기는 하나 환자의 쾌유와 안정을 위한 차원에서 직전 치료비, 향후 추정 치료비를 지급하되 기타 원인불명의 합병증은 제외한다.

**보도자료** 2009년 11월 4일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를 완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무총리에게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 수립·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는 국가보고서에 기초하여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높은 비자의 입원을 ▲필요 이상의 입원 기간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등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인권 현실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있어, 국가가 주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인권친화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007년 2월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약 2년간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및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관계 법령 등 6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각국의 사례 연구,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구성, 연구위원회 운영, 국제 토론회 개최 및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2009년 10월 26일 전원위원회에서 ‘국가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국가보고서’는 현행 법령과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비롯,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정신보건정책의 방향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정책방향 및 핵심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1)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 절차 마련 2) 정신보건 시설 내 권리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3)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4)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등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국가인권위원회는 관행화되어 있는 비자의 입원을 최소화하고 입·퇴원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정신보건법에 '자의입원 원칙'을 명문화하고 ▲환자에 대한 입원 요건 강화와 함께 ▲현재 6개월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계속입원심사와 관련해,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기준을 개정하는 등 입·퇴원과정에서의 적정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비자의 입원 시 가족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어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후 보호계획 수립 의무화 ▲공공이송체계 및 위기개입서비스 구축 ▲공공 후견인 제도 마련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비자의 입원 비율 86%, 6개월 이상 장기 입원 비율 53%

이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소)하는 환자들 중 14%가 자의에 의해 입원(소)하고, 나머지 86%는 보호의무자, 시·도지사 등에 의해 비자의로 입원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비자의 입원율이 3~30%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OECD 국가들은 1960년대 이후 정신병상 수를 감소시키고 지역사회 시설을 늘리는 데 주력하는 반면, 우리나라 정신과 병상 수는 1999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간 정신병상 수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아일랜드는 -1.43, 오스트리아는 -0.34, 영국은 -0.72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정신요양시설포함 +0.49를 기록하여 현저한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입원기간에 있어서도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율이 2008년 53%를 상회하고 있어 재원일수가 지나치게 장기화되어 있는데, 특히 정신요양시설에서는 평균 7년 이상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2008년 평균입원일수는 233일로 영국의 52일(1999년), 독일의 26.9일(1997년), 이탈리아13.4일(1998년)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입원 과정을 보면, 퇴원 후 보호의무자에 의해 바로 타 시설로 비자의 입원되는 환자가 4명 중 1명이었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아 퇴원했다가 재입원한 환자 중 55.9%는 하루 만에 재입원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입퇴원 과정에 있어서의 적정절차가 미흡하고 지역사회에 정착·생활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고서'에 정신장애인의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 2)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보장 및 치료 환경 개선

현재 대부분의 정신장애인은 자신의 입·퇴원이나 치료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법」내에 “정보제공”에 관한 조항 신설 ▲「정신보건법」상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강화 ▲면회·통신·방문 등 외부 소통권 제한에 대한 규정 개정 ▲격리·강박 기준 엄격화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은 치료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최적의 치료는 적절한 의료 인력과 시설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므로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 상향 조정 ▲의료급여 수가의 실질화로 치료 환경 및 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밖에, 지역사회 보호 중심의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차등수가제 평가항목에 시설기준 및 지역사회 연계율 등 포함하고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을 '지역사회 생활시설과 재활시설'로 재정립하여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복지가족부, 관할 보건소 등이 연계한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입원환자 34.7% 설명 없이 강박, 강박시간이 24시간 초과 한 경우도 6.3%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정신보건시설 입원환자 중 51.5%는 병원관계자, 가족 등으로부터 입·퇴원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입원 환자의 25%는 의료진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강박당한 경험이 있으며, 강박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6.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3)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정신장애인의 경우 퇴원 후 지역사회에 적절히 연계되지 못하면 사회에 방치되거나 재입원될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퇴원환자와 지역사회 거주 중인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연계체계의 강화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정신보건 복지에 예산의 확대 및 효율적 운영 ▲지역예산기준 고지 및 균형발전예산 지원 ▲가족 및 자조모임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정신보건서비스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4)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정신질환의 진단력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의 기회를 제한하고 ▲'정신병자', '정신이상'등과 같은 추상적 용어로 광범위한 불이익을 줄 위험성을 내포하는 차별적 법령이 다수이며 ▲실제, 보험가입 제한과 같은 차별도 존재하고 있는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들이 차별 문제를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차별로 이어지고, 이러한 차별은 다시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고서'를 통해 ▲'정신분열증' 병명 개명 ▲'정신병자', '정신이상자', '정신미약자'와 같이 편견을 조장하는 용어 정비 ▲정신장애인에 대한 각종 차별적 법령 정비 ▲대중매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정신장애 관련 인권 교육 강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차별이 심각하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호소할 정도다. 퇴원할 만한 환자도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가족들도 힘에 겨워 주저앉아 있다. 사회의 편견과 낙인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들의 버림 받은 삶과 인권침해 실태 등을 5회에 걸쳐 심층 진단한 (시리즈 4·5면)

# “그곳은 짐승 수용소였다”

## 병원 강제입원 18년...李씨의 ‘악몽같은 삶’

“강제입원 18년, 그곳은 병원이 아니라 수용소였다.”

이철호(55·가명)씨는 이 땅의 정신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인권유린 실태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치아가 빠진 잇몸, 떨리는 손, 까만 피부, 굵은 등, 어눌한 말투. 그는 14세이던 아들이 32세가 돼서야 정신병원에서 벗어났다.

◆생각지도 못했던 첫 입원=지난 6일 부산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이씨는 담배부터 꺼내 물었다. 담배를 한 손이 조금 떨렸고 입술이 다소 불면해 보였다. 약 복용 등 여러가지 후유증 때문이라고 했다. “정신장애 3급 복지카드를 최근에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한 번씩 어지럽고 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일상생활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18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을까. 군입대 직전에 만난 한 여자와의 짧은 동거와 원치 않았던 결혼생활, 임신에 따른 책임감과 이혼으로 인한 방향, 술에 의존한 생활과 가족의 불신 등이 이씨의 정신을 조금씩 깨어 먹기 시작했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가 18년 만에 풀려난 이씨가 비참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있던 요양원은 이씨가 입원한 이후 10여년이 지나서야 정신병원이 됐다. 이곳에서 17년을 단 하루의 외출도 없이 짐승처럼 갇혀 살았다.

“전화와 편지도 할 수 없어 외부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퇴원을 요구하면 누나는 의사 핑계를, 의사는 누나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던 2006년 병원의 의사가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됐냐”고 물어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며칠 뒤 퇴원결정이 떨어졌다. 그러나 퇴원 당일 129 사설응급환자수송단에 강제 태워져 다른 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른 병원에 또 입원시키려고 누나가 조지한 거죠.”

이씨의 악몽 같은 삶은 200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여러 차례 받고서야 마침표를 찍었다.

◆지옥 같았던 병원 생활=입원 중에 외출은 물론 종교의 자유도 없었다. 병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환자들을 수용해 좁은 방에서 4명이 웅크린 채 자야 했다. 군에서 막 제대한 보호사들의 구타와 부당한 대우는 견디기 힘들었다. “환자 300여명 중 1명만 잘못해도 단체기합을 받았죠. 환자를 침대에 묶어 야구방망이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주사 쇼크로 죽어 나가는 환자도 봤고요.”

비참한 기억은 이어졌다. “시장에서 팔다 버린 배추로 끓인 국은 모래가 섞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름에는 재고로 쌓인 겨울 양말을, 겨울에는 여름 양말을 헐값에 사 나눠주더군요. TV도 없어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입원했는데 나와보니 노무현 대통령이더군요.”

## 구타·단체기합 ‘생지옥’

당국의 감독은 형식적이었다. 국회의원, 구청장 등이 찾아왔지만 그저 한바퀴 둘러보고 가는 게 고작이었다. 억울함을 호소할 작은 틈조차 없었다.

◆만신창이 삶, 누가 보상하나=이씨가 강제입원 당한 지 3년 만인 1992년 부친이 세상을 떠났다. “어느 날 보호사가 부르더니 아버지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혀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이씨는 월세 17만원짜리 여관방을 얻어 막 노동하며 살고 있다. 치아가 없는 탓에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해 주로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하면 먼저 끊어버릴 정도의 관계가 돼 버렸다.

“한때는 내 인생을 망친 가족, 병원, 국가에 복수하겠다는 마음도 먹었지만 지금은 체념하고 삽니다. 소송비도 없고 재판을 한들 몇 년이 걸릴지 모를뿐더러 이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씨는 “뒤늦게 찾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하며 살립니다”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 전화·편지 등 모두 금지

첫 입원은 29세이던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머리가 아파 다섯 살 위인 누나와 함께 부산의 소규모 정신병원을 찾았죠. 주사를 맞고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침장 안이더군요. 의사가 누나에게 입원을 권유한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반 만에 퇴원한 이씨는 그때 받은 스트레스와 독한 약이 화병을 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재입원과 퇴원, 다시 강제입원=첫 입원 이후 1989년 11월 부산의 한 요양원에 강제 입원 되기까지 7년여가 이씨의 마지막 정상 생활기간이었다. 누나와 크게 다투던 이씨는 얼떨결에 흥기를 들었고 겁먹은 누나가 H요양원에 강제로 넣어버렸던 것. 원래 고아원이

# ‘잠재적 범죄자’ 선입견 엮기 사건 때마다 지목

## 뿌리깊은 편견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질러.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잔혹하거나 엮기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주위에서 흔히 듣는 말이다.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런 편견은 얼마나 근거가 있을까.

## 연쇄살인 유영철 등은 ‘정신이상’ 아닌 인격장애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로 192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람들은 방화범 김대한(2004년 사망)을 대뜸 ‘정신질환자’로 규정했다. 일부 언론도 동조했다. 하지만 그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한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을 뿐이었다. 법원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의가 밀려들자 보건복지가족부는 “뇌병변 장애는 정신

## 엮기적 사건 범인들의 정신감정 결과

- ① 혐의 사실 ② 정신감정 결과 및 재판부 판단
- 유영철**
  - ① 여성·노인 등 21명 연쇄살해(2004년)
  - ② 사물변별력·의사결정능력 충분(반사회적 인격장애)
- 김동민**
  - ① GP 총기난사로 정병 8명 살해(2005년)
  - ② 정신에 이상 없으며 치밀한 범행 준비가 인정됨
- 정남규**
  - ① 여성 13명 연쇄살해(2006년)
  - ② 사물변별력·의사결정능력 충분(반사회적 인격장애)
- 채종기**
  - ① 국보 1호 승례문 방화(2008년)
  - ② 정신에 이상 없으며 치밀한 범행 준비가 인정됨
- 정성현**
  - ① 안양 초등학교생 2명과 여성 살해(2008년)
  - ② 사물변별력·의사결정능력 충분(반사회적 인격장애)

질환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아직도 당시 방화범을 ‘정신질환자’로 기억하는 이가 많다. 올해 초 국보 1호 승례문에 불을 지른 채종기가 붙잡혔을 때 취

재진은 “정신병력이 있느냐”는 질문부터 던졌다. 경찰의 대답은 “정신 상태는 아주 바르고 양호하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계획적인 범행’이나 ‘치밀한 준비’는 정신장애와 양립하기 힘들다.

200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살인범 유영철. 그 역시 지레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훗날 법정에서 공개된 그의 정신감정 결과는 뜻밖이었다. “(유영철에게서) 정신과적 장애는 찾지 못했으며, 판결을 변경할 만한 심신상실이 나 심신미약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정신장애인 리포트 ▶ 2면에 계속

# 명에 씌우는 진단서 F코드 인권 눈감은 당국은 F학점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치료 및 재활 과정에서 부딪히는 갖가지 법과 시스템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것이다. 정신질환 증상 의 강중이나 중립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된 '차별적인 조항'이 곳곳에 널려 있는 탓이다.

### 글 쓰는 순서

- 1) 강제·자기입원-인권 사각지대
- 2) 편견·차별·가능성에 온다
- 3) 가족을 삼고도 병정 상어인 고생
- 4) 현상에 부합하지 않는 법과 시스템
- 5) 정신보건 패러다임을 바꿔라

◆장애인이 살 자리 막는 '결림틀' = 정신 장애인들은 조리사, 이발사, 미용사, 위생사, 건설장비기사, 의료 보조 인력, 모터보트 운전, 약사, 현의사 등 20개 직업 분야의 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 법에 자격 제한이 규정돼 일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영월국 변호사는 "가벼운 정신질환이면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지만 편견 때문에 자격이 제한된 조리사, 이·미용사, 위생사 등의 법정은 전문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울증, 불안증, 불안장애 등 가벼운 정신 질환도 F코드로 분류되는 탓에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게 만드는 요인이자, 평생 '나인'이 찍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환자의 동의가 없는 진료기록 유출은 불법이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계약 전에 어

### 정신장애인 직업제한 분야

대상	제한 유형
이발사·미용사·수선장비기사·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불가
운전·동력수송장치기사 조종	면허불가
수석사·연사·원사·현의사·용접기사·의료기사·외사·보조기사	면허불가
회계장 계조장사, 행정로 운전원, 선원	자격제한
변경	직권면직



정신보건법 제22조 (2)

○지난 4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공청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가 정신장애인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보험 가입·자격증 취득 제한 등 불이익 우울증 같은 가벼운 질환도 '나인' 찍혀 아예 비보험 처리 요청...정부선 뒷집만

리 권리를 통해 진료기록을 '은밀하게' 알 수 하고 있다. 이런 현실 탓에 어린 학생을 둔 부모들은 2~3배에 달하는 치료비를 감수하면 사까지 비보험 처리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학병원의 경우 통상 일주일 외래 진료비가 3만 원 정도인데도 4만 5000원 정도지만 비보험 처리하면 1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구조적 요인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관계자는 "보험사의 행태를 알고 있지만 그 받아야 진정이 없어 이제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생적 입·퇴원 시스템** 구축이 우선 = 지난 3월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남발을 막기 위해 입원 중의 가족

만 정신과 전문의는 "가족 한 명이 장애인을 돌보는 짐이 갈수록 늘어 한 명의 동의도 받기 어려운데 두 명으로 늘린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22일부터 시행되는 인신보호법의 실용성도 논란거리다. 일원한 정신장애인 대부분이 경

특목기획취재팀 = 채희정(팀장)·이상혁·김태윤·양원호·김창길 기자  
tamsa@segye.com

본지·이 기가정취재팀 공동기획

행정 정신보건법은 정신병원 입원환자 60명당 전문의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병원이 허다하다. 기존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가 나올 때만 잠시 일부 병자를 만 곳으로 빼놓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상당수 정신병원을 '남몰시루'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이해다 자살이 이뤄져도 효과적 제재가 없다. 매년 실시되는 지도점검에서 1~2개 기관이 사실 및 인력 기준 미달로 고발당하지만 대개 과징금 부과 정도로 마무리된다. 병원 폐쇄 시 입원 중인 환자들을 임시로 수용할 대체시설이 부족한 탓이다.

국립병원 전부의 A씨는 "60명당 의사 1명 초 병을 위한만 정신병원에 허가 취소나 병원 폐쇄 같은 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60명상을 지키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감독하면 치료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콩나물시루' 정신병원 정부는 단속 '걸잡기'

환자 초과해도 허가취소·폐쇄 전무

인력 기준이 안 지켜지는 원인은 또 있다. 의사 한 명이 60명 넘게 진료하는 병원에도 수가가 고스란히 지급되는 상태가 그것이다. 심지어 환자가 190명인 병원에 의사가 단 한 명뿐이더라도 190명분에 해당하는 수가가 전부 나온다. A씨는 "그러나 병원으로서의 의사들 총원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서 "치료의 질 저하와 예산 낭비의 전형적 사례"라고 도입했다.

정신질환을 '귀신이 들린 것'으로 여겨 미신적인 종교단체에 위탁하려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 미인가 종교요양원에서 벌어지는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그 단연 원인과 시인단체에 의해 여러 차례 고발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종교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부는 "전문인력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

한 해 정신장애인 치료에 쓰이는 예산 2000억 원과 의료급여를 합해 1조원을 넘는다.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서까지 '치료의 질'을 담보하기엔 부족한 금액이다. 의료급여 환자도 그 가족들은 "수가를 현실에 달라"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가 너무 많아 수가를 억제한 줄러도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정이 아니라 인권 측면은 더욱 소홀할 수밖에 없다. 휴지형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 장애인 인권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방관적이었"다며 "앞으로는 이들의 서비스 개선, 즉 인권 향상에 보다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말했다.



{ 에세이 }

##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양윤정 인권상담센터 전문상담원

내담자는 동생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그러나 내담자는 현재 동생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았다. 인권위 조사에서 위법이 드러났고, 동생은 퇴원 조치될 예정이라 했다. 내담자는 이에 대해 항의하고자 전화하였다.

내담자의 주장은 이렇했다. 양친이 돌아가신 뒤 동생을 거두는 형제는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담자가 동생을 맡게 되었다. 정신장애인이 동생과 같이 사는 것은 어려웠다. 결국 내담자는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러나 치료비도 부담이었다. 내담자는 동생을 세대에서 분리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등록시켰다. 이렇게 해서 치료비 부담 없이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다.

만일 내담자가 동생을 입원시키지 않고 그냥 방치할 경우 동생의 미래는 볼 보듯 뻔하다. 동생은 사립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거리에서 별거벗고 다니거나, 행인을 놀라게 해 경찰서에 갈 것이다. 그러면 경찰은 내담자를 비롯한 형제들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고, 결국 동생은 내담자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담자는 인권위가 이런 사정을 모르고 이치에 맞지 않는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화를 냈다.

내담자가 법을 위반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먼저 동생 스스로 치료받고 입원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신장애인은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폐쇄적인 입원제도로는 더욱 어렵다. 동생을 혼자 살게 하는 것, 그러면 동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거나 부랑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내담자가 동생을 데리고 살면서 가족들에게 희생을 계속 요구할 수도 없다.

정신질환은 치료기간이 길고 때로는 치료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가족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현실에 문제가 있다. 현재의 치료체계도 문제가 많다. 정신질환은 사회의 산물이며 정신장애인은 어느 사회에서나 일정 비율을 차지한다. 당연히 사회가 책임지는 체도가 필요한 이유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담자의 상황이 딱하지만, 인권위는 본인 의사에 반해 위법적으로 입원된 동생의 인권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적절한 체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장애인의 가족에게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설명하는 것은 참 미안한 일이다.

# 12

자격을 미부여 · 편의시설 미비 · 고용 차별 · 출입 거부 · 고용 거절  
장애인 간 차별 · 강제노동 · 괴롭힘 · 이동권 · 비하 발언 · 웹 접근권

자격을 미부여 · 편의시설 미비 · 고용 차별 · 출입 거부 · 고용 거절  
장애인 간 차별 · 강제노동 · 괴롭힘 · 이동권 · 비하 발언 · 웹 접근권

## 법보다 현실이 가까운 장애인

자격을 미부여 · 편의시설 미비 · 고용 차별 · 출입 거부 · 고용 거절  
장애인 간 차별 · 강제노동 · 괴롭힘 · 이동권 · 비하 발언 · 웹 접근권

“이 세상에 장애인은 없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없다.”

인권위가 주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기념행사 중, 서울광장 야외 게시판에서 (2008년 4월 11일)

상담: 시험 합격해도 자격증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아들은 정인지체 장애인입니다. I사에서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한다기에 장애인도 가능한지 문의해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을 240시간 받고 시험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3일만 더 수강하고 시험을 보면 되는데, 갑자기 교육원 측에서 장애가 있으면 시험을 통과해도 자격증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 실시 전에는 장애가 있어도 가능하더니 이제 와서 안 된다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답변: 자격증을 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네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자격증을 주지 않는다면 차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줄 수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정당한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보호사 업무의 특성상, 정인지체 장애인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면 차별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자세한 것은 인권위에 진정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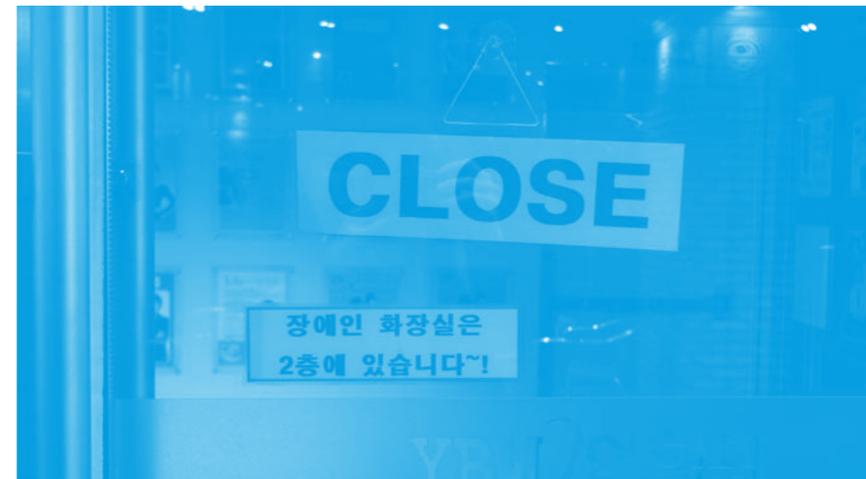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1항제1호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라 한다.

보도자료 2006년 11월 13일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응시자격제한 개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6월 20일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채용 시 색각 이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색각이상자를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에게 이러한 차별행위를 하지 말 것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색각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정직공무원 및 소년보호직공무원 채용 시 색각능력 측정 검사방법으로 가성동색표 검사방법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성동색표 검사방법은 색약과 색맹을 구분할 수 없는 등 일부 단점이 있어 이 검사만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과도한 제한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색각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은 이미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으나, 경찰청장은 권고 수용여부를 검토해오다가 지난 10월 27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개선한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상담: 장애인은 화장실 사용이 어려워요**

저는 ○○ 지하철역 장애인 시설 미비로 진정을 한 적이 있는데, 다른 곳도 문제가 있어 추가로 진정하려고 합니다. 우선 J역 장애인 화장실은 공간이 협소하고 문이 3단 여닫이 구조입니다. B역은 장애인 화장실이 아예 없고, 비장애인의 화장실의 경우 턱 높이가 12cm로 중증장애인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답변: 장애인 화장실 턱이 높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 유형,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이나 설비,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있으나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거나 턱이 높다면 정당한 편의제공이라고 보기 어렵겠지요. 인권위에 진정하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제3항**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 주차시설 만들어달라는데 전체 주민 동의를 요구합니다.**

저는 장애인인데, 얼마 전 ○○시 H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현재 장애인 주차시설이 하나도 없어, 제가 관리소장에게 주차시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소장이 그건 법적으로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면서 설치할 수 없으며, 설치를 원하거든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유사 사건 위원회 합의종결**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관련**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년 2, 3월경 용변을 보려고 모 광역시 소재 ○○극장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극장 측은 영화 관람객이 아니라는 이유로 화장실 이용을 흔쾌히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극장에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너무 좁아 화장실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돌릴 수 없어서 화장실 문을 열어놓은 채 용변을 봐야 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합의내용**

- 가. 극장의 장애인용 화장실이 협소하여 휠체어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정 사항과 관련하여, 전화조사에서 진정인은 극장의 장애인용 화장실이 관련 법령상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합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극장 측에 휠체어 사용자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극장 측은 문을 여닫는 대안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등, 당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나. 장애인의 극장 화장실 이용에 대한 허용과 관련하여, 전화조사에서 극장 측은 향후 장애인의 극장 화장실 이용을 흔쾌히 허용할 것이고 이를 위해 극장 직원들을 교육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전화조사에서 진정인도 상기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본 사건을 합의 종결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 다. 2009년 6월 ○○극장 로비에서 극장 측은 진정인을 포함한 4명의 장애인에게 지난 2, 3월경 장애인들의 화장실 이용을 흔쾌히 허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구두로 사과하였고, 극장 측과 진정인은 합의를 작성하고 그에 서명하였다.

상담: 서류전형에는 합격하는데 자꾸만 면접에서 떨어져요.

저는 방송대 교육학과 및 신학대대학원을 졸업했고, 왼쪽 눈을 실명해 시각장애인 6급입니다. 과거 교회에서 어린이를 지도한 경험이 있고, 한글과 파워포인트, 엑셀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노동부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J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 개설한 '방과후 어린이 강사 양성' 과정에 두 차례 지원했는데, 두 번 모두 서류전형에는 합격했으나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객관적 조건을 갖췄는데도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겉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한쪽 눈에 장애가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탈락 이유가 장애 때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험이나 당락은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차별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탈락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권위에 진정하셔서 차별 여부를 판단받아보세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의 3항(정당한 사유)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 유사 상담 사례 }

손가락 화상과 글 쓰는 일이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손가락 화상으로 장애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방송국 작가로 일하다가 얼마 전 홍보대행사에 취업했습니다. 면접 때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는데, 능력이 있는데 무슨 문제냐고 바로 출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나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데, 당일 밤 10시쯤 사장이 “기자들과 접촉해야 하고, 회사 이미지와 관계가 있으니 내일부터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화상과 글을 쓰는 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화상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해고시킨다면, 장애인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일하란 말입니까?

보도자료 2009년 2월 9일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 처분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뇌병변 장애 1급으로 2008년 A대학교 박사과정 입학전형에 단독으로 응시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되었다”며 이모(여, 27)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A대학교총장에게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을 제공하여 진정인이 재심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전형위원 등에게 장애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A대학교에서는 박사과정 전형기준에서 요구하는 학문수행을 위한 지적 능력 또는 자격 이외에 진정인의 신체적 장애로 인해 논문 자료를 수집할 능력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하였으며, 장애로 인해 구술이 어렵다는 이유로 문답식 면접이 아닌 석사 논문을 위주로 평가하는 등 면접시험에 있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평가방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주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박사과정 전형에서 불합격 처분하고 면접시험에서 지원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담: 장애인은 공연을 볼 수 없대요.

공연 관람을 위해 모처럼 발달장애를 가진 딸과 함께 가족들이 S문화회관을 찾았습니다. 담당자가 나와서 장애인은 관람할 수 없다며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공연 특성상 조용해야 하는데, 발달장애인은 소리를 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전날 저녁 발달장애인 자녀를 데려왔던 부부도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결국 공연을 볼 수 있었는데, 담당자는 “시끄러우면 끌어내겠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공연을 보니, 발달장애인이 보면 안 될 정도로 정숙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공연 보는 내내 맘이 불편하셨겠네요.

모처럼 만의 가족모임인데 그런 일을 당하셨으니 공연 내내 불편하셨겠네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공연을 관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에도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권위에 진정하세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을 행동을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정당한 사유 없는 제한·배제·거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담: 영화관에서 안내견을 못 들어가게 해서 영화를 못 봤어요.

저는 시각장애인으로 안내견을 동반하고 다닙니다. 지난 10월 영화관에 갔는데 안내견을 동반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안내견도 출입이 가능하다고 수차례 설명했는데, 회사 업무지침이라며 계속 막았습니다. 결국 저는 영화를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안내견 동반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시설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출입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 관리자가 출입을 방해했다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받아보세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2항**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담: 장애가 있다고 보험 가입이 안 돼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의 부모입니다. 모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만 15~70세까지 장애유형 전체에 해당하는 상해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입 후 며칠 뒤, 보험사 측에서 계약무효라면서 계약을 취소했고 보험금을 돌려줬습니다. 그 이유를 전화로 문의했더니, 이 보험 약관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15세 미만의 자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답변: 지적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했다면 차별 소지가 있네요.

장애인 전체에 해당하는 보험이라고 해놓고 왜 뒤늦게 계약을 취소했을까요? 지적장애인은 상해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보험사의 계약 취소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위에 진정하십시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도자료 2009년 8월 18일

“발달장애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장애인전용보험인 상해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우체국에서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며 김모(여·45)씨가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피진정인 우정사업본부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전체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인권교육 실시, ‘심신상실·심신박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피보험자의 판단능력에 대해 해당 전문의의 소견이나 구체적 생활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발달장애 2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 및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상해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가 검증된 통계 또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료 등 합리적인 근거,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장애상태 및 판단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특정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획일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언론보도 에이블뉴스 2009년 12월 8일

### 장애인보험차별 인권위에 집단 진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8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장애인보험차별 금지를 위한 증언대회를 가진 후, 인권위에 장애인보험차별에 대해 집단진정을 냈다. 집단진정서는 장추련이 지난 10월 12일부터 약 2개월에 걸쳐 모집한 것으로 발달장애인 20건, 지체 장애인 5건, 정신장애인 4건으로 총 29건이다.

이날 증언을 위해 참석한 정신장애인 아들을 둔 이영준(55·가명)씨는 “아들이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기존에 아들 명의로 들어놓은 중신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보험회사를 찾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해약 통보’였다”며 “보험회사 측은 정신장애가 있으면 자동으로 해약이 된다고 해약을 요구했고 그게 차별인지 생각도 못한 채 보험회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씨는 “사회 안전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장애인인데 어떻게 보험을 금지할 수 있냐”며 “상해보험이라도 들 수 있길 바라는 게 부모 심정”이라고 밝혔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문애린(30)씨는 “1년 전 암보험에 가입하려 하자 설명을 잘해주던 보험회사 직원이 장애인이라고 하자마자 ‘장애인은 들 수 없다’고 단호히 거부했다”며 “암보험이 장애와 무슨 상관이나고 따져도 회사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보험 가입 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장애인 대부분이 보험 가입 진입단계조차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보험과 관련한 차별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장추련은 “상법 제732조 내용이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진입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는 전 장애, 전 보험으로 확대되어 장애인보험차별을 조장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집단진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모든 보험으로부터의 부당한 거부를 차별로써 규정해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는 움직임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인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17조에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추련과 진정인들은 증언대회를 마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집단소송도 준비할 예정이다. 정가영 기자

## 12-7 장애인 고용 거절

상담: 위탁업체인데 Y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말래요.

저희 회사에선 직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을 더 늘릴 경우, 1명의 장애인을 더 고용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에 Y시 공원경비관리 위탁업체 모집에 응모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가 지능이 떨어지는 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그리고 장애인은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계약조건대로라면 회사 직원 중 장애인은 공원경비관리에 파견할 수 없게 되는데, 장애인을 고용한 저희 회사는 불리할뿐더러 지자체가 앞장서 장애인 차별을 부추기는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탁업체가 선정되기 전이라, 이 문제를 진정하면 혹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답변: 인권위 판단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Y시 공원경비관리 위탁계약서에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 명기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에 관해서는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담당조사관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담: 정신장애인이라고 탈락시킨 것 같아요.**

정신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임용시험이 있었고, 정신장애 3급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저도 응시했습니다. 저는 면접 전에 불합격되었는데, 혹시 정신장애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행정안전부에 정신장애인 중 뽑힌 사람이 있는지 문의하자 말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니, 지체장애인이 6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뇌병변장애인 13명, 신장장애인 13명, 시각장애인 5명, 청각장애인 5명 순이었으며, 정신장애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험을 치르면서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평등권 침해인지 살펴봐야겠는데요.**

지체장애인이거나 뇌병변 장애인은 합격률이 높는데, 정신장애인 합격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은 차별이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시험의 당락 여부는 시행처 나름의 기준과 응시자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이라 차별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정신장애인이 단 한명도 없다는 점에서 인권위에 진정해 판단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 공무원 임용 차별에 관한 유사 상담 사례 )**

**필기시험은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계속 떨어집니다.**

뇌병변 3급의 중증장애인입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준비했고, 수차의 실패 후 2007년 ○○청 정시 및 특채, 그리고 2008년 정시 1차 필기시험에 연달아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2차 면접시험에서 탈락했습니다. 탈락자 중 경증 장애인은 거의 없는 점으로 볼 때, 중증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탈락시킨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정당한 편의 제공을 못 받아서 떨어졌어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저는 최근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한 정보처리기능사 2급 실기시험을 보았습니다. 당시 두 명이 시험장에 입실해 문제를 낭독하고, 답안 표기를 보조하였는데, 문제를 낭독해주는 보조인이 알고리즘과 전산학에서 쓰는 영어를 알지 못해 문제를 정확히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문제를 풀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저말고도 여럿 있습니다. 또 저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한 공인중개사 시험도 보았는데, 마찬가지로 낭독 보조인이 법률 용어를 알지 못해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시험의 경우 시간을 1.5 배 더 주긴 했으나, 문제를 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법시험처럼 텍스트 파일로 문제를 제공받아 스크린 리더를 이용해 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지금보다 더 많은 시험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답변: 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세요.**

자격증 시험 과정에서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조사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의 차별행위를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차별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셔서 차별 여부를 판단받아보세요.

보도자료 2007년 7월 25일

“시각장애인 시험시간 실질적으로 연장해야”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사법시험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일반 수험생의 1.5배 연장해 주는데 반해, 교사임용시험에서 1.2배 정도만 연장한 것은 부당하다”며 배 모씨(시각장애1급·여·21) 등이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에게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생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시험시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손가락을 사용하여 촉독(觸讀)해야 하는 점, 일반 수험생은 시력을 사용하여 시험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점자는 이것이 불가능한 점, 도표의 경우는 점역을 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사임용시험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기존의 시험시간 연장은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위 사항들에 의할 때 교사임용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생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은 적절한 시험시간이 아니며 이는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16개 시도 교육감에게 실질적인 시험시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담: 법원에서 수화통역사를 데리고 나오래요.

청각장애인이예요. 얼마 전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4만 원을 부과받았어요, 이의신청을 했는데 S법원에서 출석통지서가 나왔어요. 과태료 담당자에게 수화통역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통역사는 동행해도 무관하지만 대동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공공기관에서 모범적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답변: 법원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과 같은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권위에 진정하셔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받아보세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제4항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유사 사건 위원회 합의종결

교육시설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관련

진정요지

진정인은 청각장애인인 피해자 2명과 함께 피진정인에게 00대학 평생교육원의 00교육에서 수화통역사가 필요하니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진정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수화통역사가 지원되는 학교로 가라면서 거부하였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시정을 요구한다.

합의내용

-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향후 아래와 같이 개선할 것을 약속한다.
  - 첫째, 2009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수화통역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 둘째, 다음 수강신청기간부터는 수화통역이 필요한 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수화통역센터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하여 수화통역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 나.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조치계획을 수용하고 진정사건을 취하하기로 한다.

상담: 지적장애인을 손바닥이 갈라져 피가 날 정도로 일을 시켰어요!

저는 장애인시설에서 생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적장애인 생활 시설로, 대부분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그런데 이곳 사무국장과 영양사가 주방에서 지적장애인들에게 심하게 일을 시킵니다. 2급 지적장애인인 41세 L씨는 손바닥이 갈라져 피가 날 정도로 주방에서 일한 적도 있습니다. L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사무국장과 영양사는 집으로 보낸다고 협박하면서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L씨뿐만 아니라 S씨도 주방에서 일을 많이 해 지금 누워 있습니다.

답변: 강제노동에 대해 진정하세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피가 날 정도로 일을 시키고 있다면 인권위원회에 진정하십시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진정도 가능합니다.

상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저를 때리고 괴롭힙니다.

척추장애 5급으로 K씨와 혼인하여 20년간 생활했고, 2007년부터는 시댁 이웃에 살기로 하고 이사했습니다.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제 머리채를 잡거나 온몸을 발로 찼습니다. 2008년 2월에도 남편이 폭행하여 지구대에 신고하자, 이웃에 거주하는 시부모가 달려와 “찢어 죽일 년”이라 욕하고 구두를 내던지고 폭행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편이 한겨울인데도 보일러를 잠그고 전화까지 빼서 부모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곧 시어머니가 달려와 저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을 새장가 보내겠다고 말하면서, 신발을 신은 채 방안에 들어와 쌀포대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맞아죽을까 두려워 도망 나와서 아는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답변: 고통이 크셨겠습니다.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장애인은 누구든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에 따르면, 괴롭힘을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위에 진정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 장애인 괴롭힘 관련 유사 상담 사례 )

물건을 뺏고 돈을 가져오라고 괴롭힙니다.

제 조카는 지적장애 3급으로 J여중 1학년에 다닙니다. 같은 반 아이들이 조카를 밀고 때릴 뿐만 아니라, 물건을 뺏고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 등 심하게 괴롭힙니다. 이 문제로 학교에 여러 차례 진정했으나, 장애인이라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조카가 친구들이랑 장난을 치자 조카만 불러내 뺨을 때리는가 하면, 조카를 괴롭히는 아이를 일부러 짝으로 앉혔습니다.

상담: 시각장애인은 지하철 타기가 너무 힘들어요.

시각장애인입니다. 지하철 탑승 시 유도 점자블럭이 전동차량 맨 처음이나 끝으로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이동이 멀고 위험합니다. 따라서 지하철 각 차량 승강구에 점자블럭을 설치해야 합니다.

탑승한 다음에도 문제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노선도가 없기 때문에, 오직 음성에만 의존해 현재 위치나 목적지를 파악하는데, 그러다보니 노선도를 외워두지 않으면 목적지를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2호선 같은 경우는 소음이 심해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지하철 점자노선도가 필요합니다.

답변: 정말 지하철 타기 어려우시겠네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에 따르면,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점자블럭 및 점자노선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에 진정하십시오. 제기하신 문제는, 차별 여부의 판단은 물론이고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정책적 검토자료가 될 것입니다.

**보도자료** 2008년 2월 10일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개선에 503억 투입”**

인천광역시와 인천지하철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 2013년까지 총 503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순차적으로 인천시내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2008년 2월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는 2007년 1월 인천광역시와 인천지하철공사에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재발방지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인천광역시와 인천지하철공사는 2007년 25억원을 배정해 엘리베이터 4대를 설치했고, 2008년에는 50억원을 투입해 엘리베이터 5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006년 4월과 2007년 8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권고를 수용해 5호선 답십리역 및 장한평역에 장애인 화장실 동선 확보를 위한 신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고, 7호선 마들역에도 별도의 신형 휠체어리프트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신형 휠체어 리프트 2대를 신설하고, 구형 휠체어리프트 95대를 신형으로 교체하겠다고 국가인권위에 통보해 왔습니다.

상담: 장애인 아이 키우는 게 무슨 죄입니까?

제 아이는 발달장애 1급으로, 언어재활클리닉과 수영장에 가기 위해 ○○번 좌석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2009년 4월 ○○번 좌석버스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J시 교통행정과 버스노선 담당 여공무원과 통화하여, 제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어서 버스 환승을 못하니 ○○번 버스를 계속 운행할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공무원 : 휠체어 탑니까?

내담자 : 발달장애는 있으나 휠체어는 타지 않습니다.

공무원 : 교통카드를 이용할 줄 모릅니까?

내담자 : 찍을 줄 모릅니다.

공무원 : 그걸 왜 못 찍습니까? 바보 병신도 아니고...

내담자 : 어째서 우리 아이가 바보 병신입니까?

공무원 : 교통카드 못 찍으니까 바보 병신 아닙니까? 집에서 안 가르칩니까?

다음 날 J시 교통행정과 K계장과 통화하니, “장애인 키우는 주제에 아주머니가 뭘데 공무원한테 소리를 지르며 따지냐?”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겠다고 하자 K계장은 욕설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1월에는 J시청 장애인복지과에 영유아 발달 언어치료를 신청했는데,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니 바우처 담

당공무원이 탈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의료비를 많이 내기 때문이라고 하여, 납득이 되질 않아 계속 따지니 “장애인 키우는 주제에 왜 자꾸 따지느냐. 장애인 키우는 부모면 그냥 기다리면 되지 왜 자꾸 따지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장애인 아이 키우는 게 무슨 죄입니까?

답변: 장애인에게 모욕을 주거나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도 인권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네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선 비하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상담치료, 법률구조 등의 구제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세요. 조사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제3항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담: 사이버대학을 다니는데, 시각장애인은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H사이버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지난 2월 학교 측에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학교 측은 최근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시각장애인 편의제공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동영상 강의 외에는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변: 학교는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이신데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다니 정말 힘드셨겠네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21조에 따르면, ‘교육책임자는 재학 중인 장애인이 교육활동을 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장애인 보조기구 등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 외에는 홈페이지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권위에 진정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08년 6월 11일

“장애인도 인터넷 예매 가능해졌다”

“성남문화재단이 장애인에 대해 인터넷 예매 수단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의 전자정보 접근 및 이용을 제한하는 차별 행위”라며 K씨(여, 30)와 S씨(남, 21)가 낸 진정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남문화재단이 장애인도 인터넷 예매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성남문화재단은 장애인에 대하여 공연 성격에 따라 50%~10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전화 또는 현장 예매만 허용하고, 장당 2,000원의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반 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 예매를 허용하고 수수료는 장당 1,000원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의 이번 조치는 올해 4월 11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와 제24조(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에 따른 장애인의 인터넷등을 통한 정보 접근권과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향후 문화예술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들도 장애인이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되길 기대합니다.

{ 에세이 }



진폐환자의 최저생계비에 관한 단상

최희자 인권상담센터 전문상담원

난 강원도 태백에 가본 적이 없다. 지난 가을 인권상담센터에서 탄광촌 지역의 진폐환자들을 찾아가 순회상담을 했을 때 처음 그곳에 가보았다.

평소 충청도 제천과 단양을 지나면서 낮은 슬레이트 지붕에 보얇게 덮여 있는 먼지를 보면서 ‘시멘트가 루 때문에 지붕을 저리 낮게 만들었나?’ 하는 의문을 품은 적이 있다. 그런데 태백의 집들은 석탄 가루 때문인지 거의 모든 지붕이 낮게 지어져 있었다.

순회상담 첫날, 태백시청에서 진폐환자들을 만났다. 대부분 60~70대인 할아버지들이었다.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데다 오랜 시간 머물 수 없는 환자들이어서 간단한 설문조사로 상담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법 개정을 통한 생계비 지원을 요구했다. 그들에게는 기십만 원만 주어져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들의 고통과 회한을 느낄 수 있었다.

둘째 날, 진폐환자들이 사는 탄광촌 사택으로 찾아갔다. 낮은 지붕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비탈진 골목길을 올라서야 했다. 좁은 방에서 만난 환자들은 삶의 끝자락에서 버겁게 버티고 있었다. 한 쪽 다리를 의족에 의지해 살고 있는 분, 3년째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배추 밭에 나가 일을 벌여야 하는 분, 날마다 자살을 생각하며 산다는 분...

첫날, 태백시청으로 찾아온 분만 만났더라면 그들이 몸으로 겪고 있는 현실을 모른 채 돌아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금 현장 상담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진폐환자들의 처우와 직결되는 「산재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인권위의 순회상담은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취지였다. 시급하게 도움을 청하는 분들에게 뚜렷이 답하지 못한 점이 내내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들이 바라보는 생계비는 그리 큰돈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한때 산업전사였던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인권씨 | 장애인 인권과 당사자주의

#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동화속 이야기

「장애인차별금지법」 1년 만에 실현성 논란, 법보다 시행의지 중요  
서울지하철 역사정비, 장애인 시전체험으로 '당사자주의' 모범...예산보다 관의 중요성 일깨워

육성철 |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팀 사무관

장애인 인권에서 중요한 것이 '당사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세다.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만든 기준이 때로 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인에게 듣기시험을 강요하거나 시각장애인에게 그림 문제를 제시한다면,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 없다. 인권위 조정을 통해 뒤늦게 장애인을 위한 시험환경에서 수능을 치른 허광훈씨 등 그간 인권위에 진정된 장애인 관련 사건들을 통해 장애인 인권을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를 생각해 보고,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길을 모색해 본다.

## 일본도 부러워하는 장차법, 그러나 시행의지가 문제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였다. 그래서 장애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회의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한국의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온 건 최근의 일이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장애인은 숨겨진 존재이거나 보호의 대상으로만 머물렀다.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는 그저 텔레비전 공익광고에나 가끔씩 등장하는 상상 속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다.

장애인 문제를 수많은 골칫거리 중 하나쯤으로 여겼던 한국 사회에서 2007년 장차법이 제정된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다. 장애인들이 거리에서 피눈물을 흘

리며 싸우지 않았던들, 이웃나라 일본조차 부러워할 만한 법령이 탄생하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법령은 하나의 출발일 뿐, 법을 이행하려는 정부 당국의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1년여의 검토를 거친 끝에 제정된 장차법 시행령은 장차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껍데기로 만들었다. 장차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장애인단체가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게 단적인 증거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차법은 장애인들의 애환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인권위 출범 이후 8년간 접수됐던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의 절반 정도가 2008년 한 해에 집중돼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또 다시 문제는 정부 당국의 태도이다.

장차법 시행에 따라 인권위 인력을 20명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다. 정부는

진정사건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인력 감축을 요구해 장애인단체의 혹독한 비판을 받기까지 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르면, 장차법의 존립 기반까지 위태로울 지경이다.

흔히 미국을 가리켜 '장애인의 천국'이라고 부른다. 물론 미국 사회도 꼼꼼히 뜯어보면 지역과 계층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대끼는 고통 수준은 우리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것은 미국의 장애인 복지가 시혜나 동정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인권 개념에서 출발한 데 기인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여전히 시혜와 지원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법률이나 예산의 범주를 넘어서는 문제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정책과 관련이 깊다.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장애'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열릴 때, 비로소 장애인 인권이 제대로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장애인이 현실에서 마주치는 차별과 편견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이 직접 호소한 문제라면, 당연히 우선 검토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 당사자의 눈으로 보라, 뇌병변 장애인 허씨·이씨의 사례

장애인 인권에서 중요한 게 당사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세다.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만든 기준이 때로 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에게 듣기시험을 강요하거나 시각장애인에게 그림 문제를 제시한다면,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뇌병변 장애인으로 대학 수험능력시험에 응시했던 허광훈씨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뇌병변 장애인은 몸의 떨림이 심하고 조금만 집중해도 피로를 느낀다. 이런 사람에게 비장애인과 똑같은 시험을 요구했다면 그 또한 합리적 경쟁으로 보기 어렵다.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시험이 끝난 뒤 보조원이 OMR 카드에 답을 옮기는데, 허씨는 이 과정도 결에서 지켜보지 못했다. 설상가상 허씨가

찾아간 시험장엔 장애인용 화장실은 물론, 특수 책상도 없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모두 차단된 상태에서 허씨는 시험을 중도 포기하고 교실에서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상당 부분 조정이 이루어져, 이듬해 허씨를 비롯한 장애인들은 특수시설이 갖춰진 교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학교 측은 손 떨림 현상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충분한 연습장을 제공했으며, OMR 카드에 답을 표시하는 과정에도 장애인 당사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이중국씨도 허씨처럼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다. 허씨보다 조금 사정이 낫다면 지인들의 도움으로 장애인 특수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 정규과정을 마쳤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회진출의 문턱은 또 한 번 그를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장애인 복지정책 업무를 해보고 싶었던 그는, 공무원 시험에도 전했으나 허망하게 낙방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용 답안지를 제공하지 않은 게 결정적 요인이었다.

비장애인의 눈으로 보면 시험문제를 풀면 그만이지 답안지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반문할 지도 모른다. 여기서도 장애인 당사자 관점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다. 같은 문제라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숙지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다르고, 답안을 옮겨 적는 방식도 다른 것이다. 더구나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장애인용 특수답안지를 공식 채택했음에도, 이를 적극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인권위가 '장애인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리면, 정부 부처나 기업에서 불쾌하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인권의 가치만 강조하다 보니 현실의 어려움을 모른다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어떤 공직자는 장애인 복지가 마치 장애인만을 위한 것으로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는 결과적으로 비장애인을 포  
함한 사회 전체를 위한 선택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잠재적 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이러한 점은  
보다 분명해진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을 당당한 사  
회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자,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만학도 장애인을 위한 한 중학교의 '아름다운 변화'

경북의 어느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다. 평생 중증  
장애를 앓아온 다 자란 청년 송인호씨가 입학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는 초비상이 됐다. 궁여지책  
으로 휠체어 경사로를 만들고 보조교사를 채용했지  
만, 학교의 대다수 교육시설은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  
게 배치돼 있었다.

경북의 꿈을 키워왔던 송씨는 실망감을 털어놓을  
곳을 찾다가 인권위에 진정했다. 놀라운 건 인권위 조  
사가 시작되면서부터다. 학교 측은 교육 당국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순차적으로 장애인 편  
의시설을 설치했다. 이제 송씨는 엘리베이터와 이동  
통로를 이용해 학교 내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이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송씨의 사례  
를 지켜보면서 학교 구성원들에게 나타난 변화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이 곧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교장 선생님의 후일담에서 생활  
속 작은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서울 지하철 역사의 변신도 눈여  
겨 볼만하다. 오랫동안 지하철 역사는 장애인들에게  
두려움의 공간이었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며  
도입한 휠체어 리프트에서 장애인들이 연이어 추락  
해 사망한 사건은 충격을 던져주었다.

도시철도공사 건축 팀에서 일하는 이용석씨는 이  
러한 문제점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고민했다. 많은 사  
람들이 예산 부족을 탓할 때 공감할 아이디어를 제시  
하며 지하철 역사의 변화를 주도했다. 이씨의 땀이 벤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화장실은 이후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모델케이스가 됐다. 시설을 만들기 전에 먼  
저 장애인들과 함께 체험해 보는 도시철도공사의 추  
진방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엔 '당사자, 수요  
자, 고객의 눈으로 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산업사회는 효율성을 강조한다. 소수의 특수성보  
다는 다수의 보편성에 치중한다. 인권문제는 바로 소  
수를 고려하지 않은 지점에서 발생한다. 장애를 특수  
한 현상으로 보는 사회일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시각장애인의 경우를 보자. 행정안전부는 현재 주  
민등록증 발급을 총괄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을 전 국  
민에게 똑같이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다. 시각장애인  
에게 필요한 점자나 음성인식 기능은 고려대상이 아  
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조차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크기의 다른  
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어느 것이 주민등록증인  
지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

2007년 말 현재 등록된 시각장애인의 수는 21만6천  
여 명. 그 중 문자를 시각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기 어  
려운 1~3급 시각장애인은 5만1,587명이다. 전체 인구  
에 비하면 절대 소수지만, 그들의 권리도 결코 무시되  
거나 외면될 수 없는 문제다. 시각장애인들도 마땅히  
주민등록증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다. 바로 인권위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  
한 이유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  
을 부여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인  
권위는 헌법재판소에 유사한 의견을 제출했다. '안마  
사'라는 직업을 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경합하는  
현실에서, 인권위와 헌법재판소는 왜 안마사에게만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일까.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빼놓을 수 없다. 비시각 장애인들  
에 비해 시각 장애인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에 있어서

보다 절실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헌법상의 실질적 평  
등권과도 일치한다.

### '정신장애인 실태조사', 정신병원 강제입원 82.5%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열악한 장애인 인권 중  
에서도 사각지대를 꼽으라면 아마도 정신장애인 인권  
일 듯하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  
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다는 점, 우리 사회가 최근  
수십 년간 사회적 치료보다는 시설 수용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는 점, 그리고 왜곡된 정보와 여론으로 인  
한 편견이 심하다는 점 등이 배경일 것이다.

인권위의 '2008 정신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는 우려  
를 넘어 공포의 수준이다. 우선 정신병원 등에 수용되  
는 과정의 문제다. 무려 82.5%가 자신의 의사가 아닌  
보호자와 시·도지사, 경찰 등 제3자에 의한 강제입원  
이라고 답했다. 선진국의 경우 강제입원은 부득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돼 대부분 10% 미만인 점과 대비  
된다.

정신보건시설 환자들의 평균 입원기간도 충격적이  
다. 인권위 조사에 포함된 시설의 경우 668일로 나타  
났는데, 이것은 영국의 10배, 독일의 25배, 이탈리아  
의 50배에 해당한다. 또한 입원환자의 25%는 의사로  
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강박을 당했다고 밝  
혔다.

정신장애인 인권에서 중요한 것이 '자기결정권' 이  
다. 한국의 현실처럼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퇴  
원이 이루어지고 그나마 명시돼 있는 규정마저 지켜  
지지 않는다면, 자기결정권 확보는 요원할 뿐이다.

선진국과 비교되는 또 하나의 쟁점이 시설 의존도  
다. 대다수 선진국에서 정신병원을 단계적으로 폐쇄  
하고 시설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시설 중심의 정책에 머물러 있  
다. 시설의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시설 집  
중은 정신장애인 인권 개선과 한참 다른 방향임에 분  
명하다.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 독점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비시각 장애인들에 비해 시각 장애인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에 있어 보다 절실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헌법상의 실질적 평등권과도 일치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30일, 현재의 합헌결정을 듣고 기뻐하는 시각장애인들.

지난해 세계적인 정신장애인 인권문제 권위자인 브  
라이언 버드킨(Brian Burdekin) 전 호주인권위원회 인  
국을 찾았다.

그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극소수'라는 생각은 무  
지의 소산이고,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다'는 의견은 오  
해에서 비롯한 것이며, '정신장애인은 회복할 수 없  
다'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정신장애인  
에 대한 편견이 합리적 인식까지 위협하는 한국적 풍  
토에서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일 듯하다.

지난 1년 사이 나라 밖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되고, 나라 안으로는 장차법의 실효성 논란이 뜨  
겁다. 한국은 현재 안팎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르게도 시선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한국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을 검토하면서 보훈과 관련  
한 조항 등을 유보했다. 또한 장차법 시행에 필요한 인  
권위 인력 증원에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인권 선진국  
을 지향하는 국가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 이  
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으  
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과 대비되는 말은 정  
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 이 맞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누구든 장애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  
다. **법무**

# 13



납북자 · 탈북자 · 거주 이전의 자유 · 귀순용사 보상

##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북한 내에서는 아직까지 기본적 권리에 대한 중대하고 광범위한 위반행위들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주민들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2009년 3월)

상담: 남북자의 생사라도 알려주세요

저는 남북자가족협의회 관계자입니다. 20여 년 전 콩치잡이 배인 금성호가 북한에 납치되어 선원으로 타고 있던 J씨도 납치되었습니다. 이후 J씨가 다시 한국으로 송환되었는데, 그 후 J씨가 행방불명이 되었고, 얼마 후 사망처리되었습니다. 통일부에 알아보니 J씨의 송환 기록까지는 있지만, 이후 기록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남북자의 송환 및 행방불명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법률, 또는 기관의 설립 등에 대해 인권위가 권고해주었으면 합니다.

답변: 입법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해보세요.

이 사건의 경우 발생한 지 1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구체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요구가 아니라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정 시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정사건이 각하되어도 정책권고가 가능하므로, 진정 외에 저희 홈페이지에 '정책제안, 위원장과의 대화'등 의견제시 코너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08년 7월 27일

“자국민 보호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

국가인권위원회는 ‘6·25 전쟁 당시 납북자 및 그 가족(이하 ‘전시납북자’)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이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국회 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미 2004년 4월 ‘납북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납북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했고, 2006년 6월과 12월에도 우리 헌법이 규정한 자국민 보호의 원칙 상 국가는 납북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지속적인 의견표명에 따라 정부는 2005년부터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국회도 2007년 4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후납북피해보상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시납북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후납북자의 경우 전후납북피해보상법이 제정·시행되고는 있으나 납북자 문제 및 그 가족의 인권침해 피해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는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어, 전시납북자 및 전후납북자 단체로부터 국가의 부작위로 인한 인권침해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담: 중국에 있는 가족과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지난 2005년 영사관을 통해 탈북하여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4~5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았는데, 얼마 전 중국에 있는 남편(중국인)과 아이를 데려오려고 하자 영사관에서 기각시켰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100만원 넘는 비용을 들여 수속을 밟았는데, 입증 불충분이라며 비자를 주지 않고, 불허 사유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선양영사에게도 기각사유를 물었지만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걸 알아야 그 점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것 아닙니까?

신문고에 민원을 내고 외교통상부도 방문했으며, 탄원서 내라고 해서 탄원서도 썼습니다. 제가 비자가 없는 상태라 직접 중국에 갈 수도 없고, 언제까지 가족이 생이별해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답변: 행복추구권 침해로 진정해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선양대한민국영사에 의해 가족 입국이 불허되었다면, 저희 위원회의 조사대상입니다. 일단 기각 사유를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정보공개청구나 통일부 민원실 등을 이용하시거나, 저희 위원회를 방문하셔서 더 자세히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도 가능합니다.

상담: 탈북자는 중국 방문이 안 돼요

과거에 탈북자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경기도 안성이었습니다. 안성의 하나원에서 탈북자들을 교육시키고 주민등록을 발급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탈북자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친척 등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려 할 때, 주소지가 안성이면 중국 측에서 본적지 확인을 하고, 본적이 북한인 경우 중국 입국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탈북자들의 주민등록지가 거주지로 바뀌어 이런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 주민등록증을 받은 탈북자들은 여전히 중국 등을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어떤 정당의 전문위원으로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 국회의 외교, 통일, 행정자치, 법사위의 상임위와 상의하였더니 “중국을 안 가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더군요. 어떤 분이 인권위가 강력히 권고하면 시정이 된다고 하던데, 인권위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로 진정해보세요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탈북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부여하여 거주이전의 자유에 제한을 받는 경우,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귀순용사에 대한 보상이 없나요?

저는 지난 1958년 휴전선을 넘어 귀순한 인민군 출신 북한주민입니다. 저는 귀순 후 미8사단에서 1년간 북한의 내부 정보를 전달해주었고, 한국군과 미군의 국방전략을 세우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1960년 초 국가보훈청이 생기면서 귀순용사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저처럼 그 이전에 귀순한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보상조치가 없었습니다. 일부 귀순용사들에 대해서 일정 지역의 토지를 줬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저 같은 귀순용사들은 목숨을 걸고 귀순하였고, 북한의 기밀정보를 한국에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상조치가 없으므로,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답변: 특별법을 청하는 진정을 제기해보세요

특별법을 통한 보상이 가장 유력한 길로 보입니다. 한국에 귀순하여 고급기밀 정보를 1년에 걸쳐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 2006년 12월 11일

“인권위,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11일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서 인권의 보편성 존중과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전제로, 정부에 대하여 북한인권 문제의 접근원칙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향후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표명 배경

국가인권위는 2003년부터 북한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해외 현지조사 등 일련의 조사·연구와 학계 및 단체 관계자, 관계당국, 10여개 국가의 대사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표명을 위해 작년 12월 제26차 전원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인권위원 5명을 위원으로 북한인권특위(위원장 최영애 상임위원)를 구성하였습니다. 21차례에 걸친 북한인권특위 검토 결과를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12월 11일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인권 입장표명의 구성 및 주요 내용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표명’은 1)입장표명의 배경, 2)입장표명의 근거 및 범위, 3)북한인권에 대한 접근원칙과 정책제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북한인권’의 범주를 북한지역 내 북한주민의 인권(이하 ‘북한 내 인권’), 재외탈북자·새터민 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남북간 인도주의적 사안과 관련된 인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북한인권 문제는 한반도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하에 북한 사회와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하여 평화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북한인권 문제, 특히 ‘북한내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과 관련하여, 인권의 보편성 원칙 존중, 남북관계의 특수성 및 북한인권 문제 접근에 대한 정부의 책임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보편적인 인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인권상황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북한인권의 개

선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국제법과 헌법에 비추어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와 근거를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법적 근거 및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엄연한 현실로 인해, 헌법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및 제30조의 해석상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군포로, 납북피해자, 이산가족, 새터민 등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적 피해당사자이므로 위원회가 이들의 개별적 인권사항을 다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원칙과 정책제안**

위원회는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 하에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여야 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1) 북한인권의 개선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 발전시켜 온 인권의 보편성을 존중해야 함
- (2)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주민들의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북한인권의 개선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3)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와 접근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함
- (4) 북한인권 문제는 정부 차원의 활동과 시민사회 차원의 활동이 비판적 조언과 협력 속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다루어져야 함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여 북한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 분단의 현실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북한인권 문제가 보다 슬기롭게 다뤄져야 함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정치적 사안과 분리하여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도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분배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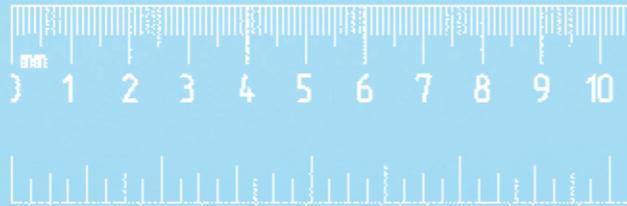
셋째, 정부는 재외 탈북자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과 함께 업무담당자를 확충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내에 정착한 새터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이 사안들에 대하여 북한과 조건 없이 협의하여 이 사안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노력하고, 이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등을 위한 관련 부서의 전담인력 확충 등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섯째, 북한인권의 개선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할 때 그 실효성이 담보되고, 또 북한인권 문제는 자칫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 왜곡될 우려도 없지 않으므로, 정부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정보수집, 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서 북한인권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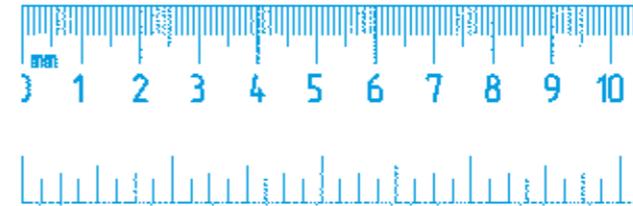
위원회는 북한인권의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그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의 정책적 활동을 행하고, 국제인권기구 및 국내외 NGO 등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북한내 인권 상황, 재외 탈북자의 인권 실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의 인권 문제, 새터민의 인권 증진 등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정책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 14



신체조건 · 전과 · 학력 · 여성 우선 해고 · 임신 · 기혼 · 여성 용모  
남성 역차별 · 출신지역 · 사회적 신분 · 가족관계 · 병력 · 종교

## 차별의 그늘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서

상담: 키가 작다고 채용을 거부합니다.

방학을 맞아 S문화회관 공연장 안내 아르바이트를 신청한 대학생입니다. 면접까지 통과했고 7월 10일부터 근무하라고 했는데, 당일까지 연락이 없어 전화했더니 7월 21일부터 출근하라고 말을 바꾸더군요. 다시 21일까지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없어 전화했더니, 제 키(157cm)가 작아서 곤란하답니다. 면접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항의했더니, 꼭 일하고 싶으면 굽 높은 구두를 신어야 한다더군요.

이미 면접도 통과했고, 이 아르바이트 때문에 다른 일도 구하지 못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키 작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다니, 너무 부당합니다.

답변: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로 진정해 판단을 받아보세요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은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입니다.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모나 외모, 근력, 키, 몸무게, 민첩성, 심폐기능 등의 신체적 특징, 조건, 능력 등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대우를 말합니다. S문화회관이 신체조건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했다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해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살을 안 빼면 무급휴가를 보낸답니다.

건물에서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살찐 미화원들이 산재를 많이 당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2009년 3월까지 적절한 체중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6개월~1년의 무급휴가를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개 30대에서 50대 사이의 평범한 중년 여성들인데, 그런 저희들한테 체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체지방 검사 날인데, 결과를 보고 진정할까 합니다.

답변: 용모나 신체조건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차별입니다.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을 당한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용모나 신체조건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모 및 신체조건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살찐 미화원이 산재를 많이 당한다는 합리적 근거 없는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을 당한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유사 상담 사례** }

날씬하고 예쁘지 않으면 일을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난타 강사를 육성하여 파견하는 교육기관에서 인턴으로 3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영자가 미혼여성 강사들만 보라면서, 미혼여성 강사의 경우에는 날씬하지 않고 예쁘지 않을 경우 일을 제한적으로 주겠다고 신체규정을 만들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항의했는데, 오늘 회사를 나가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입사 당시 외모에 관해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분명히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위와 같은 신체규정을 만들다니, 너무 부당합니다.



**보도자료** 2007년 1월 10일

**“채용 시 자격요건이던 키·몸무게 제한 폐지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4월 11일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에 의한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장은 2005년 12월 12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소방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아울러 채용 시 실시하는 체력검사 중 50m 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폐지하고,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항목을 신설하는 등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에 맞게 보완, 변경할 예정임을 함께 통보해 왔습니다.

또한 건설교통장관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신체조건을 제한하고 있는 ‘철도공안직 불합격 판정 기준’을 폐지하고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실시, 철도공안직 공무원의 업무특성에 적합한 체력측정 검사 항목을 개발한 후 중앙인사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2008년부터 신규채용 시 체력측정 검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한편, 법무부장관은 이미 위 권고를 수용하여 소년보호직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 제한을 완전 폐지하여 법무부예규 제287호(1984.12.14) 「공안직(교정, 소년보호직)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이 「교정직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으로 개정되었으나, 교정직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 제한은 그 개선 여부를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직무수행 능력검정제도의 보완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청장은 국민평균 신체조건과 경찰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키와 몸무게에 대한 일정 제한은 불가피하며 당분간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치안여건이 성숙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신체조건 완화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 상담: 전과자라고 건물 임대를 거부합니다

공전자불실기재(호적신고서 관련)로 형을 받고 최근 출소했습니다. 구속되기 전 상가건물 2채를 임차해 영업 중이었는데, 구속되면서 관리도 못 하고 임차료도 밀렸습니다. 해서 건물주를 만나 재협상한 결과 8월 1일자로 1채는 임차종료, 나머지 1채는 계속 사용키로 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할 필요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별안간 건물주가 찾아와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기로 했으니 비워달라고 하더군요. 매수 예정인 쪽 임대조건이 달라지는 게 아니면 계속 써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자, 제가 교도소를 다녀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매수예정인도 만났는데 같은 이유로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닌 말로 제가 무슨 파렴치범도 아니고, 교도소를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를 못하겠다니 너무 부당합니다.

### 답변: 평등권 침해로 진정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세요.

인권위는 형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을 당한 경우를 조사하고 권리구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형이 실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호소처럼 파렴치범도 아니고 호적 관련 문제로 실행을 받은 것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 구입에서 차별을 당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법률상 임차인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보도자료 2006년 12월 14일

#### “전과자라는 이유로 합격 취소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진정인 김모(38)씨와 이모(35)씨가 “200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기능직의 조무직렬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하였으나 전과자라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것은 차별이다”며 2006년 10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의 규정에 근거, 당해 행정청의 처분으로 시험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보안업무규정」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원조사에 따른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보안대책에 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 예정된 자를 배제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임용관련 법규 등에서 합격취소 사유가 규정되었다거나 피진정인에게 임용 여부에 관한 재량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고, 또한 「보안업무규정」이 진정인들의 합격을 취소할 근거법령이 될 수 없으므로 진정인들이 비록 전과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채용 시험의 합격을 취소한 것은 피진정인들이 전과를 이유로 진정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상담: 전문대 나왔다고 영양사 경력 인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공립학교 영양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학교 영양사는 공무원 신분이고, 호봉을 산정할 때 이전 영양사 경력을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 공히 80%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학교 영양사의 신분이 교원으로 바뀌면서, 전문대 졸업자의 경력을 40%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전처럼 80%를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보건교사의 경우는 또 그대로라고 하더군요. 이는 교육공무원 호봉 산정 시 유사경력 80% 인정대상이 4년제 대학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교육과학기술부에도 문의해봤는데, 그쪽에서도 문제인 건 알지만 행정안전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것이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같은 자격증으로 같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차별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답변: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로 진정해 판단을 받아 보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학력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수업연한의 차이 및 특정 교육기관의 졸업 및 이수 여부에 따라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함은 학력에 따른 차등대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학력이 개인의 능력보다 과도하게 또는 무관하게 평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 업무를 하는 영양사에게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졸업자의 경력 인정률이 2배에 이른다면, 학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인지에 대하여 인권위의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보도자료 2009년 4월 27일

#### “행정인턴 채용 시 학력·나이 제한은 차별”

진정인 민모씨(남·37)는 “2008년 1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모집한 행정인턴에 응시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전문대졸 이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했다”며, 2008년 12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인턴을 채용하면서 학력을 전문대졸 이상, 나이를 만 29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는 향후 행정인턴을 채용할 때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지 말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현재 시행중인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십 운영 계획’ 및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십 운영가이드’를 수정해 학력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와 같은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만 29세 이하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들을 위한 실업해소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렇다 하여 국가가 스스로 사용자가 되어 학력과 나이를 제한해 행정인턴을 모집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 회사가 어렵다면서 여성을 먼저 해고합니다.**

H반도체 협력업체 테스트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여성 사원 3명이 3교대로 근무하는데요, 얼마 전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테스트 부서 각 조 1명씩 총3명에게 해고예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을 해고한 자리에, 다른 부서의 남성사원을 대체 근무시키더군요. 남성은 가정이 있으니까 해고시킬 수 없다면서요. 이건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 아닌가요?

**답변: 양성평등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특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고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셨겠습니까. 우리 위원회는 성별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대해 조사하고 권리 구제할 수 있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구조조정 시 여성을 우선 해고한다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 · 한겨레 2009년 3월 8일

**여성 우선 해고 등 고용차별 심각**

101번째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여성계는 “경제위기에 처한 지금,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특히 여성이 먼저 해고되는 현실을 우려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77개 여성·시민·노동단체는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여성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한국여성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세계 여성의 날 여성선언’을 통해 “최악의 경제위기로 서민들이 절망하고 있고 차별과 폭력으로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으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 1천여명은 ▲관찰은 일자리 100만개 창출 ▲부자감세 반대, 교육복지 확대 ▲민주주의의 수호, 여성인권 보장 등 3개 요구안을 내세우고 청계광장과 시청 사이 거리를 행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서울 광고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경제위기 책임을 여성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위기의 고통이 여성 노동자에게 특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여성에게 큰 피해를 줄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세계 경제공황 시기였던 1908년 미국의 섬유산업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투쟁을 벌인 데서 비롯했다. 그러나 100년 넘게 지난 지금도 여성들은 주로 저임금 직종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임신·출산 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낸 보고서에서 “세계 성별 임금격차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16.5%보다 더 높은 22%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위기 탓에 여성의 고용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줄어든 취업자 가운데 80%가 여성이었다. 또 청년층 상용직에서 남성은 2만5천명 늘어났지만 여성은 4만8천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아지는 추세다.

매출성이나 임신·출산 등으로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인사 조치를 당해도 여성 노동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꼽힌다. 최저임금 대상 가운데 65%가 여성이고 여성노동자 가운데 70%가 비정규직일 정도로 많은 여성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이해순 전국여성노조 사무처장은 “전체 노조 조직률이 10%이지만 여성 노조 조직률은 5%를 밑돈다”며 “열악한 상황에 처한 여성 노동자에 대해 적극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맞아 오히려 ‘성별 동등 임금’을 강조했다”며 “어려울수록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등 실질적 고용평등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상담: 임신했다고 해고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브랜드 본사와 고용계약하고 쇼핑몰에서 의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 9개월인데, 작년 11월 임신 사실을 안 뒤부터 쇼핑몰 관리자가 제게 불이익을 주고 푸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본사 측에 해고 압력을 넣기까지 합니다. 얼마 전엔 저희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잘못을 해서 이를 문제 삼았더니, 관리자가 도리어 저더러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제 임신 사실을 안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임신이 죄도 아닌데 이런 대우를 받는 건 부당합니다.

**답변: 임신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 압력을 받고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한다는 것은 불리한 대우의 원인이 임신 또는 출산에 기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쇼핑몰 관리자는 선생님과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사에 직접 고용 관련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다녀왔다고 풀을 뽑으십니다.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한 명이 있는데, R전기 생산부서에서 10년 넘게 일했고, 출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한 뒤 얼마 전 복직했습니다. 복직 후 생산부서가 아닌 공장운영팀으로 발령받았고, 풀 뽑기 작업을 시키는 등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였습니다.

**유사 사건 위원회 합의종결**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 관련**

**진정요지**

진정인이 2008년 9월부터 병원에 고용되어 근무 중 같은 해 10월 원장 부인이 진정인에게 임신했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였고, 진정인은 다음날 직장을 그만두었다.

**합의내용**

-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 출산 후 재고용을 약속한다.
- 나. 위 합의사항의 이행을 약속한 이후 양 당사자는 본 건 진정 내용을 재론하지 않는다.

**보도자료** 2007년 3월 28일

**“임산부라서 채용 못한다?”**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며 김씨(여·41)가 2006년 10월 K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K구청장에게 해당 보건소장을 경고조치할 것과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보건소장은 진정인에게 ‘곧 출산으로 쉬어야 하는 사람을 인사위원회에 추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진정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둘러댄 말이라고 하면서, 진정인이 면접에서 탈락한 이유를 진정인은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고 또한 진정인이 민원(예방접종 시 불친절했다는 두 차례의 인터넷 민원)을 발생시키고 보건소 일반 직원들과도 인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보건소장이 주장하는 불합격 사유는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인이 이미 해당 보건소에서 12년 동안 무리 없이 일해 온 점에 비추어 공무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보건소장 역시 진정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나 채용 공고의 내용 등으로 볼 때, 보건소에서 전문의만을 채용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담: **나이가 많고 결혼을 했다고 나가립니다.**

K방송국에서 16년간 기상캐스터를 했습니다. 얼마 전 방송국에서, 10년 근무한 H씨를 비롯해 장기간 일한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3인에게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제작비와 광고 감소로 회사 재정이 어렵다는 건데요, 그렇더라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해고된 3명 모두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으로, 이제 기상캐스터 중 기혼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기상캐스터를 신규 채용했는데, 27세 이상은 아예 뽑지 않더군요. 나이가 많고 결혼을 했다고 기상캐스터를 그만두라는 건 부당합니다.

답변: **기혼여성 차별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시정 권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호소는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 혹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위에서 판단하는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혼, 미혼 혹은 비혼, 이혼, 사별, 별거, 재혼 그리고 혼인가능성 등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대우로서 그러한 대우가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방송국 기상캐스터로서 기혼여성, 근무연수가 오래된 여성이 수행하기 어렵다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한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보도자료 2007년 1월 16일

**“여직원 결혼하면 퇴직해야 한다는 관행 사라져야”**

진정인 A(여·30)씨는 “계약직 여직원들이 결혼하면 (주)대전방송(TJB)은 유·무언으로 퇴사를 종용하여왔고, 진정인도 2006년 결혼을 앞두고 회사의 이러한 관행에 따라 퇴직하고 전속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되었는데 이는 부당한 성차별”이라며 2006년 9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대전방송 대표이사에게 계약직 여직원의 결혼 퇴직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릴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주)대전방송에 명시적인 결혼 퇴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남성은 계약직 16명 중 기혼자가 12명이지만 여성은 계약직 6명 중 기혼자가 한 명도 없는 내부 고용현황 ▲근무 중인 계약직 여직원 6명 중 4명과 정규직 여직원 3명 중 2명, 퇴직한 여직원 중 1명이 계약직 여직원은 결혼 퇴직 관행이 있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고 ▲진정인이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된 후 받은 급여가 계약직으로 근무할때보다 감소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이 자신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하였다기보다 피진정기관에 존재하는 결혼 퇴직 관행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상담: 하이힐이나 미니스커트를 착용한 여학생들은 교실이나 도서관에서 내쫓습니다.

K대학교 총학생회 사무국장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여학생이 하이힐을 신거나 미니스커트를 입는 걸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여학생은 수업 시간에 밖으로 내보내고, 도서관에서도 퇴출시킵니다. 여학생의 하이힐이 또 각또각 소리를 내서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게 이유입니다. 사실 남학생의 구두소리도 작지 않은데, 남학생은 제재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슬리퍼를 나눠주고 개인 실내화 사물함을 설치하기도 했는데, 이런 건 불필요한 설비일 뿐만 아니라, 애초 여학생의 용모를 규제하고 의복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남성에게는 가하지 않는 제재를 여성에게만 한다는 점에서 성차별 요소도 있습니다. 총학생회에서는 촛불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평등권침해의 차별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시정 권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당한 경우, 그 대우가 정당화되지 않으면 평등권침해의 차별로 판단합니다. 용모 등 신체조건에는 키, 몸무게, 반점 등 쉽게 변화를 줄 수 없는 것과 머리, 수업 등 쉽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학교가 여학생의 의복을 규제하고 부당한 징계를 내리는 방법으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 평등권침해의 차별을 요지로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여학생 복장 규제 관련 유사 상담 사례 }

여학생은 치마만 입어야 하나요?

제 딸은 Y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남녀공학 사립학교인데, 여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치마만 입어야 한다는 학칙이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학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2008년 3월 21일

“과도한 두발, 복장 검사 없앤다”

각 시·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각 학교에서 체벌 및 강제이발 금지, 과도한 복장검사 지양, 학생 자치활동 지원, 학교생활규정을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권적 기준에 맞게 제·개정, 인권교육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업무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두발 및 복장과 관련해서도 각 시·도교육청은 강제이발 및 과도한 복장검사를 지양하고 일선 교육청 및 학교에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생활규정 중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조항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참여와 민주적 합의를 거쳐 전면 개정하고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규정의 인지도와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인권친화적인 학교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 시·도 교육청은 일선학교에서 모든 학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과도한 소지품 검사를 지양하고, 퇴학이나 처벌 등 제재보다는 선도 위주의 징계제도를 운영하며, 학생생활환경 조사 시에도 개인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실시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담:** 남성이라는 이유로 회사 어린이집을 아예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려 했는데, 남성 직원의 경우는 어린이집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여성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남성을 아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역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성별 역차별을 당하신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성별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대해 조사하고 권리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재화용역의 제공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 이용시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였다면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육아지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여성에게는 1세에서 6세까지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남성에게는 아무런 지원도 없습니다. 엄마에게는 육아지원을 해주고 아버지에게는 육아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남녀차별이 아닌가요?

**유사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2009년 8월 17일

**가사를 전담하는 기혼 남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

**주문**

피진정인에게, 가사를 전담하는 기혼 남성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 및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가사를 전담하는 기혼 남성인 진정인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피진정인에게 문의하였으나 직업과 소득이 없으면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피진정인이 본인 소득이 없는 여성 주부의 경우 배우자의 결제능력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남성이라 하여 주부로 인정하지 않고 배우자의 동의 여부, 직업 및 소득과 상관없이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한 성차별로서 시정을 원한다.

**판단**

외견상 여전히 주부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라고는 하나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소수라는 것이 이들을 달리 대우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고, 직업과 소득이 없는 남성에 대해 실제 가사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배우자의 동의와 결제능력이 전제되는 한 신용카드의 발급에 있어 가사를 전담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결제능력을 보증하는 배우자가 여성이라 하여 상환 불이행의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별에 따라 신용카드의 발급기준을 달리하는 피진정인의 기준 및 관행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 인근 지역 출신이라고 기간제교사 채용 시  
성적을 차별합니다.

현재 광주에 거주하면서 광주소재 공립학교 기간제교사 채용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광주지역 고교졸업자는 성적을 100% 인정하는데, 저는 화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성적의 70%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건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아닌가요?

답변: 지역차별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시정  
권고할 수 있습니다.

출신지역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평등권침해의 차별을 당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교사 채용시험에 불리한 배점으로 차별을 받았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09년 11월 20일

**“출신고교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 차등부여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A중학교가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 데 대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A중학교장은 즉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A중학교는 2009년 1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평준화 지역인광역시 소재 고교 졸업자의 성적은 100%를 반영하고, 비평준화 지역인 인근 도 소재 고교 졸업자의 성적은 70%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기간제 교원 채용 시 고등학교 성적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며, 채용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각 학교장의 재량행위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을 수 있는데, 서류전형에서 일률적으로 불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출신지역 및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담: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택시기사 일을 하고 있는 61세 남성입니다. 일하던 회사에서 정년이 57세라는 이유로 저를 포함해 3명을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는 현재 68세인 사람도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년은 핑계에 불과하고, 이번에 해고된 3명 모두 노조원이라는 게 진짜 이유입니다.

답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조원은 회사와의 관계가 순조롭지 않은 경우 고용상의 차별을 당하기 쉬운 입장에 있습니다. 정년을 핑계로 노조원을 해고했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는데 공무원이나 대기업 경력이 필요합니까?

최근까지 사업을 하던 중 여의치 않다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불법주정차단속반 300명을 모집한다 하여 응모했습니다. 그런데 자격 요건이 7급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종업원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집 요강이 부당하다고 느껴 서울시에 항의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답변: 차별적인 채용조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차별의 목적과 수단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차별의 사유가 불합리한 경우 평등권침해의 차별로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호소 내용은 직무수행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채용 조건이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바,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14-13 이동 통신사의 한부모가정 가족관계등록부 요구

### 상담: 한부모 가정 아이는 휴대전화도 맘대로 못 씁니까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 3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아들 휴대 전화를 바꾸려고 2년간 사용한 이동통신사를 방문했습니다. 구비서류인 주민 등록등본을 제출하니 왜 아빠가 없느냐며 가족관계등록부를 요구하더군요. 2년 전 가입할 때도 호적등본을 요구했습니다. 사용요금을 못 낼까 걱정하는 거라면 소득 증명원이나 재산세 증명원을 요구할 일이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뭘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냐고 했더니, 직원은 본사 방침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2년간 사용에 아무 문제도 없었고, 다른 통신사는 약관에 사인만 하면 개설되는데, 유독 이 이동통신사만 한부모가정에 대해 별도 서류를 요구하고,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입을 거부하는 까닭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날 아들이 함께 갔는데, 아빠가 없는 것만으로도 힘든 아들에게 해당 이동 통신사의 처사가 너무 부당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 답변: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세요.

이동통신사가 한부모가정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를 요구하고 전화 가입을 거부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평등권침해의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단지 한부모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동통신사의 부당한 재화용역의 이용 차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진정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각하 결정문 2007.12.17

#### 내용

주민등록상 양부모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동통신사에서 호적등본을 제출하게 하였음. 진정인이 각하하여 진정이 각하됨.

#### 각하사유

이동통신 회사에서의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호적등본을 요구할 수 밖에 없으며 다른 사항은 지워서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 내용을 진정인에게 설명하고, 내년부터는 호적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진정내용상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담당 조사관의 설명에 동의하고 본 진정을 취하함.

#### 적용법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8호

## 14-14 HIV감염을 이유로 한 입국 거부

**상담: HIV 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입국이 어렵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는 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HIV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평소처럼 캐나다로 잠시 출국하려 하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입국이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HIV 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입국을 막는 것은 부당합니다.

**답변: 병력을 이유로 출입국을 거부당했다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십시오.**

장애나 병력을 사유로 한 차별은, 장애/병력을 사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병력인에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B형 간염보균자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권고, 한센인에 대한 정책권고 등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HIV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국내 입국이 거부되었다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입국이 거부된 상태는 아니므로 우리 위원회가 사전에 개입하기는 어려우나, 한국으로 재입국시 입국이 거부된다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으십시오.

**보도자료** 2008년 4월 17일

### 서울행정법원의 HIV감염 외국인 출국명령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4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이 HIV감염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 판결한 것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이 우리사회에서 HIV/AIDS에 대한 편견 해소와 HIV감염 인 인권보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계 중국인 허모씨(남·34)는 2007년 3월 21일 한국인 어머니의 초청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건강검진 결과 HIV 항체양성반응 진단을 받았습니다(2007.5.3). 해당기관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7년 5월 4일 허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허씨는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 소송이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외국인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인권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외국인으로서의 국내 거주권과 병력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HIV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없애고,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상담: 종교수업을 듣지 않을 거면 전학을 가라고 합니다

제 딸은 J여중 1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인데 반강제적으로 종교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이 수업을 듣지 않으면 환경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이 수업은 종교수업과 달리 시험을 볼 뿐만 아니라, 혼자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친구와 함께 환경수업을 듣겠다고 하니 학교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불만 있으면 전학 가라는 입장이고, 실제로 제 딸 외에 종교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은 전학을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학 갈 형편이 안 될뿐더러, 학교의 처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답변: 종교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은 특정 종교를 신봉하거나 특정한 종교단체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행해지는 차별을 말합니다. 한편 종교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도 차별로 판단합니다.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위원회의 조사가 중단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언론보도 · 경향닷컴 2007.10.5

#### '학내 종교자유 투쟁' 강의석씨 승소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던 강의석(21·서울대 법대 재학)씨가 자신의 모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판사는 5일 강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광학원은 원고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 교육의 자유가 교육 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는 학생의 신앙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는 학생의 기본권이 더 존중돼야 한다"며 "피고 측이 시행한 종교의식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학 처분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에 내린 퇴학처분은 원고가 저지른 잘못과 내용에 비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1000만원 배상 판결을, 신앙의 자유기본권을 침해 사유로 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감독 과실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집무집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선생님과 학생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새로운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2004년 모교인 대광고등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자 퇴학 처분을 내려 헌법상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학교 재단을 상대로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에세이 }



그의 눈물

양윤정 인권상담센터 전문상담원

그가 운다. 화물운수 노동자로 20여 년을 살아온 50대의 건장한 그가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울봄 화물노동자 박종래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 인권위에 온 것도 그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흔적을 남기는 준비라고 말한다.

그는 A운수회사의 특수화물차 지입기사로, 1992년부터 누구나 알만한 모 대기업의 아스팔트 관련 제품을 수송해왔다. 화주인 대기업과 A운수회사의 계약이 만료되었고, B운수회사가 운송업체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대기업의 친척이 운영하는 B운수회사에서 A운수회사 소속의 다른 기사들은 모두 고용승계를 하였는데 화물연대의 지부 지회장이라는 이유로 그와의 지입계약을 거부한 것이다.

그가 화물연대 지회장으로 일하게 된 것은 대기업의 지입차주에 대한 횡포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 탱크로리와 같은 특수화물차는 해당 화물 외의 다른 화물은 운송할 수 없으므로 물량이 끊기면 차량 유지비만 날리고 생계가 막막해진다. 이에 기업의 운송료 삭감과 같은 횡포에 10년 넘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2003년 화물연대에 가입했다.

과거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하면 정부가 합의를 주선하고 해직노동자를 복직시켜주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주선은커녕 경찰이 집회현장에서 노동자의 사진을 찍어 구속하는 지경이다. 그도 현재 집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상태다. 지회의 다른 조합원들도 모두 탈퇴했다.

현재 B운수회사와 대기업은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한때 지회장이었던 그는 이제 해고된 노동자로 혼자다. 그의 아이들은 대학을 휴학했고, 가족들은 엄마의 얼마 안 되는 벌이로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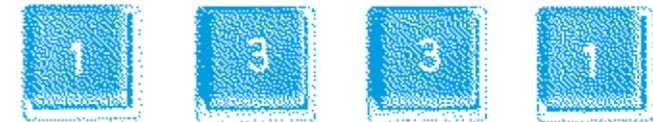
그가 계속 운다. 따뜻한 물을 주고 휴지를 줬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자리를 비켜준다. 아직도 운다. 입을 떼지 못하겠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어렵게 말을 꺼내 진정을 접수했다. 노동자의 굵은 손에 쥐어진 눈물 젖은 휴지를 보면서 나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 15



도와줄 어른들이 없어요 · 놀고 싶은데 공부만 하래요  
인권위에 항의합니다 · 인권위에 불만 있습니다  
인권위 권고 환영합니다 ·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7년 넘게 계속해온 인권영화프로젝트는 한국 사회의 인권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중략) 그것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인권위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감독들의 성명(2009년 3월 30일)

상담: 친구가 넘어져 코피가 나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에요. 친구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코피가 많이 나요. 주위에 도와줄 어른들이 없어요. 학교랑 뉴스에서 인권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어떻게 하면 코피를 멈추게 할 수 있나요?

답변: 찬 수건을 콧등에 얹고 등 마사지를 해주세요.

일단 찬 수건을 콧등에 얹고 등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 주위에 도움을 청하세요. 어른들이 안 보이면, 약국을 찾아 약사 선생님한테 응급처치를 부탁 드려세요. 많이 다쳤으면 약사 선생님이 병원을 가르쳐주실 거예요.

상담: 방학이라 놀고 싶은데 어른들이 공부만 하래요.

(울음)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방학이라 나가 놀고 싶은데, 어른들이 공부 하라면서 못 놀게 해요. 나가서 놀고 있으면 1시간도 안 돼서 전화하시고, 들어올 때까지 계속 전화하세요. 오늘도 학원 끝나고 놀다가 혼났어요. 너무 힘들어요.

답변: 어른들이랑 함께 시간표를 짜보세요.

어른들한테 본인의 심정을 솔직하고 진지하게 얘기해보세요. 그런 다음 언제 공부하고 언제 놀지 어른들이랑 같이 시간표를 짜보세요.



상담: 용산 사건, 이걸 너무 심합니다.

제기동에 사는 50세 서민입니다. 해병대를 제대했고, 보수적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 때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했고요. 그랬던 저이지만, 이번 용산참사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농성자들에게 인화물질이 있는 줄 알면서도 경찰이 진압을 강행했다던데, 이걸 무슨 말로도 정당화가 안 됩니다.

아랫사람들이야 명령을 따른 거니까 죄를 물을 수 없겠지만, 진압을 결정한 경찰 수뇌부나 책임자는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답변: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용산 사건과 관련해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돼 이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책임자 문책이나 징계에 관한 문제는, 위원회 조사뿐만 아니라 각계 의견,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상담: 인권위가 왜 사형제를 반대하는지 정말 불만이에요.

흉악범들로 인해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흉악해졌는데 인권위가 사형제도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인권위를 상대로 국민들이 모여 촛불집회를 해야 할 정도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분노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답변: 국민의 안전보장은 손쉬운 사형제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위원회는 범죄행위 그 자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흉악범죄 예방과 국민의 안전 보장은 사형제도라는 손쉬운 처방이 아닌 과학적 수사와 철저한 치안체계 확립으로 이룰 수 있다는 점, 인권과 생명을 희생해 안전을 얻으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생명권은 최고의 법이라 할 수 있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고, 범죄 예방효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아무튼 인권위원회에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제기하신 의견이 업무수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상담: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해요.

오늘 아침에 인권위에서 경찰, 소방공무원 채용할 때 나이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저는 몇 차례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져 내년 시험은 나이 때문에 응시조차 못 할 뻔했거든요. 법이 개정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권고 의견 내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답변: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고맙습니다. 인권위는 그동안 장애나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때문에 부당하게 차별받아온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선생님의 격려에 힘입어 앞으로도 더 많은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상담: 인권위 인원감축,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권위 활동 전반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상황에서 인권위의 존재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원감축 문제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에 전화했습니다. 행안부 담당자에게 항의했더니 담당자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권익위와는 업무가 다소 중복되지만 서로 고유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0명 조직에서 50명을 감축하는 것과 200명 중에 50명을 줄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인권위 내부적으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고, 인권위가 슬기롭게 난국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체적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인권위는 행안부의 인원 감축에 항의하고 독립성 수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위에 많은 체적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격려가 인권위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